

○ 신탁주식회사

제1항 영업의 경황(景況)

(본 항에는 본 지점의 영업일수, 거래의 증감, 각종 계정의 신축, 자금의 운용, 기타 중요한 사항에 관한 상황을 기재해야 한다.)

제2항 영업소 및 대리점

1. 당기간 영업소 및 대리점의 증감

	전기말현재수	당기증가수	당기감소수	당기말현재수
지점				
출장소				
대리점				
계				

2. 당기 말 현재 영업소 및 대리점의 위치

점명	위치
	도
...	부/군
	읍/면
	정/동/리
	번지
...	...

제3항 주주총회

(본 항에는 총회의 종류, 총회개회의 연월일, 총회에서 결의한 사항, 기타 총회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요령(要領)을 기재해야 한다.)

제4항 서무의 요건

(본 항에는 관청에 신청 또는 신고를 한 사항, 상업등기부에 등기를 받은 사항, 관청 또는 감사역으로부터 받은 업무감사, 소송, 기타 중요한 사항의 요령을 월일순으로 열기 (列記)해야 한다.)

제5항 자본금

1. 당기간의 증감

		전기말현재고	당기증가고	당기감소고	당기말현재고
자본금		원	원	원	원
내역	불입고				
	불입미제고				

2. 당기 말 현재주식의 종류(1주의 금액 ○엔)

주식종류		불입제한 것			계
			1주○엔 불입한 것		
보통주	주수	주	주	주	주
	불입고	원	원	원	원
우선주	주수	주	주	주	주
	불입고	원	원	원	원
합계	주수	주	주	주	주
	불입고	원	원	원	원

〈출전 : 『朝鮮總督府官報』, 1931년 9월 17일〉

친
일
반
민
족
행
위
관
계
사
료
집
III

IV. 조선교육령과 시학관제도

1. 조선교육령 개정(1920)

[1-1]

훈령(訓令)

짐(朕)은 추밀(樞密) 고문의 자문을 거쳐 조선교육령 중 개정의 건을 재가하여 이를 공포한다.

1920년 11월 9일
내각총리대신 하라(原敬)

칙령 제529호

조선교육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단, 토지의 정황(情況)에 따라 5년 또는 4년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에 다음의 1항을 추가한다.

고등보통학교에는 수업연한 2년 이내의 보습과(補習科)를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 중 '수업연한 4년의 보통학교를 졸업한 자'를 '보통학교 제4학년 과정을 수료한 자'로 개정하고 같은 조에 다음의 1항을 추가한다.

고등보통학교 보습과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자로 한다.

제17조 및 제23조 중 '수업연한 4년의 보통학교를 졸업한 자'를 '보통학교 제4학년 과정을 수료한 자'로 개정한다.

부칙

종전의 규정에 따른 수업연한 3년의 보통학교에 한하여 그 수업연한은 현재의 생도에 대해서는 그자의 재학기간을 3년으로 할 수 있다.

[1-2]

훈령

조선총독부훈령 제55호

도지사

관립고등보통학교장

관립여자고등보통학교장

이번 조선교육령 중 개정에 대하여 이의 시행상 보통학교규칙 및 고등보통학교규칙에 개정하는 다음의 시행에 관하여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의 대요(大要)를 개시한다.

종래 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은 4년을 본체(本體)로 하여 토지의 정황(情況)에 따라 3년으로 단축할 수 있었지만, 시세의 변화에 맞추기 위하여 6년을 본체로 하고 토지의 정황에 따라 5년 또는 4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 보통학교는 국민교육의 기초인 보통교육을 실시하므로 그 완성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시세의 변화에 맞추어 수업연한을 연장하여 앞으로 개정의 취지가 관철되도록 해야 한다. 당연한 일이지만 조선의 현 상태는 지방에 따라 취학과 보급할民力, 즉 수업연한이 6년인 보통학교를 유지하기 힘든 곳이 많다. 따라서 예외를 설정하여 토지의 사정에 따라 연한을 단축하는 방법을 통해 보통학교의 보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학교의 증설 또는 수업연한의 연장에 관하여는 이러한 취지를 따라 획일적으로 추진하는 것의 폐해에 빠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보통학교의 교과목은 종래 특히 독(讀), 서(書), 산(算)에 중점을 두고 수신(修身), 국어, 조선어 및 한문, 산술(算術)을 필수과목으로 하였다. 기타 교과목을 토지의 정황에 따라 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민교육의 기초를 완성하기 위하여 일본 역사 및 지리를 추가하여 국민 지조(志操)를 양성하여 애국심의 함양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수업연한 4년의 보통학교에서는 아직 기초교과의 수업이 충분하지 못하여 이를 교과목을 추가하여도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 따라서 종전처럼 이를 교과목을 빼고 이과(理科), 도화(圖畫), 체조(體操)를 새롭게 필수과목으로 하여 이를 제외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최근 세상의 진보는 국민에게 이과(理科)적 지식과 발표능력의 필요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국민 체력의 증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따른 것

이다.

보통학교 각 학년 각 교과목의 매주 교수시간수를 2시간 이내에서 증감하고, 또 각 학년은 매주 교수시간수의 합계를 3시간 이내로 증감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연 것은 창가(唱歌), 수공(手工), 재봉(裁縫) 및 수예, 농업초보 또는 상업초보의 매주 교수시간수 배당이 토지의 사정에 따라 적절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함부로 필수과목의 시간을 증감하여 특수 교육을 하지 않는 것은 이러한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고등보통학교에 수업연한 2년 이내의 보습과(補習科)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세상의 변화에 조응하여 더욱 충실한 고등보통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연 것이다. 교과목, 교과과정 등은 본과(本科)에 준하여 한층 교육이 자세하고 깊이가 있도록 한다. 특히 품성의 도야에 중점을 두고 지식 기능을 수여할 필요가 있다.

고등보통학교 보습과의 각 교과목의 매주 교수 시간수는 2시간 이내에서 증감하고 또 한 각 학년의 매주 교수시간 수의 합계 27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는 길을 연 것은 주로 조선어 및 한문, 박물(博物), 기타 교과목을 추가로 개설할 때 각 교과목이 매주 교수시간 수의 균형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이 있는 것을 무시하고 함부로 각 교과목의 매주 교수 시간수 또는 각 학년 매주 교수 시간수의 합계를 증감하여 생도의 학습을 한쪽에 치우치게 하는 것은 이러한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무릇 교육이 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법규의 취지를 어떻게 운용할지 학교장 및 교원 모두 성의를 갖고 노력해야 한다. 감독을 맡은 자는 부하직원을 독려하고 좋은 점을 장려함으로써 실적을 올리는 데 유감이 없도록 해야 한다.

1920년 11월 12일
조선총독 남작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1-3]

유고(諭告)

대체로 민중이 문명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은 첫째로 그 힘을 교육에 써야 한다. 이는 병합 아래 교육에 가장 역점을 두고 교육 진흥을 위해 강구해 온 바이다. 교육령의 시행

후 아직 10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현재 그 진보는 현저히 축적되었다. 조선 문화 발달의 기운을 일신하기에 이르러 본 총독은 정세에 비추어 시설의 완비를 도모함으로써 장래 일본과 조선의 사이에 차등이 없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라는 바이다. 보통학교 및 각종 학교의 중설과 확장을 계획하여 이미 실행에 힘쓰고 있고, 또한 시운(時運)의 진보와 조선의 실정에 맞춰 조선 교육제도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최근 교육조사회를 설치하고 조야(朝野)의 유식한 자들이 심사를 맡도록 하였다. 보통교육이란 것은 실로 국민교육의 기초로서 이 시설의 개선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번 칙령으로 조선교육령을 개정하여 보통학교 수업연한의 연장과 고등보통학교 보습과 제도를 설치한 것은 이에 따른 보통교육의 전진을 도모함과 동시에 일본의 교육기관과의 연락을 완비하고자 하는 것이다.

제국의 융운(隆運)과 함께 일본과 조선이 똑같이 경복(慶福)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육의 진흥에 힘쓰는 것이다. 또한 일반민중이 이를 이해하고 자제(子弟)의 교육에 힘써 지덕(知德)을 기르는 데에 힘써야 한다.

1920년 11월 12일
조선총독 남작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출전 : 『朝鮮總督府官報』, 1920년 11월 12일〉

2. 조선교육령 개정(1922)

[2-1]

칙령

집은 추밀(樞密) 고문의 자문을 거쳐 조선교육령을 재가(裁可)하고 이를 공포한다.

1922년 2월 4일
내각총리대신 자작 다카하시 고레키요(高橋是清)

칙령 제19호 조선교육령

제1조 조선의 교육은 본령에 따른다.

제2조 국어를 상용하는 자의 보통교육은 소학교령, 중학교령 및 고등여학교령에 따른다. 단, 이 칙령 중 문부대신의 직무는 조선총독이 실행한다.

전 항의 경우 조선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특례를 설정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조선총독이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 일본어를 상용하지 않는 자에게 보통교육을 하는 학교는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및 여자고등보통학교로 한다.

제4조 보통학교는 아동의 신체 발달에 유의하여 아동에게 덕육(德育)을 베풀고 생활에 필수적인 보통의 지식 기능을 전수하여 국민다운 성격을 함양하고 일본어를 습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단, 토지의 정황(情况)에 따라 5년 또는 4년으로 할 수 있다.

보통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6세 이상으로 한다.

수업연한 6년의 보통학교에 수업연한 2년의 고등과(高等科)를 설치할 수 있다. 고등과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수업연한 6년의 보통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보통학교에 보습과(補習科)를 설치할 수 있다.

보습과의 수업연한 및 입학자격에 관해서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고등보통학교는 남자 생도의 신체 발달에 유의하여 덕육을 베풀고 생활에 유용한 보통의 지식 기능을 전수하여 국민다운 성격을 양성하여 일본어에 숙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 고등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은 5년으로 한다.

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수업연한 6년의 보통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고등보통학교에 보습과를 설치할 수 있다.

보습과의 수업연한 및 입학자격에 관해서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여자고등보통학교는 여자 생도의 신체 발달 및 부덕(婦德)의 함양에 유의하여

덕육을 베풀고 생활에 유용한 보통의 지식 기능을 전수하여 국민다운 성격을 양성하여 일본어에 숙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 여자고등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은 5년 또는 4년으로 한다. 단, 토지의 정황에 따라 3년으로 할 수 있다.

여자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수업연한 6년인 보통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조선총독이 정한 바에 따라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여자고등보통학교에 보습과를 설치할 수 있다.

보습과의 수업연한 및 입학자격에 관해서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입학자격에 관해서는 수업연한 6년인 보통학교의 졸업자는 보통 소학교 졸업자, 보통학교 고등과의 제1학년 수료자 및 졸업자는 각 고등소학교 제1학년 수료자 및 수업연한 2년인 고등소학교의 졸업자, 고등보통학교 졸업자는 중학교 졸업자, 여자고등보통학교 졸업자는 상당(相當)하는 수업연한인 고등여학교의 졸업자로 간주한다.

제11조 실업교육은 실업학교령에 따른다. 단, 동 영 중 문부대신의 직무는 조선총독이 수행한다.

실업학교의 설립 및 교과서에 관해서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 전문교육은 전문학교령에, 대학교육 및 그 예비교육은 대학령에 따른다. 단, 이들 칙령 중 문부대신의 직무는 조선총독이 수행한다.

전문학교의 설립 및 대학 예과(豫科)의 교원의 자격에 관해서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 사범교육을 하는 학교는 사범학교라고 한다.

사범학교는 특히 덕성(德性)의 함양에 힘쓰며 소학교 교원이 되거나 보통학교 교원이 될 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4조 사범학교에 제1부 및 제2부를 설치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부 또는 제2부만을 설치할 수 있다.

제1부에서는 소학교 교원이 될 자를, 제2부에서는 보통학교 교원이 될 자를 교육한다.

제15조 사범학교의 수업 5년은 6년으로 하고 보통과 5년, 연습과 1년으로 한다. 단, 여자의 경우에는 수업연한을 5년으로 하여 보통과를 1년 단축한다.

제16조 사범학교 보통과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보통 소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조선총

독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하고, 연습과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보통과를 수료한 자, 중학교 또는 수업연한 4년인 고등여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제17조 사범학교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특과(特科)를 설치한다. 또는 특과만을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의 규정은 전 항의 특과에 대해서 이를 준용한다.

제18조 특과의 수업연한은 3년 또는 2년으로 한다.

특과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수업연한 2년인 고등소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제19조 사범학교에 연구과(研究科) 또는 강습과(講習科)를 설치할 수 있다. 단, 연구과는 특과만을 설치한다. 사범학교에는 이를 설치할 수 있다.

연구과 및 강습과의 수업연한 및 입학자격에 관해서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 사범학교에 부속 소학교 및 보통학교를 설치한다. 단 제1부만을 설치한 사범학교에는 부속 소학교, 제2부만을 설치한 사범학교에는 부속보통학교만을 설치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립 소학교를 부속 소학교로, 공립 보통학교를 부속 보통학교로 대용(代用)할 수 있다.

제21조 사범학교는 관립(官立) 또는 공립으로 한다.

공립사범학교는 도지방비(道地方費)에 한하여 이를 설립할 수 있다.

제22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립 고등보통학교 또는 여자고등보통학교에 사범학교의 제2부 연습과 또는 강습과를 부설할 수 있다.

제12조의 규정은 전 항의 고등보통학교 및 여자고등보통학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3조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 및 사범학교의 교과(教科), 편제(編制), 설비 및 수업료 등에 관해서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 공립 또는 사립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및 여자고등보통학교와 공립 사범학교의 설립 및 폐지는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5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본어를 상용하는

자는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또는 여자고등보통학교에, 일본어를 상용하지 않는 자는 소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여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제26조 본령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사립학교, 특수 교육을 위한 학교, 기타 교육시설에 관해서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제27조 본령 시행의 기일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제28조 1911년 칙령 제229호 조선교육령은 폐지한다.

제29조 본령 시행 시 현재 조선에 있는 소학교, 중학교, 고등여학교,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 실업전수학교, 간이실업전수학교, 실업학교, 관립 전문학교 및 사범학교는 각각 본령에 의해 설립한 소학교, 중학교, 고등여학교,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 실업학교, 전문학교 및 사범학교로 한다. 전 항의 고등보통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 실업학교 및 전문학교는 현재 재학하는 생도에 대하여 재학기간 사이에 구(舊)령에 의한 것을 할 수 있다.

제30조 본령 시행 시 현재 조선에 있는 고등보통학교는 본령 시행 후 2년을 한도로 구령에 의한 보습과를 존치(存置)할 수 있다.

제31조 본령 시행 시 현재 조선에 있는 관립의 고등보통학교 및 여자고등보통학교는 본령 시행 후 고등보통학교는 4년, 여자고등보통학교는 3년을 한도로 구(舊)령에 따른 사범과(師範科)를 존치할 수 있다.

제32조 본령 시행 시 현재 조선에 있는 사립 전문학교는 당분간 구령에 따라 존속할 수 있다.

[2-2]

부령(府令)

조선총독부령 제5호

조선교육령은 19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22년 2월 6일
조선총독 남작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2-3]

유고(諭告)

조선교육령 시행 아래 이미 십여 년이 지났다. 이 동안 사회의 진보와 민력(民力)의 신장은 특히 두드러졌다. 거의 예전 조선의 면목(面目)이 일신했음을 볼 수 있다. 취임 초에 우선 사회문화의 근본인 교육의 쇄신에 대하여 확신하는 바가 있어 교육제도의 개정을 기획하고 각 부문의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 임시교육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조야의 유식자들에게 자문하여 이번 조선교육령을 공포하게 되었다.

종래의 조선교육령은 그 당시의 세태와 민도(民度)를 참고하여 간이하고 실용을 주로 한 시설을 만들자는 취지로 나온 것으로, 사회의 실정에 적합하여 문운의 융창(隆昌)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않다. 세인들이 인정하는 바는 그렇다 하더라도 시세의 추이는 예전의 방식을 지키도록 놓아두지 않는다. 이에 호응하여 적당한 개정을 실행하고 제도를 정비하여 시설을 완비하고자 한다. 이번에 새롭게 사범교육 및 대학교육을 추가하고 보통교육실업학교와 전문학교의 정도를 진전시켜 일본과 조선이 공통의 정신에 의거하여 동일한 제도 아래서 시설이 완전히 정리되기에 이르렀다. 단, 일본과 조선의 사정이 각각 다르므로 보통교육기관은 특히 종래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자제(子弟)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에 대응하여 적당한 학습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최근 시세의 추이는 향학심(向學心)을 고양해 왔다. 교육시설의 충실한 정비를 재촉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가을에 새롭게 조선교육령을 공포하는 것은 이에 따라 교육의 보급을 더욱 철저히 하여 민중이 문명의 혜택을 더 많이 받아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려는 것이다. 관민이 협심, 협력하여 새 영의 정신에 따라 질실(質實), 건전한 시설을 만들으로써 제국의 규운(奎運)을 다시 진전시키고 세계 문화의 발전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1922년 2월 6일
조선총독 남작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출전 : 『朝鮮總督府官報』號外, 1922년 2월 6일〉

3. 조선교육령 개정(1929)

집은 추밀 고문의 자문을 거쳐 조선교육령 중 개정의 건을 재가하고 이를 공포한다.

1929년 4월 19일
내각총리대신 남작 다나카 기이치(田中義一)

칙령 제82호

조선교육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특과(特科)’를 ‘심상과(尋常科)’로 고친다.

제18조 심상과의 수업연한은 5년으로 한다. 단, 여자인 경우는 이를 4년으로 한다.

심상과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심상소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제18조의 2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부 연습과는 심상과만을 두는 사범학교에 이를 설치할 수 있다.

제19조 제1항 중 ‘특과’를 ‘심상과’로 개정한다.

제22조 삭제

부칙

본령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본령 시행 시 현재 조선에 존재하는 사범학교의 특과는 현 재학하는 생도의 재학 기간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조선에서 관립사범학교에는 1931년 3월 31일부터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과를 둘 수 있다.

– 참조 –

1922년 2월 6일 공포

칙령 제19호 조선교육령초(抄)

제17조 사범학교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특과를 설치하거나 특과만을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의 규정은 전 항의 특과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8조 특과의 수업연한은 3년 또는 2년으로 한다.

특과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수업연한 2년의 고등소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제19조 제1항 범학교에 연구과 또는 강습과를 설치할 수 있다. 단, 연구과는 특과만을 설치한 사범학교에서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제22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립 고등보통학교 또는 여자고등보통학교에 사범학교의 제2부 연습과 또는 강습과에 대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20조의 규정은 전 항의 고등보통학교 및 여자고등보통학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출전 : 『朝鮮總督府官報』號外, 1929년 4월 19일〉

4. 조선교육령 개정(1938)

짐은 추밀 고문의 자문을 거쳐 조선교육령 개정의 건을 재가하고 이를 공포한다.

1938년 3월 3일

내각총리대신 공작(公爵) 고노에 후미마로(近衛文麿)

척무대신 오타니 소뉴(大谷尊由)

칙령 제103호 조선교육령

제1조 조선에서 교육은 본령에 따른다.

제2조 보통교육은 소학교령, 중학교령 및 고등여학교령에 따른다. 단, 이들 칙령 중 문부대신의 직무는 조선총독이 수행한다.

전 항의 경우 조선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특례를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선총독이 별도로 설정할 수 있다.

제3조 실업교육은 실업학교령에 따른다. 단, 실업보습교육에 관해서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실업학교령 중 문부대신의 직무는 조선총독이 수행한다.

실업학교의 설립 및 교과서에 관해서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전문교육은 전문학교령에, 대학교육 및 예비교육은 대학령에 따른다. 단, 이들 칙령 중 문부대신의 직무는 조선총독이 수행한다.

전문학교의 건설 및 대학예과의 교원의 자격에 관해서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사범교육을 하는 학교는 사범학교라고 한다.

사범학교는 특히 덕성의 함양에 힘쓰며 소학교 교원이 될 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 사범학교의 수업연한은 7년으로 하고 보통과 5년, 연습과 2년으로 한다. 단, 여자는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하고 보통과에서 1년을 단축한다.

제7조 사범학교 보통과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심상소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조선총독이 정한 바에 따라 그들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연습과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보통과를 수료한 자, 중학교 또는 수업연한 4년 이상인 고등여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제8조 사범학교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심상과(尋常科)를 설치한다. 또는 심상과만을 설치할 수 있다.

제9조 심상과의 수업연한은 5년으로 한다. 단, 여자는 4년으로 한다.

심상과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심상소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제10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연습과는 심상과만을 설치한다. 사범학교에 이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 사범학교에 연구과 또는 강습과를 설치할 수 있다. 단, 연구과는 심상과만을 설치한 사범학교에서는 설치할 수 없다.

연구과 및 강습과의 수업연한 및 입학자격에 대해서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 사범학교에 부속 소학교를 둔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립 소학교를 부속 소학교로 대용(代用)할 수 있다.

제13조 사범학교는 관립 또는 공립으로 한다.

제14조 사범학교의 교과, 편제, 설비, 수업과 등에 대해서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 공립사범학교의 설립 및 폐지는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6조 본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사립학교, 특수 교육을 하는 학교, 기타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본령은 193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령 시행 시 현재 조선에 존재하는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및 여자고등보통학교는 각각 본령에 따라 설립한 소학교, 중학교 및 고등여학교로 한다.

심상소학교의 수업연한은 당분간 토지의 정황에 따라 이를 4년으로 할 수 있다.

전 항의 심상소학교의 각 학년의 재학자 또는 졸업자의 전학 또는 입학 자격에 대해서는 수업연한 6년인 심상소학교에 상당하는 학년의 재학자 또는 제4학년의 수료자로 간주한다.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또는 여자고등보통학교 졸업자의 입학 자격에 대해서는 수업연한 6년인 보통학교의 졸업자는 심상소학교 졸업자, 수업연한 4년인 보통학교의 졸업자는 수업연한 6년인 심상소학교의 제4학년 수료자, 수업연한 6년인 보통학교의 졸업자가 보통학교 고등과의 제1학년을 수료한 자는 고등소학교 제1학년 수료자, 보통학교 고등과의 졸업자는 수업연한 2년인 고등소학교의 졸업자, 고등보통학교 졸업자는 중학교 졸업자, 여자고등보통학교 졸업자는 이에 상당하는 연한의 고등여학교의 졸업자로 간주한다.

〈출전 : 『朝鮮總督府官報』號外, 1938년 3월 4일〉

5. 조선교육령 개정(1943)

짐은 추밀 고문의 자문을 거쳐 조선교육령 중 개정의 건을 재가하고 이를 공포한다.

1943년 3월 8일
내각총리대신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내무대신 유자와 미치오(湯澤三千男)

칙령 제113호

조선교육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중학교령 및 고등여학교령'을 '중등학교령 중 중학교 및 고등여학교에 관한 부분'으로, '이들 칙령 중 문부대신의 직무'를 '국민학교령 중 문부대신의 직무와 중등학교령 중 중학교 및 고등여학교에 관한 부분의 문부대신의 직무'로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실업학교령'을 '중등학교령 중 실업학교에 관한 부분'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실업학교령 중 문부대신의 직무'를 '중등학교령 중 실업학교에 관한 부분의 문부대신의 직무'로 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 조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 이를 준용한다.

제5조 사범교육은 사범교육령 중 사범학교에 관한 부분에 따른다. 단, 동령 중 사범학교에 관한 부분의 문부대신의 직무는 조선총독이 수행한다.

제2조 제2항의 규정은 전 조의 경우 이를 준용한다.

제6조와 제15조를 삭제하고 제16조를 제6조로 한다.

부칙

제1조 본령은 194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실업학교에는 당분간 토지의 정황에 따라 조선교육령에 따르도록 정한 중등학교령(이하 줄여서 중등학교령으로 칭함) 제7조와 제9조의 규정에 따르지 않고 초등학교 초등과 수료과정을 입학자격으로 하는 수업연한 3년인 과정을 설치하거나 이것만을 설치할 수 있다.

제3조 사범학교에는 당분간 조선교육령에 따르도록 정한 사범교육령(이하 줄여서 사
범교육령으로 칭함) 제4조의 규정에 따르지 않고 수업연한 4년인 예과를 설치
할 수 있다.

전 항의 예과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초등학교 초등과를 수료한 자 또는 조선총
독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로 한다.

제4조 사범학교에는 당분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사범교육령 제3조 제2항의 규
정에 따르지 않고 심상과를 두거나 심상과만을 설치할 수 있다.

심상과의 수업연한은 5년으로 한다. 단, 여자는 4년으로 한다.

전 조 제2항의 규정은 심상과의 입학자격에 이를 준용한다.

제5조 사범학교에는 당분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강습과를 설치할 수 있다.

강습과의 수업연한 및 입학자격에 관해서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본령 시행 시 현재 조선에 있는 사범학교 연습과에 대해서는 당분간 종전의 예
에 따른다. 단, 해당 사범학교에 사범교육령에 따른 본과를 설치한 경우에는 이
와 상관없다.

전 항의 연습과를 설치한 사범학교에 사범교육령에 따른 본과를 설치한 경우에
는 해당 사범학교 연습과에 재학하는 생도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
당 사범학교 본과의 생도가 되는 것으로 한다.

제7조 사범학교 남자부 본과의 수업연한은 1946년까지 졸업해야 하는 생도에 대해서
는 6개월로 단축한다. 단, 수업연한 4년인 사범학교 예과를 수료한 생도 및 부
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입학한 생도에 대해서는 이와 상관없다.

제8조 1944년 이후에는 종전의 조선교육령을 따르도록 정한 중학교령에 따른 중학교
또는 중등학교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중학교의 제4학년을 수료한 자 또는 조
선총독이 정한 바에 따라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사범교육령 제5조 또는 종전의 조선교육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르지 않고
사범학교 남자부 본과 또는 사범학교 연습과에 입학할 수 있다.

제9조 본령 시행 시 현재 보통과를 설치한 사범학교에는 본령 시행 시 현재 보통과
재학 중인 생도를 위해 사범교육령 제4조의 규정에 따르지 않고 수업연한 4년
인 예과를 설치한다. 단, 1939년까지 보통과에 입학한 생도(조선총독이 정한 자
를 제외)에 대해서는 수업연한은 5년으로 한다.

〈출전 : 『朝鮮總督府官報』, 1943년 3월 18일〉

6. 조선총독부시학관특별임용령(1911)

짐은 추밀 고문의 자문을 거쳐 조선총독부시학관특별임용령(朝鮮總督府視學官特別任用令)을 재가하고 이를 공포한다.

1911년 5월 3일
내각총리대신 공작 카쓰라 타로(桂太郎)

조선총독부시학관특별임용령

제1조 조선총독부 시학관은 다음과 같은 자격의 1을 갖는 자 중에서 문관고등시험에 합격하고 전형을 거친 자를 이에 임용할 수 있다.

1. 문부성시학관 또는 대만 총독부시학관의 직에 있었던 자.
2. 2년 이상 문부성이 직할하는 여러 학교장의 직에 있었던 자.
3. 3년 이상 사법학교장, 관공립중학교장, 관공립고등여학교장 또는 관공립실업학교장의 직에 있었던 자.
4. 3년 이상 주임(奏任)교관의 직에 있었던 자.

제2조 전 조의 동 호 중 각 직의 재직연수는 이것을 통산한다.

부칙

본령은 공포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출전 : 『朝鮮總督府官報』, 1911년 5월 9일〉

7. 조선총독부시학관특별임용령 개정(1922)

짐은 추밀 고문의 자문을 거쳐 조선총독부시학관특별임용령 중 개정의 건을 재가하고 이를 공포한다.

1922년 10월 4일
내각총리대신 남작(男爵) 가토 토모사부로(加藤友三郎)

칙령 제425호

조선총독부시학관특별임용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문부성 시학관’을 ‘문부성 독학관, 문부성 시학관’으로, ‘문부성 직할 제학교장’을 ‘문부성직할 제학교장 또는 조선총독부 전문학교장’으로, ‘관공립 고등여학교장을 ‘관공립 고등여학교장, 관공립 고등보통학교장, 관공립 여자고등보통학교장’으로 개정한다.

부칙

본령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출전 : 『朝鮮總督府官報』, 1922년 10월 10일〉

8. 일본어 상용 여부에 따른 입학에 관한 건(1922)

조선총독부령 제15호

조선교육령 제25조에 따라 일본어를 상용하는 자 또는 일본어를 상용하지 않는 자의 입학에 관한 건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922년 2월 20일
조선총독 남작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제1조 일본어를 상용하는 자가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또는 여자고등보통학교에, 일본어를 상용하지 않는 자가 소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여학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는 가정의 사정, 수학(修學)의 편의 또는 장래 생활상의 필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학교장이 그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2조 전 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장이 입학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학교조합의 부담으로

설립하는 소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여학교에서는 학교조합관리자, 학교비의 부담으로 설립하는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또는 여자고등보통학교에 있어서는 부윤(府尹), 군수(郡守) 또는 도사(島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 제1조의 규정에 의해 입학을 허가한 자의 원수(員數)는 이를 편입하는 학급의 다른 아동 또는 생도의 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

전 항의 원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는 감독관청의 인가를 받아 다른 아동 또는 생도의 수의 1/2까지 이를 증가할 수 있다.

제4조 학교조합 또는 학교비의 부담으로 설립하는 학교에 있어서는 본령의 규정에 의해 입학한 자에 대하여 별도로 그 수업료 액수를 정할 수 있다.

부칙

본령은 19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출전 : 『朝鮮總督府官報』, 1922년 2월 20일〉

9. 조선총독부 시학관 및 조선총독부 시학위원 학사시찰 규정(1928)

조선총독부 훈령 제29호

조선총독부

도(道)

관립학교

공립학교

조선총독부 시학관 및 조선총독부 시학위원 학사시찰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928년 10월 26일
조선총독 야마나시 한조(山梨半造)

조선총독부 시학관 및 조선총독부 시학위원 학사시찰 규정

제1조 시학관 학사시찰을 명령받았을 때는 다음의 사항에 따라 시찰해야 한다.

1. 교육, 행정의 상황
2. 학교 교육의 상황
3. 일본어 보급의 상황 및 시설
4. 학교 위생의 상황
5. 학교 경제의 상황
6. 학교와 그 소재지의 관계
7. 서당 및 사설(私設) 학술강습회의 상황
8. 사회교육, 기타 교육, 학예에 관련된 제반 시설의 상황
9. 학사관계 직원 집무 상황
10. 특별히 지명한 사항
11. 앞의 각 호 이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조 시학관 시찰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일정을 변경하여 수업을 하도록 한다. 또한 생도, 아동의 학력을 시험할 수 있다.

제3조 시학관은 학사시찰 시 다음 사항에 따라 관계자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1. 법규에 저촉된 사항
2. 청의(廳議)의 결정에 반하는 사항
3. 교수, 훈육에 관한 사항
4. 기타 특별히 지명한 사항

전 항의 주의 중, 후일 참고해야 할 사항은 학교의 기록에 남겨 시학관이 여기에 날인해야 한다.

제4조 시학관은 시찰이 차질 없이 이루어진 때는 관계지사에게 시찰 상황을 진술해야 한다.

시학관은 전 항 이외에 학사에 관한 시설에 대하여 관계도지사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5조 시학관이 귀청(歸廳)할 때는 지체 없이 시찰의 대요(大要)를 복명(復命)해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출장처에서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제6조 시학위원은 조선총독의 명령을 받았을 때는 지명받은 학사를 시찰하고 시학위원 시찰을 끝냈을 때는 1개월 이내에 복명서(復命書)를 제출해야 한다.

제2조,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은 시학위원의 시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조 시학관 및 시학위원이 아닌 자가 조선총독의 명령을 받아 학사를 시찰하는 경우에는 제1조,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출전 : 『朝鮮總督府官報』, 1928년 10월 26일〉

10. 조선총독부 도 시학관 특별임용령(1930)

집은 추밀 고문의 자문을 거쳐 조선총독부 도(導) 시학관 특별임용령을 재가하고 이를 공포한다.

1930년 10월 31일
내각총리대신 하마구치 오사치(濱口雄幸)
책무대신 마쓰다 겐지(松田源治)

칙령 제211호 조선총독부 도(道) 시학관 특별임용령

제1조 조선총독부 도시학관은 다음 자격의 하나를 갖고 있는 자 중에서 고등시험위원의 전형을 거쳐 특별히 이를 임용할 수 있다.

1. 2년 이상 주임관(奏任官) 또는 주임관 대우 이상의 학교장, 교관, 교원 또는 교육,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직무에 있었던 자.
2. 5년 이상 판임관(判任官) 또는 판임관 대우의 학교장, 교관, 교원 또는 교육,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자리에서 월 85엔 이상의 봉급을 받은 자.

제2조 전 조에 규정한 각 직책의 재직연수는 통산(通算)한다. 단, 소요 재직연수가 다른 각 직책의 재직연수를 통산하는 경우에는 갑 직의 재직연수의 소요재직연수에 대한 비율을 을 직의 소요재직연수로 곱한 연수를 갑 직의 재직연수로 하고 이를 을 직의 재직연수에 통산한다.

부칙

본령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출전 : 『朝鮮總督府官報』, 1930년 11월 5일〉

친
일
반
민
족
행
위
관
계
사
료
집
III

V. 언론계 상황과 매일신보의 주요 논설

1. 신문 · 잡지의 발간 현황(1936)

제1장 개설

1919년 제도 개정 이전에는 조선에서 신문, 통신, 잡지, 기타 보통 출판물에 대하여 엄중하게 관리했다. 특히 신문, 잡지의 발행에는 인가 또는 허가 제도를 통해 이를 제한하고 조선인의 발행에 관련한 것은 대부분 이를 허가하지 않는 방침을 취해 왔기 때문에 출판에 대해서는 일본인과 조선인 모두 일반적으로 극히 부진한 상태였다. 그런데 이것은 조선 내 민의(民意)의 창달(暢達)을 위하여 매우 유감일 뿐만 아니라, 조선 문화의 향상을 저해하였다. 따라서 점차 관리 방침을 개정하고 천천히 이를 완화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신문과 잡지의 새로운 발행을 인정하고, 또한 보통 출판물의 출판에 대해서도 공서(公序) 양속(良俗)에 반하지 않는 한 출판을 인정하는 등 일본인과 조선인의 구별 없이 언론의 자유를 존중하여 공정하고 평등한 방침으로 민의의 창달과 문화의 향상, 촉진에 이바지함으로써 민심의 지도, 완화에 노력해 왔다.

이와 같이 조선 출판계가 기운발흥(起運勃興)하여 특히 조선인이 발행하는 신문은 널리 전 조선에 배포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신문과 잡지의 종류도 해마다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신문과 잡지는 반도 문화의 향상에 공헌하는 바가 지대하다. 하지만 한편으로 조선인이 발행하는 것은 때에 따라서는 총독정치를 비방하거나 민족의식을 앙양(昂揚)하여 불온하고 과격한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조선 대중의 여론을 호도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는 종래의 엄중한 관리를 가하는 한편 선도에 힘쓴다. 또한 중일 전쟁 발발 이후 수입되는 신문과 잡지에는 우리의 대(對) 중국 정책과 ‘황군(皇軍)’의 행동을 왜곡하거나 무고(誣告), 비방하여 반군(反軍) · 반전(反戰) 사상을 고취하여 ‘황군’의 위신을 실추시키는 등 불온하고 과격한 기사가 있다. 이런 종류의 간행물에 대해서는 각 관계기관과 긴밀한 연락하에 엄중한 관리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조선 내에서 신문출판물의 관리법규는 모두 병합 이전에 제정되었다. 즉 조선 내에 거주하는 일본인 및 외국인에 대하여 적용해야 하는 통감부령에 따른 신문규칙과 출판규칙 또는 조선인에게만 적용해야 할 구(舊)한국법률인 신문지법과 출판법이다. 현재에는 제령(制令)에 따라 이를 관리하지만 일본인과 조선인 사이에 그 적용이 다르고, 또한 그 규정하는 사항도 세상의 진보에 적응하지 못한다. 따라서 운용에 관하여 적당한 조치를 강구하고 불비(不備), 결함을 보충하고 있는 것이 실황(實況)이다.

제2장 신문, 잡지, 보통 출판물의 발행 및 출판 상황

제1절 신문, 잡지의 발행 상황

신문규칙에 따라 일본인이 발행하는 신문, 잡지는 1937년 말 현재 신문 31종, 잡지 15종, 통신 8종 등 총 54종이며, 같은 해 신문의 경우 경성일보(京城日報)의 자매지인 영문(英文) 일간지『서울프레스』는 최근 조선에 있는 구미인(歐米人)이 감소하는 시세의 추이에 따라 종래처럼 큰 희생을 지불하면서 발행을 계속하여도 효과가 없어 1937년 6월 1일 폐간하였다. 같은 해 10월 9일에는 일반 수산(水產) 관계기사를 게재하는 월간 신문『조선수산시보』를 인가하였고, 잡지도 같은 해 8월 27일 일반교육기사를 게재하는『문교의 조선』이 새롭게 인가를 받았다.

이들 신문, 잡지는 일부를 제외하면 그 주의 주장이 온건하여 총독정치에 유용하며 조선 문화의 향상과 개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어느 것이나 진면목인 논조(論調)로 발행을 계속하고 있으며, 그 발행부수는 배포 상세표와 같이 일반 경제계의 성쇠(盛衰)나 논조, 기타 환경 등에 따라 부수에 다소 증감이 있기는 하지만 이렇다 할 변동은 없다.

신문지법에 의해 조선인이 발행하는 신문, 잡지는 종래 본부 기관지인『매일신보(毎日申報)』 및 정치기사 등을 게재하지 않는 월간 잡지인『천도교회월보』,『신외의약신보』 등 3종뿐이었으나, 1920년에는 일간 신문인『조선일보』,『동아일보』,『시사신문』과 월간 잡지인『개벽』 등 4종이 허가를 받았다. 그리고 시사신문은『시사평론』으로 개칭하고 월간 잡지로 바뀌었다가, 1930년 1월에 주간『민중신문』으로 이름을 바꾸어 친일단체 국민협회의 기관지로서 다시 신문으로 복귀하였다.

이후 발행된 것은 1921년에 현 진홍(振興)의 전신인 유도진홍회(儒道振興會)의 기관지인 월간 잡지『유도』, 1922년에 일간『신생활』, 월간 잡지『동명(東明)』(다음해 시대일보로 변경) 및 친일단체 평양 대동동지회의 기관지로서 주간지인『대동신보(大東申報)』와 월간 잡지『조선지광(朝鮮之光)』, 1924년에는 조선인의 유일한 경제신문으로서 현『남선 경제일보(南鮮經濟日報)』의 전신인『대구상보(大邱商報)』, 1932년에는 마찬가지로 경제, 시사만을 게재하는 현『동아경제신문』의 전신인『동아상공시보(東亞商工時報)』와 월간 잡지『조선실업구락부』,『내외호모정보(內外護謨情報)』의 4종이 허가되었다.

그런데 1926년 9월에 일간『시대일보』는 발행허가를 상실하여 폐간됨과 동시에 같은 명칭으로 새롭게 허가받은 것이 일간『중외일보(中外日報)』로 이름을 바꾸었다. 1927년 1월에는 월간 잡지 현대평론이 허가를 받았고, 앞의 중외일보는 1931년 10월 26일『중앙

일보』로 개제(改題)하고 또 1933년 3월 6일에는 다시 『조선중앙일보』로 개칭하였다. 이 신문은 1936년 9월 5일 소위 ‘일장기 말소 사건’에 관련되어 휴간하게 되어 다음해 11월 5일 발행권을 상실하고 결국 폐간하게 되었다. 그리고 『신생활』은 그 후 공산주의, 계급 투쟁, 사회혁명을 제창, 고취하게 되어 1923년 1월 8일 안녕과 질서를 방해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폐간되었다. 『개벽』은 반도에서 유일한 유력한 대중잡지였는데, 주의적 색채가 농후하여 1926년 8월 1일 이 또한 치안방해라는 이유로 모두 발행금지처분을 당했다. 『현대평론』은 이후 경영이 어려워져 발행 불능 상태에 빠지고, 1928년 1월 실질적으로 폐간되었으며, 『조선지광』도 경영이 어려워져 영구 휴간 상태에 있다가 1932년 7월 14일 폐간되었다. 『내외호모정보』도 역시 경영난에 빠져 1935년 9월 25일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폐간되었다. 또 『기독신보』는 종래 외국인이 발행했지만, 1933년 7월 31일 폐간하고 같은 날 조선인에게 발행이 허가되었다. 하지만 이후 경영이 뜻대로 되지 않아 결국 1937년 8월 1일에 앞으로 2개월간 휴간하겠다고 선언했지만, 만회하지 못하고 같은 해 12월 1일 결국 폐간하기에 이르렀다.

이상과 같이 현재 조선인이 발행하는 신문, 잡지는 12종에 이르고 허가받은 신문, 잡지의 최근 발행 상황은 배포 상세표와 같다. 그런데 조선인이 발행하는 신문, 잡지는 일본인이 발행하는 것과는 내용이 다르다. 즉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은 겨우 63만 명을 넘지 못하는 데 반해 조선에는 2,168만여 명의 조선 대중이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선 내 문화의 향상은 향학열의 발흥으로 이어져 통치의 혜택은 산간벽지에 이르기까지 교학(敎學) 보급되어 문자를 이해하는 자가 매우 많고 신문, 잡지에 대해서도 점차 이해가 깊어져 최근에 이르러서는 생활상 어려움이 없는 구매자가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모든 신문, 잡지는 뜻대로 되지 않아 대부분 경영난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또 언문 신문, 잡지는 별도로 관리 상황에서 서술하는 바와 같이 종래 민족의식에 치우쳐 총독정치를 비방, 곡필하는 등 반도 대중의 여론을 호도하는 폐단이 있다. 하지만 언문 신문의 논조는 바로 대중에게 반영되어 통치에 미치는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당국은 당시 이에 대한 관리를 맡겨 그 잘못된 편견을 시정하게 하고 또 한편으로 업자에게도 시정을 요구하여 특히 중일전쟁 발발 아래 눈에 띄게 태도가 바뀌었다. 그 논조와 필치는 점차 국책에 순응하고 제국 궐기의 참 정신, 국위의 선양, 출정 장병의 사기 고무, 시국에 국민의 대한 인식, 총후(銃後) 국민의 결속 후원, 애국운동, 시난 극복, 기타 시국에 관한 기사로 지면을 채우게 되었다. 이제 논조와 다른 상황에 대하여 두세 가지를 지적하자면 다음과 같다.

즉 언문 신문은 만주사변 아래 적극적으로 불온한 태도를 고쳤지만 계속하여 소극적

으로 불온한 것은 남아 있다. 그 특징은 (1) 황실기사, 관청기사 등에 대한 성의의 결여, (2) 사상범, 불순운동자에 관한 기사의 과대 취급, (3) 사물을 곡해하여 논하고자 하는 폐풍(弊風)을 지적할 수 있지만, ‘일장기 마크 사건’에 따른 동아일보 등에 대한 당국의 과감한 강압에 따라 이러한 소극적인 불온한 태도도 눈에 띄게 개선되어 1937년 1월 1일의 조선일보에는 양 폐하의 초상이 게재되었다(동아, 중앙은 휴, 정간 중).

이처럼 황실기사와 같은 것은 대부분 이를 게재하고 관청기사 또한 생략하는 폐풍이 사라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이들 기사는 크게 취급하지 않고, 그다지 성의를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설란에는 아직 스스로 당국의 시정(施政)을 성원하지 않는다. 또한 전년부터 계속된 기독교계 학교의 문제에 대해서는 암묵적으로 선교사 측에 동정하는 기색도 있고, 자자교(自自敎) 사건에 대해서도 공연히 당국의 발각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묻는 등 필치에 있어서 『동아일보』 정간 청분 이전에 비하면 개선되었다고는 해도 아직 유감스러운 점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당국에서는 수시로 그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정간에서 풀린 『동아일보』와 함께 서서히 그 개선을 촉구하여 지도방침을 확립하여 실행해야 한다.

그런데 올해 7월 8일에 이번 중일전쟁의 발단이 된 노구교(蘆溝橋) 사건이 발생하자 『매일신보』는 솔선하여 중국 측의 부정불신(不正不信), 요컨대 응징을 설파하고 또 『조선일보』 및 『동아일보』는 당초에는 사변에 관하여 아무런 사설을 게재하지 않고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보도기사에 관한 한 성실하게 제국 측의 성명과 주장을 게재한 것은 비교적 잘한 일로서 지도 편달한 효과가 크다고 인정된다.

그리고 사태는 매일 증대화하고 있으며 언문 신문의 태도도 이와 함께 급변하여 조선일보는 7월 19일에는 ‘아군’, ‘황실’ 등의 문자를 사용하고, 『동아일보』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7월 20일자 『조선일보』는 지상(紙上)에 중일전쟁을 해설할 때 “사변은 중국 측의 협정 무시에 의해 일어났다.”고 밝혔으며, 이어 『동아일보』는 “우리는 어떠한 사변에 당면해서도 그것을 정관대응(靜觀對應)하는 여유를 가져야 한다.”고 논하였다. 『조선일보』는 “우리는 최악의 경우에도 협력, 일치하는 한 가지 길이 있을 뿐”이라고 논단하였는데, 사태는 이미 이처럼 미온적인 필치를 허락하지 않는 데까지 진전하여 언문 신문의 논조는 한층 강화, 개선될 것이 요망되었다. 동아일보는 마침내 7월 31일 지상에 “우리는 사변의 완급과 진퇴를 우리의 휴戚(休戚)에 관련시킴으로써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였고, 『조선일보』도 8월 2일자 지상에 “국민 각 개인은 응분의 성의를 다하여 출정장병을 위로, 고무해야 한다.”고 반도 대중에게 호소하여 군국비상 시를 맞이하는 제국의 신문으로서 그 충성을 인정받기에 이르렀다.

이후 새롭게 상해에서 돌발한 사건을 계기로 하여 중일전쟁은 전 중국으로 확대되었는데, 언문지는 사변의 해설 인식에 노력하면서 또한 거국일치로 중국을 응징해야 한다고 설파하는가 하면 전사자의 영령을 위로하고 전승(戰勝)을 축복하는 등 종래 전혀 볼 수 없던 태도를 보여 일반 민중에게 준 효과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언문 신문은 이상과 같이 ‘일장기 마크 사건’을 계기로 일반적으로 개선되었으며 이번 중일전쟁에 의해 한층 더 개선되어 현재 그 필치는 당국의 기대에 근접했다고 하더라도 황실기사, 관청기사 및 총후 기사의 취급은 유감스러운 점이 적지 않다. 여전히 개선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

일본인 빌행 신문·통신·잡지 표

신문

제호	인가년월일	발행시기	계재사항	사용문자	소속도명	비고
경성일보	1906.8.10.	월간	일반시사	일문	경기	괄호 안은 사용 할 수 있다는 뜻
증선신보	1908.6.12.	주간	동상(同上)	동상(同上)	동상(同上)	
조선신문	1908.11.20.	일간	동상	일문(영문)	동상	
경성신문	1909.3.24.	주간	동상	일문(영문)	동상	
동아경제시보	1919.12.13.	월간	일반경제 시사	일문	동상	
조선일일신문	1920.4.17.	일간	일반시사	동상	동상	
법정신문	1920.6.29.	5일 25일	법조관계를 중심으로 한 시사	동상	동상	
조선상공신문	1920.11.29.	일간	일반경제 시사	일문 (영문)	동상	
조선경찰신문	1920.12.9.	1일 15일	경찰시사	동상	동상	
조선매일신문	1921.5.13.	일간	일반시사	일문	동상	
조선교육신문	1925.12.29.	월간	교육시사	동상	동상	
조선수산시보	1937.10.9.	동상(同上)	일반수산 관계	동상	동상	
증선일보	1909.8.9.	일간	일반시사	동상	충남	
전북일보	1905.12.25.	동상	동상	동상	전북	
군산일보	1908.4.15.	동상	동상	일문 (한글)	동상	
동광신문	1920.11.18.	동상	동상	한글 (일문)	동상	
목포신보	1908.6.11.	동상	동상	일문	전남	

광주일보	1909.5.9.	동상	동상	동상	동상	
조선민보	1905.3.26.	동상	동상	동상	경북	
대구일보	1928.8.11.	동상	동상	동상	동상	
조선시보	1892.7.11.	동상	동상	동상	경남	
부산일보	1907.10.1.	동상	동상	동상	동상	
남선일보	1908.10.1.	동상	동상	동상	동상	
조선수산신문	1925.12.3.	동상	동상	동상	동상	
평양매일신문	1920.4.1.	순간	수산시사	동상	평남	
서선일보	1923.7.18.	일간	일반시사	일문 (한글)	동상	
압강일보	1906.12.1.	동상	동상	동상	동상	
북선시사신보	1908.12.4.	동상	동상	동상	함남	
원산매일신보	1909.1.1.	동상	동상	동상	동상	
북선일보	1908.8.1.	동상	동상	동상	함북	
북선일일신문	1919.12.13.	동상	동상	일문 (한글)	동상	

통신

제호	인가년월일	발행시기	계재사항	사용문자	소속도명	비고
동아전보통신	1906.4.3.	일간	일반시사	일문	경기	
일간대륙통신	1920.2.20.	동상	동상	동상	동상	
조선경제일보	1920.3.10.	동상	일반경제 시사	동상	동상	
상업통신	1922.11.8.	동상	동상	동상	동상	
제국통신	1923.4.14.	동상	일반시사	동상	동상	
조선통신	1926.4.23.	동상	일반시사의 한글 번역	동상	동상	
동맹통신	1935.12.31.	동상	일반시사	동상	동상	
동맹통신	1936.6.1.	동상	동상	동상	경남	

잡지

제호	인가년월일	발행시기	계재사항	사용문자	소속도명	비고
조선과 만주 (朝鮮及滿洲)	1908.2.1.	월간	일반시사	일문	경기	
경기잡필	1920.2.9.	동상	동상	동상		
조선공론	1920.10.8.	동상	동상	일문(한글)		
조선철도협회 회지	1922.1.16.	동상	철도시사	일문		

경성토목건축 업협회보	1922.1.23.	순간	토목건축기사	동상		
조선지방행정	1923.12.10.	월간	일반시사	일문(한글)		
철도의 벗 (鐵道之友)	1926.4.23.	동상	철도에 관한 일체의 사항	일문		
경무汇报	1926.6.10.	동상	일반시사	동상		
조선소방	1929.2.26.	동상	소방학술통계 회사일반시사	일문(한글)		
사법협회잡지	1930.1.30.	동상	사법일반시사	일문		
선만의 위생 (鮮滿之衛生)	1936.10.29.	동상	위생에 관한 일반시사와 광고	동상		
문교의 조선 (文教之朝鮮)	1937.8.27.	동상	교육기사	동상		
실업의 조선 (失業之朝鮮)	1919.12.26.	동상	일반시사	동상		
함남경우	1922.9.1.	동상	경찰기사	동상		
함북경우	1933.9.5.	동상	동상	동상		

조선인 발행 신문 · 잡지 표

신문

제호	인가년월일	발행시기	제재사항	사용문자	소속도명	비고
매일신보	1906.2.	일간	일반시사	한글	경기	
조선일보	1920.1.6.	동상	동상	한글(일문)	동상	
동아일보	1920.1.6.	동상	동상	한글	동상	
민중신문	1930.1.25.	주간	동상	일문(한글)	동상	조선인이 발행하였지만 일문을 사용함
동아경제신문	1932.4.3.	월 2회	경제시사문예	한글	동상	
남선경제일보	1924.11.19.	일간	일반경제시사	일문(한글)	경북	조선인이 발행하였지만 일문을 사용함
대동신문	1922.5.27.	주간	일반시사	한글	평남	

잡지

제호	인가년월일	발행시기	제재사항	사용문자	소속도명	비고
증외의약신보	1908.8.25.	월간	의약기사	한글	경기	

천도교회월보	1909.8.15.	동상	종교기사	동상	동상	
진홍	1921.1.29.	동상	사회교화기사	동상	동상	
조선실업구락부	1932.4.3.	동상	경제시사	일문(한글)	동상	조선인이 발행했지만 일문을 사용함
의약시보	1932.4.3.	동상	의약기사	한글	동상	

신문·통신·잡지 발행시기 구분 표

도별	신문, 통신, 잡지 발행 수	발행시기의 구분											
		일간		주간		순간		월 2회		월간		계	
		일 본 인	조 선 인										
경기	41	12	3	2	1	1		2	1	14	5	31	10
충북													
충남	1	1											1
전북	4	2		1						1			4
전남	2	2											2
경북	3	2	1										2 1
경남	5	4				1							5
황해													
평남	3	2			1								2 1
평북	1	1											1
강원													
함남	3	2								1			3
함북	3	2								1			3
계	66	30	4	3	2	2		2	1	17	5	54	12

신문·통신·잡지 계재사항 종류 표

도별	신문, 통신, 잡지 발행 수	계재사항					
		정치 및 일반 시사를 계재한 것		기타		계	
		일본인 발행	조선인 발행	일본인 발행	조선인 발행	일본인 발행	조선인 발행
경기	41	18	4	13	6	31	10

충북															
충남	1		1									1			
전북	4		3				1					4			
전남	2		2									2			
경북	3		2						1		2		1		
경남	5		4			1					5				
황해															
평남	3		2		1						2		1		
평북	1		1								1				
강원															
합남	3		2			1					3				
합북	3		2			1					3				
계	66		37		5		17		7		54		12		

신문·통신·잡지 사용문자 종별(種別) 표

사용 문자 종별	인별	경 기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황 해	평 남	평 북	장 원	합 남	합 북	계
일문	일본인	24		1	2	2	2	5			1		3	2	42
	조선인														
한글	일본인														
	조선인	7							1						8
영문	일본인														
	조선인														
일문	일본인	6			2					2				1	11
한글	조선인	3					1								4
일문	일본인	1													1
영문	조선인														
일문	일본인														
한글	조선인														
계	일본인	31		1	4	2	2	5		2	1		3	3	54
	조선인	10						1		1					12

(하략)

〈출전 : 『朝鮮出版警察概要』, 朝鮮總督府 警務局, 1936년, 1~18쪽〉

2. 경성일보사 개황(1920)

(상략)

2) 사시(社是)

『경성일보(京城日報)』의 창립은 앞 장에서 개술(概述)한 것처럼 그 연유를 사시에 명백히 밝혔지만, 1910년 10월 2일 데라우치(寺內) 총독은 다음의 훈시(訓示)를 주어 구체적으로 이를 명확히 하였다.

- 『경성일보』 사원은 충군애국(忠君愛國)의 정신을 발휘하여 조선총독부 시정(施政)의 목적을 관철하는 데 힘쓸 것.
- 사원 일동이 질서를 지키고 기율(紀律)을 따라 한마음으로 협력, 정려(精勵), 분진(奮進)함으로써 사운(社運)의 융성을 도모할 것.
- 공정하고 온건한 필봉(筆鋒)을 근엄히 하여 경성일보의 품위를 높이고 신용을 두터이 하여 세력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
- 각 사원은 품행을 방정히 하여 위의(威儀)를 닦고 체면을 살려 신문기자로서 자격을 고상히 할 것.
- 어떠한 경우에도 잇사람의 명령을 잘 받들고 각자의 능력을 경주(傾注)하여 자발적인 활동을 통해 직무에 충실하도록 할 것.

1919년 3월 사칙(社則) 개정(更正) 시에 가토(加藤) 사장은 다시 한 번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번 사칙, 회계규칙, 직공(職工) 규칙, 직공 부조(扶助) 규칙을 개정(改訂)하게 된 것은 1910년 10월 2일 조선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각하가 본사에 주신 훈시를 명심하여 사시(社是)를 표명하고 사원이 준수해야 할 조항을 규정한 것이다. 즉 엄숙한 규율 아래 직무에 종사하고 노력하여 직책을 완수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며 품행을 바르게 하고 품위를 유지하며 동료 간에 서로 화합함으로써 사운(社運)을 융성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조직 및 사원

(가) 분과

창립 시에 조직은 일반적인 예에 따라 매우 단순한 것이지만, 그 후 몇 차례 변경하여 1915년 3월에는 비로소 사칙(社則)을 제정하기에 이르렀으며, 1919년 3월 이를 경정(更正)하고 다음해인 1920년 3월 다시 일부를 개정하여, 경일편집(京日編輯), 매신편집(每申編輯), 영업의 3국(局) 및 비서과(秘書課)를 설치하고, 각 부를 여기에 다음과 같이 예속시킨다.

경일편집국–논설부, 통신부, 정치부, 경제부, 사회부, 편집부, 조사부

매신편집국–논설부, 편집부, 외사부, 사회부, 지방부

영업국–서무부, 경리부, 광고부, 판매부, 대리부, 사진부, 주조부, 공장

(중략)

5) 『매일신보(毎日申報)』

『매일신보』는 『경성일보』보다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초기에 영국인 베델이 경영하던 것을 『대한매일신보』라고 하였다. 통감부를 설치할 때, 베델은 극단적인 반대론을 주장하여 조선인을 선동하고 마침내 일본과 영국의 국교를 저해하기에 이르렀다. 국법에 따라 처벌받아 출옥 후 바로 병사하였으며, 같은 영국인인 마남이 승계했지만 역시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고 바로 경영난에 빠지게 되었다. 이를 매수하여 『매일신보』로 제호를 바꾸고 독립회계로 경영하게 되었는데, 1913년 본사를 합자회사로 하여 완전히 합동하였다. 현재 편집국은 이를 분치(分置)하고(조직은 앞 장에 나온다) 영업은 합동처리하고 있다. 현재 『매일신보』에 전속하는 지국은 18, 분국은 47, 판매점은 78개소에 이르며 판로(販路)는 점점 더 확충할 계획이다.

『매일신보』의 주의 주장은 『경성일보』와 다를 바 없지만 온전히 조선인을 구매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사의 선택과 취사에는 다소의 차이가 없지는 않다.

1910년 10월 도쿠토미(德富) 감독이 다음과 같이 훈시하였다.

- 『매일신보』가 신문으로서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천황 폐하의 지극한 인애(仁愛)가 일본인과 조선인을 일시동인(一視同仁)하시는 것을 조선인에게 선전하는 것에 있다.
- 집필자는 공정해야 한다. 결코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쳐 당동별이(黨同伐異)

한 봇을 휘두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문장은 간정명창(簡淨明暢)해야 한다.
- 일반적으로 논조는 온건 타당하도록 한다. 결코 궤언망설(詭言妄說)을 고취하지 않도록 한다.
- 『매일신보』는 『경성일보』와 제휴하여 보조를 맞추도록 한다.
(하략)

〈출전 : 『京城日報社誌』, 京城日報社, 1920년 9월 1일, 5~8쪽, 22~24쪽〉

3. 송순기(勿齋學人), 송이기수영창(頌以其壽永昌)

우리 『매일신보(毎日申報)』는 창간 이래로 물(物)은 서(誓)하고 성(星)은 옮기어 이미 20춘추에 이르렀도다.

이 20춘추가 아득하지 않은 바가 아니며, 많지 않은 바가 아니다.

그러나 천추(千秋)를 다하도록 누(漏)치 아니할 우리 매일신보는 오히려 소장기(少壯期)에 있는 것이다. 아니다, □란기(□亂期)에 있는 것이다. 우리의 생명은 유한하지만 우리 신문의 생명은 무한하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존은 영구하지 않지만 우리 신문의 생존은 영구하다. 인(仁)한 자는 반드시 장수(壽)한다는 것과 같이 공명정대한 신문은 반드시 □□하는 것이다. 신문이란 천하의 공기(公器)이다. 민중의 목탁이다. 또는 사회의 경종이다. 그리고 신문은 자체가 역사이다. 명□(明□)하면 역사는 과거의 신문이며, 신문은 현재의 역사이다.

예로부터 소위통고금달사리□(所謂通古今達事理□)라는 자(者)라야 상당한 인격적 지위를 □하였다. 역사를 읽는다는 것은 옛 것과 통하고자 함이요, 신문을 읽는다는 것은 현재를 알고자 함이다. 이미 옛 것과 통하고, 현재를 아는 자가 된다면, 이는 즉 사리(事理)에 통달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역사를 통하지 못한 자와 신문을 읽지 못한 자는 상식의 소유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신문은 사람의 상식을 양성하는 기관이다. 즉 말하자면 청심□지(清心□智)의 약석(藥石)이다. 이와 같은 전지에서 우리 『매일신보』는 조선 민중에 있어서 얼마나 절대적 공로를 하였으며, 또 조선 사회에 대하여 얼마나 지대한 많은 공헌을 □□였는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본지의 자찬(自讚)

인 듯하지만 실은 자찬이 아니며, 또 자부(自負)인 듯 하지만 실은 자부가 아니다.

명백히 말하지만, 우리 『매일신보』는 조선에서 신문계로는 어머니(母)이며, 패왕(霸王)이다.

더구나 본지는 어디까지나 불편부당하며, 또 어디까지나 공명정대하다. 지령(紙齡)이다하도록 사운(社運)은 날로 □□하여 오며, 사운이 융창(隆昌)할수록 민중의 신뢰가 더욱 두터워진다. 성쇠는 인간의 원리라 하지만 본사는 날로 성할지언정 결코 쇠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 매일신보사는 영구히 사멸하지 않을 것이다. 언론사의 생명이 영구할수록 우리의 책임이 더욱 중하고 사명이 더욱 크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어떻게 하면 본지의 강령을 더욱 간명하며, 또 어떻게 하면 민중의 신뢰에 부합할까 하고 전고자지(戰鼓自持)하는 바이다. 우리 언론사는 이에 융창(隆昌)의 운(運)을 편하는 동시에 사옥을 신축하고 오늘로써 낙성(落成)을 고하게 되었다.

요현(瑤軒)이라 할까, 기구(綺構)라 할까, 자각(紫閣)이라 할까, 단루(丹樓)라 할까, 윤(輪)하고, 환(奐)하며, 영(玲)하고, □하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이 괭걸(宏傑)의 사옥을 신축하였다 하여, 이로써 만족하다 여기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은 외관의 미를 갖춘 동시에 더불어 내관의 미를 장식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관의 미는 신문지상에 드러나는 것이며, 외관의 미는 건물에 드러나는 것이다. 우리 언론사는 이를 겸비해야 할 것이다. 이에 「어만사년 영세무투(於萬斯年 永世無渝)」를 □하는 바이다.

〈출전 : 勿齋學人 頌以其壽永昌, 『毎日申報』, 1924년 6월 1일〉

4. 홍승구(木春山人), 조선 언론계의 과거와 현재(1~3)

- 조고자(操觚者)¹⁾ 예찬

하산(霞山)형, 청우중하(青牛仲夏)의 계절에 고고(呱呱)한 제일성(第一声)을 드날린 이래 건전하고 또 견실한 발달을 이룬 귀지(貴誌) 『신민(新民)』이 새로이 응대한 대비약을 시작하려는 적호(赤虎)의 신력(新曆)을 맞이하는 것을 먼저 치하합니다. 조선의 문운왕

1) 문필가.

성(文運旺盛)을 위하니 뭐니 하는 세속 외교적 예찬으로 그럴 뿐 아니라, 내가 평소 경애하는 귀형이 주장(主掌)하기 때문이 한 가지요, 또 무사(無似)한 졸문(拙文)을 가지고 왕왕 그 귀중한 지면을 허비하여 오던 불천(不淺)한 인연을 가진 나의 사정으로도 억제하지 못할 기쁨의 정이 넘치는 것이 두 가지외다.

그런데 이와 같이 뜻 깊은 신년호 신장(新裝)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제공하라고 징발령을 내리시기에 사불획(辭不獲)할 것을 예기하고, 쉽게 받기는 하였습니다만 물려와 생각한 즉, 형이 요구하신바 과거와 현재의 우리 언론계 비판이라는 제목이 과연 나에게 있어 미문부산(微蚊負山) 이상의 과중한 부담인 것을 깨닫고 뉘우쳤습니다. 불문(不文)과 단식(短識)은 지금에 시작된 것이 아닌즉 새삼스러운 겸양(謙讓)은 그만둘지라도 조고계(操觚界)²⁾의 현역을 사퇴한 아래로 벽항(僻巷)에 누워 외계사물과 접촉하는 기회가 적음에 따라 자연의 약속으로 옛 지식은 모두 잊고, 새 지식에 매진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자미(紫米)와 교전하기에 골몰하여 상두연전(床頭硯田)이 황무한 곳이므로 이러한 주문을 받으면 광영도 지극하지만은 적지 않은 고통이 수반됩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 떼, 칼을 버린 군인, 붓대를 던진 신문기자를 아울러 연상하여 보시오. 분수를 자췌(自揣)하지 못하고 인수한 나의 맹목적 대담보다도 비재(菲才)에게 큰 임무를 부담시킨 형의 현명하지 못한 비례(比例)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잘못된 전제가 재미있는 결론을 낳지 못할 것은 천지간의 정칙(定則)이 올시다. 독자에게 노출(露拙)시키는 것을 원망하여 두는 것은 반드시 나의 비겁함이 그렇게 할 뿐 아니라 지면을 더럽히는 것을 자각한 양심이 그렇게 하는 것이외다.

◇

하산형. 모진 바람이 창에 노호(怒号)하고, 동우(凍雨)가 집을 난타하여 나의 서재는 지금 만주대륙에서 번복(翻覆)되는 장곽양웅전투(張郭兩雄戰鬪)³⁾ 이상으로 처참하고, 맹렬한 광경을 연출합니다. 외출 못하는 무료한 여가에 안상잔질(案上殘帙)을 신수념출(信手拈出)하여 읽고 있습니다.

크고 우렁차게 노래를 부른다(浩浩浩浩浩歌)

천지 만물이 내게 어찌하랴(天地万物如吾何)

2) 문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사회. 신문·잡지의 기자, 편집자, 평론가, 문필가들의 사회를 이르는 말.

3) 장, 꽈은 만주군벌.

옥당 금마는 어디에 있는가(玉堂金馬在何處)
운산 석실은 우뚝 높이 솟아 있도다(雲山石室高嵯峨)
머리 숙여 땅은 비록 작으나 경작하고 싶고(低頭欲耕地雖少)
하늘을 우러러 길게 휘파람 부니 하늘이 얼마나 많은지(仰天長嘯天何多)
그대는 나에게 한 말 술로 취하게 하니(請君醉我一斗酒)
붉은 햇빛 얼굴에 부딪히니 봄바람 화락하구나(紅光入面春風和)

〈마자재가(馬子才歌)〉

누가 조정에 걸터앉아 좋은 음식을 먹는가(誰踞廊廟飽甘肥)
천하의 문장은 재야에 있도다(宇內文章在布衣)
노 하나 잡고 강과 바다를 어지러이 다니니(一棹去來湖海闊)
잔잔한 안개 낀 물에서 흰 갈매기가 나는구나(烟波洗蕩白鷗飛)

〈일본 모씨(某氏) 작(作)〉

과연 내 마음을 타인이 선도하였습니다. 식자우환인지는 모르겠으나, 낭핍일전(囊乏一錢)하여 모자 귀가 축 쳐져 상가(喪家)의 개와 흡사하면서도 글줄이나 쓴다고 의기양양한 세상의 신문기자선생들이 아마 이 맛으로 사는 모양입니다. 정권(政權)과 금권(金權)은 남에게 맡겨라, 나는 오직 문장으로 살겠다는 것이 기자선생들의 자위사(自慰辭)인 듯합니다.

신문과 신문기자에게는 칭호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른바 무관의 제왕, 사회의 목탁, 여론의 선구자, 사조의 지남철 등 무엇하면서 교활한 세상 사람들이 비행기 위로 떠받들 뿐 아니라, 그들 자신도 이러한 마취약에 과도로 취하면, 쉽게 과대망상환자로 변하여 그럴듯한 착각의 혼수상태에 빠지는 모양입니다. 자기가 면허(免許)를 받은 이천만 민중의 무슨 기관이니, 혹은 세계의 정의와 인도(人道)를 한 손으로 제조 겸 판매하는 듯이 무산대중의 친구이니, 정의인도주의이니 무엇 무엇하면서 떠드는 선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련한 활계(滑稽)라 할까요, 통쾌한 비참이라 할까요…….

세상에 초인간이 있다면 모르거니와 우리처럼 사신곡복(絲身穀腹)하는 동물들은 권세를 가져야 하고, 금전을 가져야 사는 것이외다. 그뿐이리오. 저 창생(蒼生)들의 두상에 정권과 금권의 위력을 종횡무애(縱橫無碍)하게 발휘하며, 통쾌림리(痛快淋漓)하게 사용하는 것이 남자의 본심일 것이다. 이 점에 있어 문필가들은 간혹 극소수의 예외가 있지 만은 실로 수평선 이하에 있습니다. 우주를 포괄할 듯한 심흉과 산하를 울릴 듯 한 기백

을 가졌다 하여도 반문(半文)의 가치가 없는데 어찌합니까?

보시오. 일상에 대연장담하고 호기로운 기자선생들의 생활 상태를. 무관의 제왕이라면서도 자그마한 일개 지주의 악행을 말하여도 경리(警吏)의 포승줄이 신변을 위협하지 않습니까? 피근견족(疲筋繭足)⁴⁾ 밤낮으로 활동하다가도 일차로 사주(社主)를 화내게 하면, 쪽지 한 장으로 단두대에 올라 생활의 근거를 치탈(褫奪)당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경고문을 보내고 성토서를 돌린다 해도 정권, 금권자들의 귀에는 풀벌레 울음소리만도 못합니다. 그러하기에 항우(項羽)라는 영웅이 책은 성명을 쓰면 그만이라고 갈파하였고, 일본의 어떤 배우(俳諧師)는 ‘시를 짓느니 밭을 갈고 어떤 과자보다도 열음과자(高利貸)’라는 격언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듯합니다.

◇

하산형. 이렇게 쓰고 보니 뻑이나 탈선이 되었습니다. 탈선도 참으로 대탈선이외다. 현역은 아닐지라도 신문사 밥을 먹어 왔던 나로서 물론 「초록은 동색」이라는 격으로 신문기자 예찬을 써볼까 한 것인데 예찬은 고사하고, 저주하였으며, 비웃고 꾸짖었습니다. 그러기에 당신이 현명치 못하다고 예언한 것이지요.

내가 지금 읽고 있는 고금인(古今人) 시집 중 우리 선철(先哲) 중에서도 대철학자인 율곡 이이 선생의 작품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출세와 은퇴 모두 천명이요 어찌 사람에게 달렸으랴마는(行藏由命豈由人)

뜻은 일찍이 자신만 깨끗이 하자는게 아니었다네(素志曾非在潔身)

궐문에 세 번 상소로 성스러운 임금 하직하고(闖闕三章辭聖主)

강호의 조각배에 외로운 신하 실었구나(江湖一葦載孤臣)

재주 용렬해 남묘의 밭같이에나 적합한데(疎才只合耕南畝)

맑은 꿈 부질없이 북신(임금 계신 곳)을 향한다네(清夢依然繞北宸)

풀로 엮은 집에 자갈밭 옛 가업에 돌아왔으니(茅屋石田還舊業)

반평생의 심사 가난쯤은 걱정 않네(半生心事不憂貧)

〈율곡 이이 작품〉

참으로 일창삼탄(一唱三嘆)할 가치가 있습니다. 더욱이 제2구는 선생의 우시개세(憂

4) 발에 물집이 잡힐 정도로 피곤함.

時慨世)하는 충애(忠愛)의 정신으로 일세의 지도자로 자임하여 일신의 명리(名利)를 희생하여도 후회하지 않을 결심이 말씀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것이외다. 신문기자를 예찬할 것은 …… 위언(危言)과 당론(黨論)이 시대의 집권자에게 기획(忌諱)되어 박해의 화를 입어도 후회하지 않으며, 가무담석(家無擔石)으로 삼순구식(三旬九食) 할지라도, 태연자약하여 일관된 필(筆)로 만복불평(滿腹不平)의 기를 토하고, 가천예지(呵天脫地)⁵⁾하며, 특립불기(特立不羈)⁶⁾하는 곳에 또한 남아의 진골두(真骨頭)가 있는 것이외다. 완적(阮籍)의 백안(白眼)과 묵자(墨子)의 열장(熱腸)을 구비한 것은 오직 신문기자 하나뿐인가 합니다.

신문의 종류가 많은 동시에 기자의 종류도 천수만별이 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기자는 절옥투향(竊玉偷香)⁷⁾의 음란한 행태를 그리거나, 빙작청취(憑酌聽醉)의 누취(陋趣)를 묘사하거나, 기타 모든 사회의 어두운 면을揭露하고, 인간의 추악성을 폭로하는 기자들을 가리킨 것은 아니외다. 적어도 마음에 도의애인(道義愛人)의 주장을 가지고 필하(筆下)에 경세제물(經世濟物)의 논의를 펼쳐 세도(世道)와 인심(人心)에 패익(裨益)할 것을 기하는 오당(吾黨)의 사(士)를 이른 것이외다. 그런데 나는 비록 짧은 경험이지만은, 이러한 기자선생이 있음을 보지 못한 것이 한갓 나의 불행이 아니라 조선 언론계를 위하여 불행이요, 다시 세도를 위하여 대불행이라 합니다. 편편(翩翩)한 소재자(小才子)들은 있습니다. 사이비 지사(志士)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문필계를 돌아보면, 서양은 그만두고라도 일개 후쿠자와 유키치(福沢諭吉)가 없고, 일개 양치차오(梁啓超)가 없고, 일개 도쿠토미 조이치로(徳富猪一郎)가 있지 아니합니다. 모든 것에 낙오된 우리인 즉 걸출한 신문기자가 없다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하면, 다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

하산형.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우리 과거에 있는 신문과 신문기자에 대하여 적어볼까 합니다. 조선 신문의 기원으로는 누구나 계미(癸未) 갑신(甲申)년에 창간한 이노우에 가쿠고로(井上角五郎) 씨의 『한성순보(漢城旬報)』를 가리킴에 이의가 없을 것이외다. 벼슬 없는 선비들이 멋대로 논의하는 패악이 심했던 그 시대에는 시정득실(時政得失)을 논의하는 길이 오직 원수(元首)에게 상소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일정한 격례와 격식이 있어 용이하지 않았습니다. 어찌하던지 『한성순보』가 조선에

5) 하늘을 꾸짖고 땅을 노려봄.

6) 어디에도 매이지 않고 홀로 섬.

7) 남녀 간의 은밀한 사랑.

있어 근대식 신문지의 원조인 것은 사실이외다. 그러나 주재자 이노우에(井上) 씨는 한국 정부의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의 촉탁원이라는 준관리였고, 『한성순보』는 관설(官設)박문국(博文局)에서 간행한 것인즉 따라서 신문지라는 것보다도 어찌 보면 관보(官報)의 일종이라는 것이 타당할 것이외다. 나는 한 친구의 집에 보존되어 있는 몇장을 보았습니다. 그 체재는 조선 백지(白紙)에 구식주자(舊式鑄字)로 인쇄한 것이 마치 이삼백 년 전의 인쇄한 문집과 같고, 기사의 내용도 궁정록사(宮廷錄事)와 내외관리이동(內外官吏異動)과 외교조약과 법령 등을 가득 게재할 뿐이요, 독자도 각 관공서에 한하였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내려와 갑오경장(甲午更張) 이후에 와서 비로소 신문다운 체재와 성질을 가진 여러 개의 언론기관이 출현하였다 합니다. 그 발행된 연도의 선후는 모르나, 『독립신문(獨立新聞)』, 『황성신문(皇城新聞)』 및 『제국신문(帝國新聞)』 등은 우리 사람의 손으로 발행되었고, 일본인 측에서는 『한성신보(漢城新報)』, 『대동일보(大東日報)』, 『대한일보(大韓日報)』라는 것이 조선국한문으로 발간되었습니다. 장지연(張志淵)이니, 누구누구 하는 사람들이 오늘에 와서 혹존혹몰(或存或沒)한 노인들은 그때 우리 언론계의 용장(勇將)들이라 합니다. 그들의 혹자들은 황국협회(皇國協會)라는 부보상(負裸商)의 거봉(巨棒)에 맞아서 생사가 오락가락하였고, 유명하던 혹리(酷吏) 김척안(金隻眼, 永準) 같은 마호(魔豪)에게 잡혀 영해(嶺海)와 질곡(桎梏)의 고초도 두루 겪었다 합니다. 무슨 일이고 처음 창업시대에는 모든 곤란이 수반되는 것은 면치 못할 일이지만 조선의 신문지도 출생 초부터 비상(非常)한 악전과 고투를 겪어 왔습니다.

갑오(甲午)로부터 갑진(甲辰), 즉 청일 전쟁으로부터 러일 전쟁에 이르기까지는 조선의 언론계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으나, 을사보호조약(乙巳保護條約) 전후부터 경술병합(庚戌併合) 당시까지 6, 7년 동안은 가장 파란중첩하여 신문지의 전성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그 종류로 볼지라도 전기 신문 외에 신간된 중요한 것을 적어보면, 『만세보(萬歲報)』, 『국민신보(國民新報)』, 『대한신문(大韓新聞)』, 『대한민보(大韓民報)』,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 『시사신문(時事新聞)』 등 국한문지와 『경성일보(京城日報)』, 『경성신보(京城新報)』 등 일문지와 『서울프레스』라는 영자지 이외에 일본인 측의 경판제신문(京阪諸新聞), 즉 보지(報知), 시사(時事), 국민(國民), 만조(萬朝), 조일(朝日), 매일(毎日), 중앙(中央) 등 각지가 모두 전속 특파원을 경성(京城)에 주재시켜 통감정치에 성원하는 한편 그들의 국민적 대한(對韓) 여론이라는 것을 고취하기에 노력하였습니다.



하산형. 그때나 지금이나 조선 사람들이 신문, 잡지 대금을 잘 안 냈습니다. 등통(鄧通)⁸⁾의 동산(銅山)을 가져도 경영난에 빠질 것은 당연한 일인데, 미약한 그때 신문경영자들의 곤란이야 실로 상상 이상일 것이외다. 일진회(一進會)의 기관지인 『국민신보』와 이완용(李完用) 내각 원조하에 있던 『대한신문』은 당시 하늘을 찌를 기세를 가진 대정당과 집권자의 배경이 있으므로 수지계산에 그다지 열중하지 않았겠지만 그 외에는 비록 영국인의 치외법권 엄호로 통감부가 어찌지 못하여 일세를 풍미하던 베델(裴說) 씨의 『대한매일신보』까지도 50전이니 1원이니 하는 대금만 보내주어도 영수증 외에 『문명록(文明錄)』이라는 참신 기발한 고찰(考察)을 내어, 그 사람을 천하에 소개하며 대금지불을 장려하던 것을 모두 알 것이외다.

그때에 있던 각 신문에 대하여 한마디 할 것은 각각 그 신문에 특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주의와 주장뿐 아니외다. 즉 『대한민보』는 인물풍자만화를 처음 게재하여 호평을 받았고, 『대한신문』은 조선소 설계의 비조(鼻祖)인 국초(菊初) 이인직(李人植) 씨의 『귀(鬼)의 성(聲)』, 『은세계(銀世界)』, 『치악산(雉岳山)』 등의 창간 대작이 특히 가정부인들에게 환영을 받았습니다. 또한 『제국신문』의 순조선 국문 사용과 『국민신보』가 독자에게 지상투표모집을 시행한 것이며, 『대한매일신보』의 시사단평이라든지, 『만세보』가 새로이 루비 활자를 쓴 것이 모두 그때에는 파천황(破天荒)의 신시험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때의 신문은 아직도 초창시대이요, 혼돈시대이며, 따라서 유치(幼稚)하던 시대이외다. 그 편집방법의 난잡무륜(亂雜無倫)한 것이라든지, 활자와 기계의 불비한 것이라든지, 논지의 조지대엽(粗枝大葉)으로 공막(空漠)한 추상적 문자라든지, 기사가 동월인신공격(動輒人身攻擊)으로 흘러 오늘날 함흥 김모(金某) 같으면 명예훼손 고소로 유일부족(維日不足)할 만큼 악매난조(惡罵亂嘲)하여 심지어 호구호마(呼狗呼馬)를 하였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중휴(衆咻)와 군방(群謗)이 일신(一身)에 총집하여 개인 비행을 매일 후욕(詬辱)하여도 고소하기는 고사하고, 눈썹 하나 까닥하지 않고 있던 이모(李某) 씨는 과연 함흥(咸興) 씨 이상의 거복활량(巨腹濶量)일 뿐 아니라, 초인간적이 아니면 초범인적 아회가(雅懷家)인가 합니다.

그렇지만 하여간 문장대가들이요, 우국지사들이 집합한 연총(淵叢)이었습니다. 영육

8) 우리나라 문제 때 충신. 황제 문제의 등장 고름을 입으로 뺏아내자 이에 감격한 문제가 총애하여 촉 땅 엄도에 있는 동산을 주고, 그곳에서 동전을 주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었다. 그러나 이를 시기한 황태자가 문제에 이어 즉위한 후 등통을 면직시키고, 화폐주조도 금지시켜 결국 돈 한 푼 가지지 못한 채 굶어죽었다.

이해를 도와시하고, 모든 심혈을 경주하여 기자의 천직을 다하려고 애쓰던 까닭에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이라는 거필(巨筆)을 발휘해 뜨거운 눈물을 뿌리던 위암거사(韋庵居士)라든지, 일본 합방건백서(合邦建白書)를 기초하여 거세(舉世)로 당시(瞻視)하게 하던 매하산인(梅下山人)⁹⁾이라든지, 시비와 선악은 논외로 하고, 어찌했던 진정(眞情)은 유유히 흐르고, 활기는 넘쳤습니다. 근일과 같이 과학과 미술을 응용하여 교묘히 상품화한 ‘하이카라’적 감상은 아니 생기지만 일종의 늄름한 고무사식(古武士式) 면모는 있었습니다. 동시에 보도기관의 임무보다도 교과서식으로 신문지를 발행한 듯한 기역이 납니다. 다음은 다음 호로…….

(12월 15일 삼청서옥(三清書屋)에서 빗소리를 들으며)

〈이상 (1)〉



하산형. 전 월호에서 나는 우리 언론계의 갑오(甲午)로부터 경술(庚戌)에 이르기까지 약십수년 동안의 대강의 내용을 극히 개괄적으로 서술하였습니다. 그리고 초창기에 있었던 우리의 언론계 선배들이 정치상으로 온갖 박해를 받아가며, 물질적으로 모든 고통을 겪어 경영난에 경영난을 거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능히 이것을 인내하며, 반항하여 기자의 천직을 다하기에 노력하여 오던 그 국사(國士)적 태도를 예찬하였습니다. 과연 그때 선배들의 고심참담(故心慘憺)한 경험담을 들어보면 문장의 서투름과 편집기술의 우열은 제쳐두고, 그 풍상(風霜)에 단련된 기개와 국가를 위한 열렬하고 비장한 혈성(血性)이며, 의연한 선각자의 생각을 가진 점에서 존경하며, 시세(時勢)가 좋지 못해 만사가 진적(陳跡)을 이루고, 오늘날에 와서 혹존혹몰(或存或沒)하여 사회의 기억으로부터 사라져 가는 것을 보면, 서글픈 마음을 금치 못합니다.

『한성순보(漢城旬報)』가 조선 신문의 시발점이란 것은 전에 소개하였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신문으로 볼 수 없다는 것도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조선에서 신문다운 신문이 시작된 것은 아마도 조선 개화당(開化黨)의 지도자로 지금 미주에 살고 있는 노지사(老志士) 서재필씨(徐載弼氏)의 지도하에 생겨난 「독립신문」을 가리킬 것이외다. 그가 1884년에 동지 김옥균(金玉均), 박영효(朴泳孝), 홍영식(洪英植) 등 여러 명과 함께 종국(宗國) 혁신을 도모하고자, 먼저 착수하였던 정부 전복 계획이 겨우 삼일천하가 되고, 청수(淸帥) 위안스카이(袁世凱)의 군대에 패하여 동지의 다수가 검두(劍頭)의 혼이 되었습니다.

9) 『제국신문(帝國新聞)』을 주재하였던 최영년(崔永年)의 호.

그때에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서씨가 이후 수십 년을 일본으로, 미국으로 망명생활을 계속하다가 자유의 낙천지(樂天地)라는 미국에 입적까지 하였으나, ‘워싱턴’의 감화를 받은 서씨는 그래도 부모의 나라 고려족을 위하여 공헌을 하고자, 1896년에 본국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당시 조선의 형세는 갑오대경장(甲午大更張) 후에 시모노세키조약의 명백한 증거로 독립국의 명칭을 가지게 되었으나, 남에게 빌붙어 벼슬이나 탐하는 정부의 관리들은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이러한 좋은 기회에 천지를 정돈하며 천지를 굴러가게 할 꾀와 정성이 없고, 오직 정권쟁탈을 시사(是事)하여 묘당(廟堂)에는 친일이니, 친러니 하는 기괴무쌍한 명목이 사색붕당과 대칭이 되어 일성일쇠(一盛一衰)로 살육이 빈번하였습니다. 단두를 할지언정 단발은 못한다는 공맹(孔孟)의 글을 잘못 읽은 유림양반들은 개화군(開化軍)을 뱀과 전갈같이 보고, 구식 지사(志士)들은 복수설한(復讐雪恨)의 의병을 일으켰는데, 최익현(崔益鉉), 유인석(柳麟錫), 이설(李燦), 김복한(金福漢) 이들은 그 당시 복수파의 거두(巨頭)들이외다. 이처럼 난마(亂麻) 같은 판국에 황제는 외국 관저에 머무시고, 잡류(雜流)가 조정에 충만하여 일대 혁명이 없이는 도저히 수습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

하산형. 서씨의 귀국은 조선의 모든 사람들이 시국의 회전(廻轉)을 요구하던 그때 이외다. 민간의 지식계급이 씨(氏)를 구세주처럼 환영한 것은 물론이요, 이이제이(以夷制夷)의 외교책을 가장 민활하게 발휘하시던 고종 황제께서도 한참 러시아당(露國黨)의 압박에 불만을 가지시던 때이므로 서씨의 배후에 있는 미국 세력을 이용하여 러시아를 견제하시려 하였습니다. 서씨의 갑신역안(甲申逆案)은 바로 특사가 되고, 일약 제왕의 사좌(師佐)로 파격의 은총을 받게 되었으나, 미국식의 평민주의로 귀화한 서씨는 벼슬과 녹봉을 사양하고, 중추원의 고문 격으로 뛰어난 자문의 대응자(應對者)로 만족하였다 합니다. 그리하여 한때는 언청계종(言聽計從)¹⁰⁾으로 고종 황제의 장량(張良)도 되고, 제갈량도 되어 한성 정계의 풍운(風雲)을 좌우하였습니다. 경운궁 이어(移御)¹¹⁾도 그때의 일이요, 대한제국 개칭도 그때의 일이외다. 진양(建陽)의 연호는 광무(光武)로, 대군주 존칭은 대황제로, 남별궁(南別宮)¹²⁾이 원구단(園邱壇)으로, 모화관(慕華館)¹³⁾이 독립관(獨

10) 남의 말을 듣고 계책을 쓴다는 뜻.

11) 임금이 거처하는 곳을 옮김.

12) 선조 때 의안군(義安君) 성(城)의 신궁으로서 1593년에 명나라 장군 이여송이 주둔한 아래로 중국 사신의 여사(旅舍)로 썼다.

立館)으로, 영은문(迎恩門)¹⁴⁾이 독립문(獨立門)으로, 관리의 지식교섭소(智識交涉所)가 독립협회(獨立協會)라는 정당으로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바뀌고, 개화진취 부국강병의 여덟 자가 표어가 되어, 대한제국의 국시(國是)가 수립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사람들이 비로소 어렵잖게나마 개화니, 독립이니 하는 글자의 뜻을 알게 되었고, 우리 신문의 조상이라는『독립신문(獨立新聞)』은 실로 이 조류를 인도하며, 국민에게 정치적 교과서로 자임하여 세상에 출현한 것입니다.

그때의 신문으로는『독립신문』이외에『경성신문(京城新聞)』과『매일신문(每日新聞)』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자는 그때 미국식 개화당의 선봉이라던 윤치호(尹致昊) 씨의 사촌 동생 되는 윤치소(尹致昭) 형제가 100원 미만의 사재(私財)로 손바닥 크기의 인쇄물을 간행한 것이요, 후자는 양홍묵(梁弘默) 외 여러 명의 배재학당 관계자가 발행한 것이라 합니다. 독립사상이 최고조에 달하고, 애국정신이 전 사회에 유행하던 때인즉, 각 신문의 특색으로는 전부가 우리 국문을 사용한 것이요. 외국어라는 한문을 일체 사용하지 않은 것은 오늘날 한자 제한을 운운하는 도쿄 오사카(大板)의 각 신문이 안색(顏色)이 없는 일이외다. 여담(餘談)은 차치하고, 그때의 신문이 전술한 것과 같이 서재필 씨를 중심으로 미국 출신자와 혹은 미인(米人) 접근자들에 의하여 간행된 것은 비록 시세의 사연(使然)이지만은 일종의 이채(異彩)라 할 것이오. 따라서 조선문화사(朝鮮文化史), 특히 신문 역사상에서 미국인이 직접, 간접으로 공헌한 것을 제외하지 못할 것이며, 신문기사에도 정치론 이외에는 기독교 취미가 많이 포함되었고, 계급 타파, 노예 해방 등 자유와 평등의 사조가 한 세상을 풍미하던 것도, 미국 색채와 기독교 정신을 띤 앞의 각 신문 논조가 적지 않게 조장하며 성원한 힘을 간과치 못할 것입니다. 한편, 양반이 망하는 것을 분개하고, 유교가 추멸(墜滅)되는 것을 한탄하는 반동계급이 신문을 매우 증오하여 이단사설(異端邪說)이라 배척하며, 이적금수(夷狄禽獸)라고 비웃었던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산형. 1897년 늦가을부터 1898년 초여름까지는 조선에 있어 독립협회의 전성시대였습니다. 시정 득실을 논의하고, 국권 융성을 표방하는 모든 정치 활동이 협회 중심으로 생길 뿐 아니라, 문화제도의 수립과 문명사업의 수입이 또한 협회 중심으로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신문지도 그 속에서 나온 것은 전술한 것과 같습니다. 당시 협회의 몇몇 유지

13) 명나라와 청나라 사신을 맞이하던 곳.

14) 중국에서 오는 사신을 맞아들이던 문.

들은 여론을 일으키는 길이 신문에 있음을 알고, 유력한 신문을 만들 필요를 깨달았습니다. 지식 계급을 상대로는 고상한 정도로 국한문을 호용(互用)하는 오히려 한문 본위의 신문을 만든 다음, 일반 민중과 부인을 상대로는 한글 신문을 만들 생각으로 전자를 위해 서는 윤씨(尹氏)들이 개인적으로 경영하던 『경성신문』이 재정난으로 폐간 상태에 있던 것을 인수하여 『황성신문(皇城新聞)』으로 이름을 바꾸고, 남궁억(南宮億), 나수연(羅壽淵) 양씨(兩氏)가 오로지 경영에 임하여 황토현(黃土峴)에 있는 기념비각(記念碑閣) 자리에 좌순영(左巡營)이라는 관가 소유의 건물을 빌려 주식회사로 설립하기로 하였습니다. 후자는 이종일(李鍾一) 씨의 손으로 『매일신문』을 『제국신문(帝國新聞)』으로 변형하여, 한양동(漢陽洞, 지금은 돈의동)에서 발행하게 되었다 합니다. 그리하여 일본인 기쿠치 겐조(菊池謙讓) 씨 등의 『한성신보(漢城新報)』와 하기야(萩谷籌夫), 아리후 쥬로(蟻生十郎) 씨 등의 『대한일보(大韓日報)』, 『대동신보(大東新報)』와 대치하여 경성 논단을 번성케 하였습니다.

독립협회가 계속하여 왕성해지고, 지사들이 협조하고 서로 사이좋게 지지하였다면, 앞의 두 신문도 순조롭게 발전하였을 것이요, 조선의 문운(文運)과 일본 국맥(國脈)으로 까지 연장되었을 것이외다. 그리하여 조선 사람도 3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제법 사람다운 생활을 하며 우리 청년들도 현대와 같이 우울하게 딱한 세월을 보내지 않았어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나 불행이란 운명신에게 붙잡힌 백의 국민들은 이러한 때에도 엄숙한 자각이 없었고, 절실한 노력이 없었습니다. 독립협회가 기세가 등등하여 일세(一世)를 혼감(掀撓)하던 때에는 내부에 난치의 악질이 생기고, 외부로부터 강적이 습격하여 왔습니다. 무엇을 내부의 악질이라 하겠습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권병(政權病)이요, 권리욕이 그것이외다. 약간의 진정한 우국지사들은 모르거나와 그렇지 않은 자들은 독립협회를 관직을 얻을 수 있는 시장으로 알았습니다. 지껄이는 말이 모두 추악한 동기에서 배태(胚胎)된 것이외다. 그 놈의 원수 같은 벼슬하고자 하는 열망과 권세병이 겨우 다시 살아나려던 우리 사회를 영원히 멸망시키려고 마위(魔威)를 내둘렀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배타, 중상, 음모, 반역자들이 생겨납니다. 독립협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병은 더 심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실지원국(失志怨國)이니, 사란악화(思亂樂禍)니, 무엄망상(無嚴罔上)이니 하는 아름답지 못한 명칭을 쓰게 되고, 보부상의 추봉(龜棒)이 일비(一飛)할 때에는 수분서찬(獸奔鼠竄)하여 좋은 것과 나쁜 것이 함께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협회라는 모체가 그 지경이 되고, 시대는 다시 낭심구행(狼心狗行)¹⁵⁾의 추악한

15) 이리의 심보와 개 같은 행동.

무리가 멋대로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되고 반동사상이 대두하여 개화당이 역적이 되게 되었은즉, 협회 중심으로 나오려던 신문이 순조롭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출자하려던 사람은 거절하고, 위정자의 박해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경무청 구류장을 자기 사랑(舍廊)으로 알고 곤봉과 주뢰(周牢)¹⁶⁾를 자양제(滋養劑)로 생각하는, 상식을 넘어서는 비범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때에 신문기자가 되려 했겠습니까? 지금의 필화(筆禍) 사건이라는 것은 거론할 것도 없고, 신문사라는 곳은 인간 세상의 지옥이라고 보면 그때의 일반(一斑)을 헤아릴 것이외다. 나는 생존하여 있는 어떤 선배의 실화를 듣고 오히려 의아했고, 놀라기도 했지만 사실은 그대로 사실인 모양인 것을 어찌합니까?

◇

하산형. 우리의 신문이 이러한 형편에서 광무(光武) 초년부터 약 10년간을 자라 왔다 합니다. 삼간두옥(三間斗屋)이 경영자금으로 떠나가고 아내와 자식들은 몹시 가난하여 배고픔과 추위에 울고, 자신은 매월 몇 차례씩 감옥에 갇히는 수치를 당하고, 정적(政敵)들은 때를 만나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기회를 얻어 손뼉을 치는 잡배들은 권력자의 앞 잡이가 되며, 무지한 탐관혹리(貪官酷吏)가 권세를 제멋대로 행할 때에, 모든 것을 희생하고, 한편 빛나는 나라 사랑의 마음으로 나라를 걱정하는 논진(論陣)을 펼쳐 백성의 지식 계발에 힘쓰던 선배들이 있었던 것을 나는 우리 언론계의 큰 자랑거리로 생각합니다. 신문기자를 천직이 아닌 직업으로 생각하는 오늘날의 신문기자를 볼 때 그들은 일종의 어리석은 사람이외다. 그렇지만 나는 신문기자들이 무엇보다도 귀중하며, 그들을 존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둔하지만은 열정이 있었고, 진실이 있었습니다. 그런 선배들 중에서도 나는 작고한 장위암(張韋庵) 같은 이를 그 전형적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진솔하고 곧은 심사(心事)와 깨끗하고, 강안(剛岸)한 인격은 거의 참사람에 가까운 듯 합니다. 영남인(嶺南人)의 장점을 많이 가진 선생은 혼신(渾身)이 견인(堅忍), 그것이외다. 소방(疎放) 그것이외다. 다시 말하면 천진(天真) 그것이외다. 장씨(張氏)와 함께 수고할 뿐 아니라 국사범(國事犯) 혐의로 감옥에 들어간 후 『황성신문』의 경영을 장씨에게 일임한 나소봉(羅小蓬) 씨는 항상 죽은 친구를 추억하면서, 그 인격을 칭찬하더이다. 유명한 「시일야방성대곡(時日也放声大哭)」과 「척필대호(擲筆大号)」의 두 글은 그때 청소년들의 열혈(熱血)을 얼마나 끓어오르게 하였습니까? 또 『대한매일신보』에 있으면서 통감부에 반항하고, 몹시 혹독한 꾸짖음으로 오칠대신(五七大臣)을 거부하게 만들었던 양기

16) 죄인의 두 다리를 한데 묶고 다리 사이에 두 개의 주르대를 끼워 비트는 형벌.

탁(梁起鐸氏) 씨나, 지금도 북경에서 모지(某紙)에 통신하는 신채호(申采浩) 씨도 그때에 청년 기자로 글쓰는 재주를 두루 갖춘 사람이라 합니다.

말로(末路)는 조용하였고 비난과 지탄을 받았으나 극재(克齋) 정운복(鄭雲復)과 같은 사람도 그 재지변력(才智辯力)이 출중할 뿐 아니라 한문도 알고, 일본어와 영어에도 정통하여 『제국신문(帝國新聞)』에 있을 때에는 당시의 신지식 소유자로 명성이 높았습니다. 대한협회 월보에 매월마다 응문(雄文)을 쓸 뿐 아니라, 연설 잘 하는 정객이던 윤효정(尹孝定) 어른은 기자 사회에서도 투장(鬪將)이었고, 『대한민보』에서 경영의 핵심에 해당하는 심의성(沈宜性) 씨도 기자 사회에 공적이 있던 사람이외다. 어쨌든 그들이 가짜 지사인지, 진짜 지사인지는 논외(論外)로 하고, 우리 언론계의 초창기에 이들에게 빛진 것이 많은 것은 물론이외다. 그리하여 고난을 헤치고 성장하던 신문지가 러일전쟁 후에는 수효가 늘고, 세력도 증가하여 각 계급을 막론하고 신문을 많이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언론계의 특색은 종래와 같이 개화, 부강주의 선전을 하던 것과 달리 국권회복주의에 대한 동양평화주의 즉 대세복종주의(大勢服從主義)가 대두하게 된 것이 외다. 예전에 독립협회로 통일되었던 여론이 자강회(自強會)와 일진회(一進會)로 나뉨에 따라 신문에도 정당의 색채가 짙어지고, 국권파(國權派)가 대세파(大勢派)를 매국노로 욕하면 대세파는 다시 국권파를 사이비 애국자라 하면서 서로 상하(上下)치 않았습니다. 도리는 전자에 있으나, 시세는 후자에 이로운 것이었습니다. 즉 『대한매일신보』, 『황성 신문』·『제국신문』 두 신문과 『대한민보』, 자강회주재(自強會主宰)에 대한 『국민신보』, 일진회기관(一進會機關)과 『대한신문』, 한국정부기관(韓國政府機關)의 논쟁이 그것이외다. 국채 보상, 금연 실행, 교육열 고취, 이권 보호 등은 전자들의 기치요, 대세 순응, 실력 양성 등을 후자의 주장이라 하겠습니다.

◇

하산형.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라는 정치가는 어떠한 의미에서든지 조선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 사람이외다. 그는 메이지유신(明治維新)을 완성하고 일본의 현장을 기초하고 정당을 발기한 사람이므로 그를 호악(好惡)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하고 문명정치가라고 부르는 점에서는 내외가 일치하였습니다. 보호조약을 체결한 그가 제1대 통감으로 경성에 주재하게 되자 그는 소위 인도주의와 평화주의를 정강으로 할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밖으로는 한국의 국익을 보호하며 안으로는 한국 국민의 복리를 꾀한다는, 즉 일본의 대표자인 동시에 한국의 시정 개선을 지도하는 스승이라고 스스로 여겼습니다. 그리하여 신문에도 상당한 이해를 가지고, 조건은 많고 제한도 심하였지만 언론과 집회의

자유를 어느 정도까지 용인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기의 기밀비(機密費)를 가지고 『경성일보』와 『서울프레스』 두 신문을 발행하여 통감 겸 신문의 실제 사장이 되었습니다. 천성적으로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고 이른바 한국인 회유와 외국인에게도 문명정치 가라는 상찬(賞讚)을 듣고자 하는 복잡한 동기에서 신문 단속을 그다지 가혹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신문은 날로 늘어나고, 서로 경쟁적으로 발전해 갔습니다. 그리고 보통학교의 일본어 교과 문제, 송병준(宋秉畯)의 발검(拔劍)문제, 동양척식회사 문제, 지방의 의병 소동, 기유년(己酉年) 콜레라 유행, 모 대신의 규방문제, 황태자의 유학 등의 문제가 있고, 기생 단속령이 발표되고, 화홍문(華虹門) 지폐가 돌아다니던 때이므로 정치로나, 사회로나, 경제로나 신문 재료가 한참 풍부하던 시대이외다. 외근기자 단 1~2명을 가지고도 넉넉히 편집되던 때이외다. 외국의 전보와 통신을 지금과 같이 게재한다고 하면, 8페이지나 10페이지 신문도 용이하게 제작하였을 것이외다. 그러나 성하면 쇠하는 원리가 실재한 까닭인지 하얼빈 들판(原頭)의 총성이 일어나 이토 히로부미 태사(太師)가 문충공(文忠公)이라는 예물을 가지고 죽은 후 시국은 급속도로 바뀌어 일진회의 원납 장서(願納長書)가 국민신보에 발표되고, 국시유세단(國是遊說團)이 대활약을 하고, 이재명(李在明)의 검광(劍光)이 번득이며, 세상이 시끄럽고 소나기와 사나운 바람이 함께 일어나던 때에 첨두장군(尖頭將軍)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가 향취함(香取艦)을 타고 인천항에 도착하니, 오호라! 신문의 운명은 이씨(李氏)의 사직과 함께 ‘휴의(休矣)’ 두 자로 결정되었도다. 과연 그같이 많던 신문이 1910년 8월 29일에 동시에 폐간사(廢刊詞)를 내고, 아카시 모토지로(明石元二郎)가 내어주는 소위 누금일봉(淚金一封)을 받고 경무총감부 문 앞을 나서는 주뇌자(主腦者)¹⁷⁾들의 종적과 함께 우리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로부터 약 10년간을 소위 조선 언론계의 엄동시대(嚴冬時代)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메이지(明治)와 다이쇼(大正)를 통해 일본 기자 사회가 산출한 결작의 하나인 소봉학인(蘇峰學人) 도쿠토미 조이치로(徳富豬一郎) 씨가 데라우치 백작의 뒤를 이어 『경성일보』와 『매일신보』의 경영권을 동일한 수법으로 인수하고, 무문곡필(無文曲筆)이라는 천재적 수완을 발휘하여 경성천지는 물론이고, 반도 삼천리 내에 신문을 두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신문까지도 부산 부두에서 압수하여 소위 신문 쇄국주의를 철저하게 실행하던 때이외다. 자세한 것은 또 다음 호에……. (미완)

〈이상 (2)〉

17) 어떤 조직, 단체, 기관의 가장 중요한 자리의 인물.



하산형. 데라우치(寺内) 시대의 조선 언론계가 추운 겨울의 새싹처럼 동시에 사그라진 것은 앞에서 말한 대로이외다. 원래 데라우치라는 사람은 세상에서 무단전제(武斷專制)의 대가로 명성이 높았던 만큼 자신의 정책에 대한 기坦없는 논의(비판)를 남보다 유달리 싫어했습니다. 장주(長州) 군벌의 정통 상속자로서 그들의 선배가 유신(維新) 도모의 대업에 참여하여 말 위에서 천하를 취한 뒤를 이은 데라우치 씨는 어느 순간 정계의 교만한 자가 되어 그 천성의 준초강편(峻峭剛偏)한 것과 함께, 용물하사(容物下士)의 도량이 없었고, 남을 따르는 도량이 적었습니다. 그가 국회에서 총리대신이 되었을 때에 중의원의 여당이 입헌정치에 있어 정당에 기초를 두지 않은 초연내각으로 시대착오가 심한 것이라 하여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하였더니 그는 폐하가 직접 임명한 자기에게 의회가 가부(可否)를 따지는 것은 폐하의 권한을 침범하는 불손한 행동이라 하여 그 자리에서 해산을 행한 사람이외다. 이와 같은 데라우치 씨가 조선총독으로 정치와 군사의 전권을 장악하고, 독재 군왕과 같이 반도에 임하였으니, 대개는 생각하고 헤아릴 부분이 있을 것이외다. 더욱이 데라우치 씨의 총애를 받는 신하로 유신에 참가하였던 경무총장 아카시 모토지로(明石元二郎)는 제정러시아 시대에 전제정치를 오랫동안 현장에서 보고 배운 사람이요, 경찰에 뛰어난 자로 내외에 유명한 그가 데라우치 씨의 언론정책을 어떻게 보좌하였는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하여 신문과 잡지의 논조가 1차 총독정치를 비방하거나 관헌(官憲)의 행동을 공격하면, 압수, 정간은 물론이고 집필자에게 박해가 가해지고 심하면 추방이요, 아니면 경찰 비박(秘薄)에 붉은 점을 칠하여 소위 주의인 물이라는 자미스럽지 못한 오명을 가하였습니다. 조선인에게 한 개의 민간지도 허용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려니와 도쿄, 오사카의 유력한 신문지까지 조선 내에서는 똑똑히 고개를 들지 못하였고, 그중 오사카 『아사히신문(大阪朝日新聞)』은 데라우치 씨가 가장 껴리는 대상이 되어 끝까지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각 신문지는 각자의 생존을 위해 관헌에 아부하고 데라우치의 정치를 크게 칭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외다. 그러나 데라우치 씨라도 언론기관이라면 무엇이든지 압박한 것은 아니 외다. 자기가 절대 신임하는 사람이거나 또는 그의 정책에 영합(迎合)하는 신문지에게는 반대로 특별한 원조를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데라우치 씨의 철저하다던 언론 압박정책도 실상은 이기주의의 타산에서 생겨난 불칠저하고 불공평한 것임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이외다. 한마디로 말해서 일본인과 조선인을 불문하고, 조선에서 살기 위해서는 데라우치에 대해 반대 언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

하산형. 데라우치 씨의 언론정책은 이와 같이 무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무모에 가까울 정도로 엄한 것이요, 철두철미 자신의 지상주의(至上主義)를 발휘하기에 여념이 없는 것이외다. 그러나 그 수단의 교묘함과 견해의 옳고 그름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자신에게 강한 것과 부랑요마배(浮浪彙靡輩)를 소탕하던 용기에 이르러서는 한편으로 존경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는 조선 사람의 단속에 무한한 고심을 하는 동시에 일본 사람에게는 더욱 사정을 봐 주지 않았습니다. 지난날 잔인하고 난폭하던 각지의 일본인 고리대금업자가 기를 폐지 못한 것, 어부지리로 정권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우던 무리가 마음대로 날뛰지 못한 것, 관리와 일반 풍기(風紀)가 어느 정도까지 바로잡혀 긴장된 분위기가 있었던 것 등을 지금 생각하면, 마음에 드는 점도 적지 않았습니다. 무릇 정치의 핵심은 덕으로 사람을 달래지 못하면, 힘으로라도 신용을 세워야한다는 것입니다. 데라우치 씨의 무단정치(武斷政治)라는 것은 여러 가지 결함도 많았지만 힘도 있었고, 신뢰도 있었습니다. 적어도 기강은 섰고, 질서는 유지되어 서릿발 같은 기개가 있었고, 해괴한 짓을 하는 추극(醜劇)은 없었습니다. 더욱이 조선의 산업방침을 세울 때 자작자급(自作自給)을 표준으로 하고, 이권 개방을 함부로 하지 않아, 대부분의 목적이 조선 사람을 본위로 하고, 굽주리지 않게 하려던 노력은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 둘 일이외다. 즉 데라우치라는 사람도 피와 눈물은 있어서, 일개 정치가로 비방할 것이 아니외다. 오히려 어떤 점에서는 조선 사람으로 그에게 감사할 만한 것도 적지 않은 것은 우리가 감정을 떠나서 이성적 판단을 할 필요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는 회사령(會社令)이란 것을 가지고, 일본 대자본가들의 조선 투자를 제한하여 경험, 자력, 기술이 매우 부족한 조선 인과의 기업적 경쟁을 차단하였습니다. 종래 대부분 서양인에게 독점되어 있던 광산에 대해 외국인의 신규 청원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동묘지와 화장(火葬) 규칙을 만들어 조선 수백 년의 큰 폐단이던 산송(山訟)을 없앴습니다. 토지조사의 대사업을 단행하여, 고려 이후로 황폐되었던 토지세를 조사하였습니다. 사찰령(寺刹令)을 만들어 승려를 해방시켰습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그 시대의 무단정치라는 것이 반드시 조선 사람이 저주할 것만이 아니요. 일본 측에 훼방이 있었던 것은 물론입니다. 그런데 나는 데라우치 백작의 정치적 공로와 잘못을 말하는 것이 본론의 취지가 아닌 까닭에 이 정도에 그치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조선 언론계와 데라우치의 관계를 말하고자 합니다. 조선 언론계라 하지만 『매일신보』를 제외하고는 조선 사람이 관계하던 신문지가 없었기 때문에 조선 언론계라기보다는 조선에 있는 일본인의 언론계라고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여튼 일본어 신문들은 앞에서 말했던 것과 같이 기관지 이외에는 거의 총독정치를 반대

하였습니다. 비록 겉으로는 공손하고 온순했지만 안으로는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그들의 여론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데라우치를 공격할 때에는 반드시 조선의 언론 압박이란 것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일본인에게 이권을 함부로 허락하지 않은 것이 가장 중요한 동기였던 것을 보면, 충분히 그 사정을 알 것이외다.

◊

하산형. 데라우치 씨가 1915년에 조선 시정5년 기념공진회를 개최하고, 자신의 통치정책이 성공한 것을 안팎에 과시했습니다. 그리고 1916년에는 공진회로 한 시대의 경계선을 긋고, 다시 신정책을 수립하여 어떤 전환을 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것은 1915년 벽두에 발표한 그의 대유고문(大諭告文)이 설명하던 것이외다. 그 내용은 동화정책의 실현에 있으며, 지방자치제의 전제(前提)에 있었지만 하여간 그때의 현재(現制)에 일보(一步)를 나아가려던 사실이외다. 그러나 데라우치 씨의 신정책 방침이 수립되기 전에, 일본 정치 정세가 관료파(官僚派)와 정우회(政友會)의 연합으로 오오쿠마 시게노부(大隈重信)의 내각을 파괴하고, 당시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중국, 러시아에 대한 어떤 신국면을 타개하려던 때였기 때문에, 데라우치는 그들의 추대로 동경 정국(政局)의 주인공이 되고, 일족낭당(一族郎黨)을 인솔하여 조선을 떠나게 되었고, 소위 신정책은 그대로 실현 할 기회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임 총독으로 전(前) 주한사령관으로 있던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 백작이 기용되었습니다. 하세가와는 역시 데라우치와 같이 죠슈(長州) 숙장(宿將)의 한 사람으로 군인으로서의 능력은 데라우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공정하게 말하자면 그때의 조선총독으로 이와 같은 무식노물(無識老物)을 끌어내지 않더라도 일본 조정에 인물이 부족한 것은 아니었으나 몰락해가는 하세가와 벌(闕)의 세력 만회를 위해서는 조선총독 같은 요지(要地)에 타인을 보내어 자기가 경영해 놓은 것을 유린하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 데라우치 씨의 심사였습니다. 그리하여 “약속을 지키고 받들어 어기지 않는다”라는 조건부로 하세가와 씨가 취임했습니다. 그리하여 하세가와는 총독 재임 3년 동안에 시위(施爲)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굳이 말하자면 종래 의식(儀式) 때 외에는 착용을 자유로 하던 문관의 대검(帶劍)을 평상시에도 가지고 다니게 하여 공판정(公判廷)에 나타나는 사법관이 검을 하지 않고, 죄수를 재단(裁斷)하게 되며, 칠판 밑에서는 소학훈도(小學訓導)가 장검(長劍)과 분필을 함께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열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데라우치 시대보다도 나빠져 가는 조선총독 정치에 언론에 대한 단속인들 완화될 가망이 있었겠습니까? 아전들의 오류 많은 자가광고적(自家廣告的) 보고서와 관변(官邊)에 영합하는 자들의 노랫소리만이 들리고 조선 사

람의 소리는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만세운동이 일어나자, 조선인보다도 어떤 의미에서는 불평을 더 많이 가지고 있던 일본인의 반동이 더욱 맹렬하여 총독정치에 대한 비난이 폭발하자 많은 군사들 가운데서 횡행하던 쓸모없던 노장군(老將軍)도 어쩔 수 없이 혼자 떠들썩하게 삼각산(三角山)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공평하게 말하자면 하세가와가 퇴임한 것은 조선인의 만세소리보다도 데라우치 시대부터 커져 온 일본인의 저주가 만세운동을 도화선으로 하여 하세가와를 몰아낸 것이외다. 물(物)은 평(平)을 얻지 못하면 우는 것이외다. 더욱이 제(抑制)에 참고 있던 울음 소리는 큰 것이외다. 그때 일본사람들의 시끄러운 부르짖음은 하세가와의 신변에 총집(叢集)하여 심지어 생선 장사와 인육을 파는 추업자(醜業者)들까지 총독 공격에 기염(氣焰)을 토하던 활계극(滑稽劇)을 도처에서 봤습니다. 조선 사람의 운동이 결과적으로 아무 소득이 없고, 오히려 일본사람의 힘을 조장하여 준 것은 소위 33인이라는 그 운동의 대표자들이 상상하지도 못하였을 것이오. 대기별저(大磯別邸)에서 요양하던 첨두 백작의 두발이 상지(上指)하여 분한(憤恨)의 절정에 달한 것도 오히려 동정할 만한 일인 듯합니다.

◇

하산형. 하세가와가 퇴진한 뒤에 제3대 총독으로 조선에 온 사람이 지금 녹천정(綠泉亭)의 주인공인 고수노인(臥水老人)인 것은 누구나 다 아는 바입니다. 그는 외모로만 봐도 온후한 사람으로 그 성격도 데라우치 씨와 반대되며, 더욱이 무단정치가 실패한 뒤에 왔기 때문에 형식으로라도 전임자와는 다른 방향을 취했을 것이외다. 그리하여 ‘문화정치’라는 간판을 붙이고, ‘민의 창달’이라는 광고를 돌리며, 조선에 부임했습니다. 그리하여 남대문 역 앞의 폭탄 세례는 그로 하여금 그 당초의 계획보다는 심각한 고려를 하게 하였다고 합니다만, 어찌되었든 그가 성명한 것을 실현하여 몇 개의 신문과 잡지의 발행권을 조선인에게도 허가해 주었습니다. 경술로부터 경신, 만 10년 만에 비로소 조선에 민간지가 부활하였습니다. 주의와 색채는 모두 달랐지만, 동아, 조선, 시사의 세 신문이 일시에 허가되고, 천도교도의 손에 의해 월간잡지 『개벽』이 발행되고, 계속하여 지금에 와서는 그 제호까지 잊어버리게 된 크고 작은 잡지가 우후죽순(雨後竹筍)처럼 생겨났습니다. 이것은 사이토 씨의 사적(事績) 중에 제일 특필(特筆)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되었든 인간이라는 동물은 뱃속의 가스를 발산하고서야 견디는 것이외다. 불완전하고, 작은 자유라 해도 불평을 글이나 말로 토로하게 되면, 약간은 스스로 위로가 되는 것이외다. 그러므로 몇 개의 언론기관이라도 조선인에게 준 것은 그만큼 조선인의 불평을 발산하게 하는 것으로, 저들로서는 가장 현명한 시설(施設)이라 하겠습니다. 혹자들

은 절대 자유가 없는 언론기관은 주지 않는 것과 같다 하여, 문화정치라는 양의 탈을 쓰고, 개를 파는 것이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언론정책이 어느 정도 완화된 것을 나는 편하하고 싶지 않습니다. 절대의 자유라는 것은 어떤 통치자를 막론하고, 그에게 요구하는 자의 어리석은 수작이외다. 그리고 보면 차선(次善)의 차선으로 라도 그만한 무기가 부여된 것을 다행으로 알 수밖에 없습니다. 남이 주는 물건에 흡족한 자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더구나 이민족을 통치하는 그들의 입장에서 대단한 언론자유를 허용하는 것을 주저하는 것은 결코 무리한 것이 아니 외다. 그것보다도 기관지 외에 오래간만에 민간에서 의사를 발표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사실이 데라우치 시대보다는 나아졌다고 하면 그만일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정도의 언론 완화까지도 일본인 측의 다수는 조선 당국자의 방만(放漫)한 처치라 하여 공격함을 잊지 않고 주의해야 할 것이외다. 상세는 또 다음 호에…….

〈이상 (3)〉

〈출전 : 木春山人, 朝鮮 言論界의 과거와 현재(1~3), 『新民』 9~11호, 1926년〉

5. 홍승구, 평림(評林)의 평림 신문의 신문(1)

- 조고계 예찬에 이어진 원고

1.

하산형. 『신민(新民)』 6월호 지상에 게재하도록 무엇이든지 쓰라던 주문도 있었고, 나 역시 현재 낭인(浪人)의 처지로 긴 여름 소일거리를 돈무(頓無)하던 까닭으로 무엇이든지 써볼 마음이 있기에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22일 이른 아침이외다. 존경하던 궁제유장(競齊俞丈)이 금강(錦江)에서 새로 금강산 관리자로 영전(榮轉)되어 축하 인사를 갔다 돌아오니, 문뜩 전신에 오한(惡寒)이 생기고, 이마 위에는 고한(膏汗)이 솟아나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두통, 신열(身熱), 지절통(肢節痛), 기침이 일어나기에 처음에는 평범한 감기로 피곤해서 생겼다 했는데, 이렇게 하루 이를 지내는 동안 작년 이때부터 발병해서 여름과 가을 내내 앓던 오랜 병의 재발인 것을 깨달았습

니다. 원래 선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까닭에 어릴 때에는 약을 끼고 사는 잔병의 주인공이었지만 20살 전후로부터 최근까지 약 15~16년간은 폭음(暴飲) 때문에 누워서 지냈을 뿐 병으로 누워 지낸 일이 없기 때문에 건강한 체질의 소유자라고 찬사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더니 재작년부터는 당뇨로 처음 고생하고, 그것이 치료되기도 전에 다시 늙막에 염증이 일어나 700일 동안이나 편안한 날보다는 병든 날이 많아 배작(杯酌)을 삼가고, 밤에 외출을 하지 않고, 아침 등산도 계속 가면서 비교적 건강관리에 노력할 뿐 아니라, 평생에 찾지 않던 병원도 찾게 되고, 의원 선생 중에 아는 사람도 많이 생겼습니다. 외상 지고 못낸 것도 있지만 그동안 병원에 낸 약값을 따지면, 일본의 다액의원(多額議員) 자격이라도 넉넉히 가졌을 것이외다. 그런데 작년 말경부터는 건강이 점점 회복되기 위해 매일신보를 사퇴하고 낭인이 된 까닭으로 낭인이 되면 병마까지도 절교를 하거나보다 하여 적잖이 다행으로 여겼습니다. 그리하여 전투에 견딜 수 있는 건강한 몸이 되면, 무엇이고 사회의 전선에 나서서 뛸 각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정(多情)한 잡자던 병이 무엇을 잊을 수 없었는지, 1차 퇴진(退陣)하고 있다가, 다시 찾아와 맹위(猛威)를 보이려고 합니다. 숙명설(宿命說)에 의지하는 자는 아니지만, 나는 삶과 죽음 그것을 그다지 중시하지 않습니다. 성인이나 평범한 사람이나,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 모두 한 번씩은 의례적으로 당하는 일이고, 한번 지내면 두 번도 없는 것이 죽음, 그것이 아닙니까? 자살도 원치 않는 대신에 병사(病死)도 원치 않습니다. 도리어 죄명부(催命符) 가진 황건역사(黃巾力士)가 오기 전에 도방(道旁)을 하든지 유취(遺臭)를 하든지 마음껏 목숨을 걸고 싸우리라는 용기도 생깁니다. 소계자(蘇季子)에게 부곽이경전(負郭二頃田)이 있었다면, 여섯 나라 재상의 도장을 찰 수가 없었다 하니, 이런 견지에서 나는 병이 많고 건강하지 않을 때에 마음을 바꾸려고 합니다. 원고가 늦은 변명이 아니라 병상에 누어서 붓을 잡는 것이 어떻게 뜻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일과 싸우기 전에 병마와 먼저 싸워서 승리해 볼 결심으로 있는 것만은 형에게 알려 듭니다. 근육을 불로 지지는 형벌을 참지 못하고는 박태보(朴泰輔)가 되지 못하는 식으로, 병마 따위를 정복하지 못하고서야 세상사를 어찌해보겠습니까? 깊이 감사하니 병마여, 너는 내 생명을 뺏으려는 적이지만은 너로 인하여 나약한 내가 용맹심이 생기고, 몸을 관리하지 못하던 내가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은 너에게 깊이 감사할 일이다.

2.

하산형. 평론도 좋고, 수필도 좋고, 비평도 무방하고, 문필생활의 회고기(回顧記)도 좋다는 의견은 잘 알았으나, 나로서는 그것보다도 『신민』에 대하여 채무가 남아 있으므로

특수한 조건부 주문이 아닌 이상 빛부터 갚는 것이 양심이 명하는 바이외다. 지난해 초봄에 나는 『신민』의 탄생 제2년 기념의 의미로 「조고자 예찬」이라는 출고(拙稿)를 연재하다가 『경성일보』 부사장이던 미야베 게이지(宮部敬治) 씨의 요청에 따라 경성일보사로 돌아갔다가, 작년 겨울 경성일보사에 지진이 생겨서 사장과 모(某) 백작의 일생일대 만용으로 청룡도(靑龍刀)를 휘두르는 바람에 부사장 이상 간부 여러 명의 시체가 산을 이루고 강이 피로 붉게 물드는 참극을 보았습니다. 나로서는 굳이 그들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것이라고까지 할 필요도 없었으며, 새로운 간부 중 어떤 요인은 만류도 하였지만 기색이 좋지 않고, 입장이 곤란할 뿐 아니라, 약간의 비난도 있었지만 미야베 씨, 그 사람은 하여간 그 사회의 원로외다. 우리의 생활과 심정에 이해도 있고, 개인적으로 급인(汲引)¹⁸⁾ 받은 관계도 있어, 그 밑에서 일할 마음도 있었으나, 백작 사장은 미야베 씨와 달라서 반년은 동경생활이요, 따라서 얼굴조차 볼 기회가 적었으니, 모든 것이 생소한 것은 물론이요, 그런 자리에 새로이 임명한다는 통지를 얻으려고 애쓸 필요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각종 유언비어가 있어, 매우 심약한 나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점이 있기에 아홉 달 만에 사직서를 집어던지고 다시 방랑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낌새를 알아채고 미리 조치한 것이라면 모르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한 사직이지, 누구에게 끔찍한 형벌을 당한 것이 아닌 것만은 분명히 말하여 듭니다. 하여튼 이러한 사정상 내가 다른 회사에서 임금을 받으면서 귀사(貴社)에 집필하는 것은 시간의 여유가 없을 뿐 아니라, 일하는 곳에 전심(專心)하겠다는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아서 본의는 아니지만, 죄송하게도 중단하였습니다. 이 점은 독자 여러분에게 이 기회에 깊이 사죄합니다. 그런데 다시 낭인이 된 후에는 8~9개월 중단하였던 것을 부활한다는 것도 의미 없는 일이고. 신문사를 그만두고 나서 바로 신문사 이야기를 쓰는 것도 웬지 싫은데다가, 내가 그만둔 『경성일보』에 그 후에도 다시 큰 일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시끄러운 문제도 있어 형옥(刑獄)이 생기며, 사장의 퇴진문제도 논의되어 매우 시끄러운데, 『경성일보』 사람들은 나 같은 낭인에게 무슨 의심을 가지고 말한다기에 그따위 구자(狗子)의 방귀 같은 수작은 그냥 비웃을지라도 중요한 신문평론만은 좋든 싫든 하지 않는 것이 신사도(神士道), 아니 낭인도(浪人道)라고 생각했습니다(그렇다고 『매일신보』만 제외할 수도 없었고). 요즈음에는 『경성일보』의 진영이 새롭게 되고, 색(色)이 다른 분자는 마구 단두대에 보내어 잠시나마 잠잠해졌다는 좋은 소식이 있기에 때마침 귀형(貴兄)이 무엇이라도 좋으니 두어 줄 쓰라하시기에 비로소 오랜 빚을 갚을 기회로 알고 다시 변변치 못한

18) 인재를 뽑아 씀.

글을 쓰려고 합니다.

그리나 소위 오랜 빚을 갚는다는 것은 내 마음으로 그런 것이오. 쓰라는 원고 그것은 반드시 사회(死灰)의 재연(再燃)은 아니외다. 1년 만에야 빚을 갚는 것을 또 반드시 나의 죄로만 돌리지 마시고, 1년이든지, 2년이든지 빚을 갚을 마음을 가지고 그 뜻을 관철할 시기가 온 것만을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좋을 것이외다. 일찍이 한국 정부는 당당한 삼천리 만승(萬乘)¹⁹⁾의 국가로 1천 3백만 원의 소액을 전국의 노유(老幼)가 단연계식(斷烟戒食)을 하면서도 소리만 크고 실행은 못하던 것에 비하면, 한낱 벼슬 없는 선비 서생인 나로서 이 정도의 불꽃 같은 기세를 드러낸다고 해도 큰 별은 오지 않을 듯합니다. 따분한 병 타령과 낭인이 된 경과보고로 본문이 늦어져서는 안 되겠기에 더 늘어놓고 싶으나 토론 종결을 스스로 동의합니다.

3.

하산형. 무엇을 쓸 때에 개인에게 보내는 사사로운 편지 형식으로 써서 공개하는 것은 누가 시작했는지는 모르나 매우 좋은 생각인 걸로 압니다. 각설(却說), 이때의 케케묵음은 말할 것도 없고 문졸(文拙)한 나로서는 무엇이든지 서두(書頭)를 쓸 때마다 애를 씁니다. 그런데 감사할 선배 대가의 덕택으로 이런 좋은 안(案)이 발명되어 좋은 보기가 된 것이 더할 수 없이 다행입니다. 여담이 또 들어가서 미안하여 바로 곧 본론으로 향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내가 쓴 것은 대체로 1910년 한일합병이 있기 전까지 조선 신문계의 약사(略史)를 개괄적으로 쓴 것입니다. 조선 언론계의 상태를 역사적으로 고찰하자면 창시(創始) 이래 오늘날까지 대체로 3기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즉 『한성순보』 이후로 1910년까지를 초창기시대라 하고, 이 27~28년 동안을 가리켜 제1기라고 하면, 1910년 이후로 1919년까지의 약 10년간은 소위 『매일신보』 독점시대로 천하태평이던 제2기라 하겠고, 현 총독 부임 이후 현재까지의 소위 제3기라는 약 8년간이 초한풍운(楚漢風雲) 기간과 마찬가지로 많은 영웅들이 경쟁하며 세력을 형성하는 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보잘 것 없는 원고도 우연인지 필연인지 제1기 시대를 개술(概述)하고, 제2기에 들어가려 하던 때에 중단되었던 것인즉 비록 내용과 형식은 약간 앞의 원고와 다르지만 서술하는 데 불편이 없는 것이 다행입니다.

그리나 여기에서 유감스러운 일은 작년에 『조고자예찬』이란 것을 쓸 때까지 오히려

19) 1만 대의 병거를 갖출 수 있는 광대한 영토를 만승지국(萬乘之國)이라 하며, 그 영주를 만승지군(萬乘之君)이라 하였다. 중국 주(周)나라 때의 천자(天子)는 자기 직할영토에서 1만 대의 병거를 갖추어야 하는 제도가 있었으므로 만승은 천자의 호칭이 되었다.

전재하던 『시대일보(時代日報)』가 존속되지 못하고, 벌써 역사에만 이름이 남아 있게 된 것이외다. 이 신문은 세상에서 알던 것과 같이 민간지 중에서 가장 늦게 나온 것으로 『동아일보(東亞日報)』, 『조선일보(朝鮮日報)』에 비하여 어깨 수준의 해수밖에 되지 못하지만, 육당(六堂) 최남선(崔南善) 군이 창설한 것이요, 가인(可人) 홍명희(洪命熹) 군이 다시 일으킨 것으로 세상의 기대를 가장 많이 가졌던 것이외다. 그런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깊주림과 목마름에 힘이 없던 태아는 겨우 분만은 하였으나 온갖 병이 몸에 들어와 혐한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여러 의사가 치료의 노력을 다하다가 한 번은 ‘상투’ 가진 주문 외는 행자(行者)까지 덤비고, 마지막으로 경성(京城) 남북촌(南北村)의 재상(宰相) 자제와 경기도, 충청도의 일류 유산거반(有產巨班)이 총출동을 하였으나, 그것을 죽을 고비에서 건져내지 못하고, 출생 아래 만 2년 반에 그 나머지도 발행일수보다도 휴간, 정간의 일수가 더 많다가 명호애재(鳴呼哀哉)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궁내성(宮內省)의 최대 재혈(財穴)이라는 임야국에서 장관 노릇하는 미쓰야 미야마쓰(三矢宮松, 전 경무국장) 군이 조선 재임 중에 끼치고 간 사업에 대해 그 일례로 조봉협정(朝奉協定)을 비롯하여 상당한 분량의 기록이 남아 있지만 특히 조선인 측 언론계에 대해 여러 가지 기념할 것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성(姓)과 마찬가지로 조선인 언론계를 향해 화살 3발을 발사하고 갔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조선과 동아 두 신문에 대한 제2회 발행의 정지입니다. 두 번째 화살은 잡지 『개벽(開闢)』의 정간이 풀리자마자 최후로 극형(極刑)을 선고한 것입니다. 세 번째 화살은 『시대일보』의 폐간, 그것이라 하겠는데, 이것만은 미쓰야 씨도 어떻게 하지 못해서 뜻하지 않게 단행한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자살이지 타살은 아니외다. 그러나 비록 자살일지라도 숨이 끊어지는 마당에 참여한 사람이 미쓰야 그 사람이 아닙니까? 미쓰야 군 개인에 대해서는 이해할 만한 이유도 있지만, 이런 때에 화살 3발을 연속해서 쏜 것은 우리가 매우 불쾌해하는 것만큼 그에게도 불행이었습니다. 대관절(大關節) 사이토 총독의 8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시설(施設) 경영한 일이 꽤 많겠지만, 그중에 직접적이고 또 순전하게 조선인과 교섭한 것으로 묘지 규칙의 제한 완화, 태형(笞刑)의 폐지와 및 조선어 신문잡지의 발행 증가 허가를 가리켜 3대 시정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3대 시설(施設)의 하나인 언론기관의 증설이란 것이 미쓰야 씨의 재임 중에 생겨난 것보다도 없어진 것이 많은 점으로 보아 나는 서로에게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로지 경무 당국자의 단속이 엄격했던 것만 책임할 것이 아니외다. 이 정치하에서 그 법규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들이 싫어하고 꺼리며, 금지하는 것을 죽기를 각오하고 굳세게 저항하고, 고의로 죄를 저지르는 경영자들의 두뇌에도 의문이 저절로 생깁니다. 그럴지라도 확고한 주의와 신념에서 처음부터 굴하지 않

고, 만우난회(萬牛難回)의 열심(熱心)이 있는 것도 아니요, 어떠한 부끄러움도 없는 것과 판매 정책상 어쩔 수 없이 숨고 자축(自觸)하여 압수를 피하지 않으려 하는데 기가 막혀 한 마디도 더 말할 용기가 생기지 않고, 오히려 그 두꺼운 얼굴에 존경을 표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시오. 『시대일보』만은 사인(死因)의 거의 모두가 전후(前後) 이사자(理事者)들이 모졸(謀拙)한 것과 동신(銅神)의²⁰⁾ 은총을 받지 못하여 선천적으로 기형인데다 후천적으로 빈혈이 된 것입니다. 만일 그 『시대일보』에 경영의 귀재로 영리하고 학식이 깊은 이상협(李相協) 군이 실무를 맡고 배후에 김성수(金性洙) 군 같은 성의 있는 재주(財主)를 끼고서 또 다시 1919~1920년 같은 시대를 만났다면 오늘날과 반대의 결과를 분명히 봤을 것이기 때문이외다.

그리고 험담한 대가로 찬사를 올리는 것은 아니지만, 미쓰야 씨는 전기(前記)와 같이 조선 언론계에 중형(重刑)도 많이 부과하였고, 그가 경성을 떠날 때에는 『시대일보』를 없애고 다른 한편으로 『중외일보(中外日報)』를 새롭게 허가하였고, 그보다 앞서 조선출판물령(朝鮮出版物令)을 입안하여 종래에 복잡하던 법규를 통일하고자 하였을 뿐 아니라, 그 내용도 비교적 시대에 접근하도록 개선하려고 노력했던 것을 덧붙여 듭니다.

4.

하산형. 조선 언론계의 제2기 시대 즉 1910년 후로 1919년까지의 10년간이 『매일신보』의 전성시대, 아니 독보시대(獨步時代)라는 것은 앞에서 약술(略述)하였소. 그런데 과연 이 시대야말로 언론계 전체로 보면 일종의 암흑시대라 할 만큼 지난날 존재한 것은 모두 파괴되고, 새로운 것은 허용되지 않아서 간결하게 말하면 신문지가 눈서리를 치르던 겨울의 기간이었습니다. 요즈음 특히 『매일신보』만은 그 자매지 『경성일보』와 함께 뛰어난 일본 신문기자의 한 사람인 도쿠토미 조이치로(徳富猪一郎) 씨의 주재(主宰) 감독과 데라우치 첨두(尖頭) 백작의 특수한 보호 아래 광야의 외로운 나무처럼 존재하여 이상적 기관지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민중 측에서 환영을 하든지 반대를 하든지 그까짓 감정문제는 초월하고, 쓰든지 달든지 존재한 것이 그 신문 하나인 덕분으로 지금 같이 구차하게 면(面) 경비에 구독료를 편성하겠다고 도지사를 비롯하여 군수와 서무주임 등 속(屬)에게까지 음식정책(飲食政策)을 쓰지 않더라도 또 지방관 회의 때마다 총독부 고급간부의 명령적 종용과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 관헌에 충성이 없을지라도 독자는 자식같이 모여드는 상황을 이루어 참으로 황금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근래에 와

20) 구리귀신. 지독한 구두쇠를 뜻함.

서는 민간지들에게 툭하면 ‘어용지, 어용기자’라는 창피한 소리도 듣게 되고 그런 일에 격동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어떤 때에는 민간지들도 주저하는 문제에 대해 써보는 탈선도 하다가 백아관(白亞館)으로부터 꾸중도 듣고 달금(撻禁)도 당하는 희비극도 종종 있으며, 당당한 기관지로서 명예훼손이니, 풍속을 어지럽힌다느니, 심하면 불경(不敬) 문제니 하는 이유로 고소와 처벌이 빈번하지만, 그 당시에 신문이라면 『매일신보』 그것을 의미함이요, 신문사라 하면 대한문 앞의 우뚝 솟은 건물을 지칭하던 때이니 속담의 이른바 호랑이가 담배 피고, 두꺼비가 비행기 타는 시대라. 이런 일이 생긴 원인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간부와 간부에 준하는 인물은 왜곡된 글을 쓰는 우두머리라는 평판도 높지만, 하여튼 소호(蘇峰) 씨 같은 뛰어난 작가이자 문학의 거두(巨頭)가 독재군왕(獨裁君王)격으로 엄연히 있고, 조선 사람과의 왕래가 많고 조선 사람의 친구로 자타가 인정하는 아베(阿部無仏) 씨가 사장으로 있으며, 조선통이라기보다도 조선인에 준하는 사람이라고 할 만큼 조선을 아는 나카무라 겐타로(中村健太郎), 마쓰오 모키치(松尾茂吉) 같은 이들이 관계할 뿐 아니라, 조선 사람으로 앞다투어 관계하던 사람으로 정운복(鄭雲復), 선우일(鮮于日), 김환(金丸) 같은 노장(老將)들이 있으며, 사교계에 활동가로 명성 높은 방태영(方台榮) 군도 세치 혀를 자본 삼아 그 무한한 정력에 힘입어 자기 멋대로 행동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매일신보』로 조선신문의 역사에 특필(特筆)할 새로운 성과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순국문이던 『제국신문(帝國新聞)』이 폐간된 이후로 약간의 예외도 있었겠지만 신문이라면 한문을 깨달아 터득한 일부 남자들이 전유하는 읽을거리가 되고, 가정부인들은 물론 기타 대다수의 남자들과도 교섭하지 않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매일신보』가 종래 조선 신문지의 편집상에 일대 혁명을 가하여 사회면을 독립시키고, 이와 동시에 사회면 기사와 소설, 기타 가정부인들이 좋아하는 읽을거리는 순국문을 사용하기로 한 것이니, 소설만은 국초(菊初) 이인직(李人稙) 씨가 주재(主宰)하던 『대한신문(大韓新聞)』에서도 씨의 창작에 순국문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로부터 신문이 가정과 거리에서 환영받아 그 방면의 계몽에 지대한 공적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주로 하몽(何夢) 이상협 군의 노력에 의한 산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외다. 그리고 동 군의 『해왕성(海王星)』을 비롯하여, 조일재(趙一齋) 군의 『장한몽(長恨夢)』, 『상옥루(雙玉涙)』, 심천풍(沈天風) 군의 『산중화(山中花)』, 『형제(兄弟)』, 민우섭(閔牛涉) 군의 『애사(哀史)』며 기타 여러 동서(東西)의 걸작소설이 번역, 소개되어 원서를 다 읽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특히 홍엽산인(紅葉山人)의 ‘금색야차(金色夜叉)’가 일재(一齋) 군의 곱고 막힘이 없는 필치로 『장한몽』으로 변형하는 동시에 이수일(李秀一)과 심순애(沈順愛)의 이름을 이제는 어린아이가 다투어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연문학(軟文学)²¹⁾의 맹아시대에 다른 한편으로는 장위암(張韋庵), 윤우당(尹于堂), 안지정(安之亭)같이 예원노숙(禮苑老宿)들의 이름이 많이 나와 한학을 좋아하는 자들의 마음과 눈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2기 말에는 춘원(春園) 이광수(李光洙) 군의 재치 있는 글이 이름을 날리기 시작하여 청년이 동경하는 대상이 될 만큼 세상의 갈채를 받았습니다.

5.

하산형. 현 『경성일보』 사장 소에지마(副島) 백작은 말하기를 “『경성일보』와 『매일신보』는 기왕은 기관지인지 모르되, 내가 취임한 1925년 7월 이후로는 독립한 신문으로 편향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소에지마 씨의 말을 어느 정도까지 신용할 것인지는 우리가 관여하여 알 바가 아니오. 또 그 상세한 평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소에지마 씨보다도 10년이나 전에 기관지의 민영화를 주장 운동한 사람이 있었던 것만 여기에 간략하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즉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씨가 만든 경성일보지는 소네(會彌), 데라우치(寺内)의 순서로 통감의 관인(官印)과 함께 전수되어 오다가, 다시 데라우치의 덕으로 『매일신보』까지 운영하게 된 후로 매년 5~6만 원의 수표가 고마다(兒玉) 총무국장의 손을 거쳐 도쿠토미(德富) 감독에게로 들어갔다 합니다. 그리하여 도쿠토미 씨는 그 타고난 영완(靈腕)을 발휘하여 주옥 같은 웅대한 글이 총독 정치를 칭송하는 것으로 지면에 출현하고, 그럴 때마다 첨두 장군은 자기 생각을 정성을 다해 교사(巧寫)하는 도쿠토미 씨의 입신묘재(入神妙才)에 감격한 나머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데라우치 씨가 수상으로 취임하여 경성을 떠나고 후임으로 온 사람이 만세총독(萬歲總督)이라는 별명을 듣는 하세가와(長谷川) 원사(元帥) 그 사람이외다. 정치적으로 ‘약속을 지키고 반들어 어기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부임한 하세가와 씨는 형식으로는 틀림없는 총독이나 실제로는 데라우치 씨의 대리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때에 도쿠토미 씨는 『경성일보』와 『매일신보』를 자기 수중으로 완전히 옮겨 보려고 소위 기관지 독립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술했던 것처럼 하세가와 씨는 정당한 상속을 하였으나, 재산처분은 임의로 못한 까닭에 요전순수(堯傳舜授)하여 오던 기관지에도 물론 그의 독단대로 하지 않고, 동경에 해야 할 일을 물어보았는데, 데라우치 백작의 노여움을 사서 당장 큰 벼락을 맞았습니다. 데라우치 씨는 말하기를, 『경성일보』, 『매일신보』의 현재가 있는 것은 모두 총독이던 자기의 큰 은혜를 입은 결과이다. 이 때문에 자기는

21) 남녀 간의 연애, 정사를 주제로 한 문학.

다른 민간자로부터 완명불령(頑冥不靈)한 무단전제(武斷專制)의 악마같이 저주받고, 또 매년 막대한 기밀비를 써 가면서 특수보호를 한 기관지가 겨우 수지상상(收支相償)하게 된 지금에 와서는 이유 없이 부친을 배반하려는 반역의 행위라 하여 단호한 처치를 취해 아주 빨리 도쿠토미 씨 이하 국민신문 계통의 최고 간부는 전부 파면되고, 데라우치 백작의 수행원으로 신임이 깊던 가토 후사조(加藤房藏) 씨가 『산양신보(山陽新報)』 사장의 현직을 버리고, 『경성일보』로 전임하여 제5대 사장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를 가진 『경성일보』가 아무리 시대가 다르고 주인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쉽게 특수한 역사적 관계를 끊고, 하루아침에 독립불패(獨立不霸)한 소에지마 백작 개인의 전유물이 된 것은 누구나 수긍할 수 없는 문제이외다. 그뿐 아니라 기관지란 것은 반드시 기관지로 있어야 그 존재의 이유가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권위도 있는데, 소에지마 씨의 말과 같이 개인의 소유로 총독부와 관계없이 된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그 신문은 이미 존재의 의의를 잃어버린 추해(醜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도쿠토미 씨의 분리운동은 절반의 성공도 이루지 못했고, 오히려 해강구실(蟹綱俱失)이 되어 천 번 생각에 한번 실수라는 좋은 예를 보이고, 경성 논단으로부터 그의 조리가 분명한 길고 옹대한 문장을 다시 볼 수 없게 되고 시세는 빠르게 제3기로 들어갔습니다.

(이하 다음 호, 5월 29일 삼청서옥(三清書屋) 병상에서)

〈출전 : 木春山人 評林의 評林 新聞의 新聞(其一), 『新民』 26호, 1927년, 38~44쪽〉

6. 이익상(李益相), 백두산 가는 길에

무산(茂山)에서 이익상

멋없는 상징과 … ◇

◇… 인간의 창조성

제1신

◇

여명(黎明)을 통해 어렵듯이 바라보던 삼방(三防) 깊은 산골의 적사(商肆)와 힘찬 물 줄기의 아름다움도 오히려 잊을 수 없고, 동해 연선의 해안은 더욱 여행의 피로를 위로 하여 준다. 표삼(漂參)한 수평선, 총유(叢維)한 푸른 솔, 점점이 흩어져 있는 괴석, 우뚝 솟은 기암(奇巖), 길게 이어진 흰 모래 어느 것 하나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다. 20여 시간의 장거리 여행에 권태와 무료를 느끼지 않는 것은 모두 이것의 힘이다. 아름다운 조선의 동해안!

◇

호산이 적은 관북(關北) 지방에는 ‘아카시아’와 ‘포프라’가 전과 다름없이 길 옆, 논과 들에 서늘한 그림자를 드리우며 나부끼고 있다. 언제든지 느끼는 바이지만 조선의 녹화(綠化)가 아카시아와 포프라에 많은 노력을 들어 얼마나 빨리 자랐는가. □□이었던가. 탈 없이 자라나서 하늘거리는 포프라, 덮어놓고 자라나는 아카시아 이 두 가지가 모두 조선의 모든 현상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수목(樹木) 울창한 관북에 들어서서 이 러한 느낌 더욱 새로워진다.

아 혈죽한 조선의 현재 문화여!

◇

주을(朱乙)²²⁾에서 하루 여행의 피로를 풀고 청진(淸津)을 향할 때는 가랑비가 차창을 흐리게 하였다. 차는 다시 산악지대로 들어서서 거뜬 숨을 쉰다. 옛날 무산에서 조선 철

22) 함경북도 경성군 남쪽에 있는 읍.

도의 관북선(關北線)을 바꾸어 탈 때는 다시 청천(晴天) ‘성냥갑’ 같은 경편(輕便) 기차이다. 시냇물을 따라 산기슭으로 자꾸자꾸 기어 올라간다. 조선에도 이러한 울림(鬱林) 지대가 있었던가 의심할 만큼 수목이 □천(□天)하였다. 경부선(京釜線), 경의선(京義線)에서 조선의 민동산을 한탄하는 이에게 참으로 한번 보여주고 싶다. 조선에 산이란 산이 모두 나무가 우거진 산이 될 날은 언제인가.

◇

무거운 짐을 짊은 소동(小僮)과 같은 함북선(咸北線) 경편차(輕便車)의 헐떡이는 소리가 너무 심하여 갈수록 안계(眼界)의 □□은 넓혀간다. 다리 아래로 군산(群山)은 높아졌다 나아졌다. 계곡 사이에 흘어져 있는 인가(人家)는 다수가 기와이다. 이것도 남방 기름진 땅에서 볼 수 없는 경이(驚異)이다. 그리고 가옥의 구조 규모가 다 큼직하다. 관북 민족이 얼마나 대륙적 생활의식을 가졌는지 상상할 수 있다. 그 안에서 ‘감자’나 ‘강냉이’ 밥을 겨우 먹고 사는지 누가 알 것이냐. 남방의 작고 초라한 초가집에서 기어들고 기어나는 동포가 먹는 옥□(玉□)이 오히려 가엾은 생각이 듈다. 그 가옥주변을 높게 둘러싼 목책(木冊), 1931년 ‘에로’, ‘그로’가 한창 왕성한 오늘날 호랑이에게 당하는 일은 없겠지만, 그 어마어마하게 빽빽한 목□(木□)은 옛날 무산 지방의 맹수의 사나운 위세가 어떠하였는가를 연상(聯想)케 한다. 만일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면 삼림(森林)이 풍부한 무산 동포의 재목남비(材木濫費)가 아니었던가.

◇

3천 척(尺)의 차□령(車□嶺) 정상 가까운 곳에 있던 차령(車嶺)에 도착한 경편차(輕便車)는 30분 이상을 휴식한다. 이 가파른 고개를 넘을 준비인 듯하다. 산중 작은 역이지만 부근에는 인가가 산재하여 제법 승강객(乘降客)이 있다. 역에는 조그만 정원을 꾸미고 여러 가지의 괴석을 모아 인공산을 꾸몄다. 자연스러운 산악미를 버리고 조그만 인공산에 마음을 붙인 역 직원의 생활이 얼마나 따분한지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

자가 무엇이든지 창조해 보겠다는 충동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인간창조성의 구현이다. 차□령에 있는 인공산! 영원한 인간창조성의 상징이 되라.

(컷은 (무산에서). 백두산정상의 천지 사진은 삼방출협(三防出峽) 약수포(藥水浦) 부근의 수봉(秀峰))

〈출전 : 李益相, 白頭山 가는 길에, 『毎日申報』, 1931년 7월 25일〉

7. 이익상, 만주기행

[7-1]

기억조차 새로운 북대영(北大營) 전적(戰跡)

봉천성(奉天城) 북일리(北一里) □에 있는 만주사변 때에 역사적 사실을 제일 많이 가진 북대영(北大營)을 찾았다. 도로가 험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왜 이렇게 도성과 떨어져 있는 곳에 병영을 두었는지 군사 전문가가 아닌 사람으로 그 뜻을 알 수 없다. 녹음(綠陰)이 우거진 광대한 일대가 북대영이라 한다. 왕이철(王以哲) 동북육군(東北陸軍) 제7여(第七旅)의 병사요, 학량(學良)의 군대 1만 2천 병사의 합숙소이다. 70만 평 넓은 벌판 가운데에 사령부가 있고, 병사가 있고, 연병장이 있고, 또 농원(農園)이 있다. 혼(魂) 없는 군대가 물러간 발자취 위에는 여름풀이 무성했을 뿐이다. 용맹스러운 군사가 뛰어난 것으로 중국 4백 주(州)에 이름을 떨치던 학량 군사 1만 2천이 만주 주둔군 6백에 크게 패하여 숨을 구멍을 찾게 된 재작년 9월 18일 밤의 전쟁 상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밤 10시경이었다. 초승달은 육락이 우거진 서편 지평선 아래로 들어갔다. 봉천 교외에서 연습을 하던 독립수비 제2대대 제3중대의 척후(斥候)대 6명이 남만주철도 선로를 따라 남쪽으로 향하여 북대영의 약 5백 미터 지점에 도착하였을 때에 갑자기 후방에서 홀연한 폭음이 일어났다. 척후대는 깜짝 놀라 폭음이 나는 곳으로 돌아보니 몇 명의 중국군이 북대영을 향해 도망하였고, 철도선은 폭파되어 있었다. 척후대는 도망하는 중국 병사를 추격하여 3명을 사살하고, 전진하였다. 이때에 북대영 남방 고량(高梁) 밖에서 약 5백의 중국 병사가 출현하여 척후대를 향해 맹렬하게 사격하면서 문관屯(文官屯) 분견대(分遣隊) 방향으로 전진하려는 기세가 보였다. 척후병 1명은 원관屯 중대장 카와지마(川島) 대위에게 급히 전하였다. 카와지마 대위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맹렬하게 습격하여 5백 여의 중국 병사는 북대영 방면으로 도주하였다. 카와지마 대위는 양군 충돌의 보고를 대대 본부에 보고하는 동시에 용감하게 북대영의 서북 쪽으로 맹렬(猛烈)하게 들어갔다. 악전고투(惡戰苦鬪) 수십 분 만에 병사(兵舍) 한편을 점령하고 한편으로 서남 정문을 점령하여 중국군의 퇴각로를 차단하였다.

◇

이 작은 충돌을 들은 당시에 독립수비대 제2대대장 □태(□太) 중좌는 일이 이미 이에 이른 이상 북대영 1만 2천의 군대가 대거 습격하여 오면 불과 6백의 독립수비대의 운명이 어찌 될지 알 수 없어서 기선을 제압하려고 용감하게 공세를 취하여 각지 수비대에 출동명령을 내리고 동시에 관동군사령부 및 기타 연안 각지 대대 본부에 사변(事變)을 보고하고 북대영을 습격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매우 빨리 대응해 오는 공격에 북대영 왕이철 군은 몹시 놀라 어찌할 바를 몰랐던 것이다.

〈출전 : 기억조차 새로운 北大營 戰跡, 『毎日申報』, 1933년 9월 9일〉

[7-2]

감격의 도시 하얼빈(哈爾賓)

◇

동양의 파리라 하는 국제도시 하얼빈의 교외는 처참도 하다. 작년 대홍수 참화의 자취는 아직도 남아있다. 게딱지같이 토굴, 토막이 산재한 댐 위에는 영양 불량한 군중의 걸음이 더디기도 하다.

◇

열차는 정거장 구내로 달려들었다. 보곽(步廊)에는 원□(猿□), 거고(巨尻), 세□(細□), 제족(蹄足), 고복(鼓腹), 양□(羊□), 장수(長袖)의 내외 남녀 무리의 잡답 훤□(喧□) 등 기이한 광경이 펼쳐진다. 일행은 육교를 건너서 제1보곽에 이르렀다. 하얼빈 시장은 큰 몸을 조그만 단상에 올리며 환영사를 개진(開陳)한다. 만주어이니 알아들을 수는 없으나, 억양과 ‘제스처’는 웅변 대가의 풍모를 보인다. 그런데 시장이 선 곳이 옛날 이토 히로부미 공이 저격을 당한 지점이라 한다. 그 장소를 일부러 찾아서 환영사를 드리는 시장의 □□는 매우 깊지 않은가. 현재와 과거의 감상이 여러 사람의 얼굴에서 교차한다.



하얼빈은 □업(□業), 경제, 교통 방면에서 전 만주의 중심일 뿐 아니라, 정치상으로 봐도 전형적인 국제도시이다. 만주인 30만, 러시아인 8만 4천여 명, 일본인 1만 3천 40여 만의 대도시이다. 조선동포도 만주사변 이후로 격증하여, 오늘날에는 6천 명을 돌파하였다 한다. 시가가 화려하고, 가지런함은 명성 그대로이다. 도로가 청결하고, 수목이 하늘 높이 솟았고, 움직이는 인종이 단아하다. 옛날 러시아의 대동양경영의 발원지여서, 규모가 크고, 빈틈이 없던 것을 이제 다시 일러 무엇하리오. 지사(志士)의 묘, 극락사(極樂寺)를 감격스럽게 구경한 뒤에 짐을 북만(北滿) 호텔에서 풀었다.



『하얼빈』 야화(夜話)! 평소에 매우 정취 있게 들리던 말이다.

이국 정조를 느끼게 되리라는 선입견보다 러시아인들의 낙천적 방랑성에는 의외의 □□이 미래를 의심하게 한다. 다정히 팔을 걸고 거리를 산보하는 남녀의 무리 모두 녹수(綠水)의 사사(寫寫)다. 그들 다수는 물론 백로계(白露系)의 유랑민이다. 그러나 그들의 얼굴에서 도무지 슬픔을 찾아낼 수 없는 것은 보는 사람의 둔감이라고나 할까.

〈출전 : 감격의 도시 哈爾賓, 『毎日申報』, 1933년 9월 23일〉

8. 천장절축일(天長節祝日, 1921 · 1923년 사설)

[8-1]

삼가 오늘 1921년 10월 31일을 생각한다.

대일본 천황 폐하의 제43회 천장절을 축하하고 기리는 날이라. 육일중천(旭日中天)에는 상서로운 기운이 영롱(玲瓏)하고, 상서로운 구름이 끼며, 만물은 여호(曦暉)한대, 풍명전(豐明殿) 내에 따스한 기운이 피어나고, 엄숙한 용모와 장중한 태도는 여러 가지이며, 여러 겹의 구름문이 근엄하게 열리자 온 땅의 노란 국화는 향기롭고, 균천(均天)의 광악(廣樂)은 한없이 귀에 가득한데, 임금이 주는 술 3번에 모든 관리가 기뻐 춤을 추고

만세의 환호는 오우치산(大内山)을 스쳐 부는 바람과 어울려 임금의 장수를 축하하리로다. 삼가 생각하면 천황 폐하께서는 문무(文武)의 덕을 겸비하고 계시며, 신과 같아 신기(神器)를 조상으로부터 받았고, 제범(帝範)²³⁾을 계승하사, 메이지(明治)를 세우는 큰 사업을 계승하시고, 다이쇼(大正)의 큰 일을 베푸시니, 화(化)는 초목(草木)에 미치고, 뇌(賴)는 사방에 미쳤도다. 극히 큰 덕을 나타내시며, 속히 큰 계획을 진행시켜 국가는 태산(泰山)의 안(安)에 두시고 백성은 안락한 집에 두었으니, 우리 7천만 동포로 폐하의 백성 된 중에 누가 폐하의 덕을 떠받들지 않으며, 폐하의 은혜를 받지 않은 자가 있으리오.

폐하는 하늘의 덕을 갖춘 예명(睿明)으로서 일찍이 조선 통치에 마음을 써서 극도(克圖)하며, 비시(備試)하여 노력이 이르지 않은 곳이 없었으므로 친히 중요한 기틀을 만드시고 백채(百采)를 모두 같게 하시기에 정성을 다하여 부지런히 힘썼으므로 옥체(玉體)가 늘 건강하지 못하여 지난달 아래로 늘 편안하지 않다는 것을 삼가 들었도다.

초망(草莽)에 있는 미천한 신하 등은 폐하의 환후가 완쾌하지 못하심에 대하여 백성들이 몹시 걱정하여 하루라도 속히 완치하심을 기도하였는바, 다행히 병세가 위독해지는 지경에 있지 아니하심은 실로 우리 일반 백성의 손뼉 치며 기뻐할 일이로다.

살펴 생각건대 폐하께서는 만세일계(萬世一系)의 대통(大統)을 이으시고 임금의 지위로 여러 가지 중요한 정무에 부지런하여 겨를이 없이 몸소 노력하심이 이미 천만 년을 셈하여 온 아래 황제의 위엄의 진작(振作)과 나라를 다스리는 계책의 심오함으로 백성이 모두 기뻐하고 나라의 기강이 크게 성하였다. 황제(황실)의 운명이 번성하고 백성이 살림이 넉넉하여 태평을 칭송하며, 뛰어난 임금이 다스리는 세상을 즐거워하기에 이른 것은 모두 폐하가 다스리는 정치의 은혜를 입음이라. 그러므로 제국의 앞길은 장차 대륙을 넘어 동양에 용비(龍飛)하고자 하나니 곧 이제 천하 우주 만물의 뛰어난 나라의 한 원수(元首)를 의지하며, 춘추(春秋)는 바야흐로 혈기가 왕성하사 대대(代代) 임금과 비할 수 없는 영광을 발하셨나니, 2천 5백 년 이어진 역사가 영구하지 아니한 바는 아니라, 제국의 광채를 나타냄이 오늘날과 같이 용성함이 없었도다.

옛사람 중에 주(周)의 문무의 덕을 칭송하는 자 있어 위대하고 고귀하다, 문왕(文王)의 책략이여, 위대한 계승이여, 무왕의 공덕이라 하였도다. 우리는 삼가 이를 모방하여 선대(先代)의 황제와 지금의 황제를 칭송하건대 위대하고 고귀하다, 메이지(明治)의 책략이여, 위대한 계승이여, 현재 임금의 공덕이라 하겠도다.

미천한 신하 등은 삼가 동쪽을 향해 절하옵고 유부(類附),²⁴⁾ 1천8백만의 백성과 함께

23) 중국 당나라 태종이 648년에 친히 편찬하여 태자인 고종에게 하사한 책.

24) 종녀(宗女)와 서얼(庶孽).

매우 기뻐하여, 삼가 남산(南山)의 축하주(壽杯)로서 주 조정(周廷)의 송축하는 말과 중국인의 서축사(西祝辭)로서 함께 국가(國歌)를 삼창하여 우리 황제 만년 무강(無疆)을 기리며 축하하나이다.

〈출전 : 天長節祝日, 『毎日申報』 1921년 10월 31일〉

[8-2]

하늘이 동방(東邦)을 춘의(春依)하사 오늘로써 우리 문무의 덕을 겸비하신 천황 폐하 연세가 꽉 찬 마흔 네 살로 천장가절(天長佳節)의 경사스러운 날을 맞이하는도다. 신민(臣民)의 축하가 어찌 같으리오.

더욱이 몇 해 전에 폐하가 환후로 인해 편안하지 않으셔서 여러 정무의 섭정(攝政)을 황태자에게 명하시고 원양(願養) 중에 있으심은 신민이 두려워하던 바라. 요즘 열핏 들은 바에 따르면 폐하 섭정 아래로 옥체가 날로 건강하고 기력이 왕성하시며, 옛날에 비하여 병세가 좋아지고 있으시다 함은 나라 전체가 모두 함께 경축하지 않을 수 없도다. 폐하의 환후가 하루라도 빨리 회복되어서 다이쇼(大正)의 태평한 세상이 천만 년 이어져 7천만 백성이 함께 평안한 복을 누리며, 뛰어난 임금이 다스리는 세상을 노래하고자 하노라.

보통 매년 지금과 같이 좋은 때를 맞이하면 폐하의 만수무강을 축하하기 위하여 황족으로부터 문무 고관과 명부(命婦)²⁵⁾에 이르기까지 풍명전(豐明殿) 위에 모두 함께하며, 특히 본국에 머물러 있는 우방(友邦) 원수(元首)의 대표사절 또한 한자리에 모이는 영광에 더하여 존경(敬視)의 뜻을 표하도다. 또 밤에는 □□ 외상(外相) 관저에 어여쁜 국화가 향기로우며, 아름다운 월계수가 □하는 고당(高堂)에서 연회를 크게 열고 조정과 민간의 이름난 사람들과 내외의 귀신(貴紳)²⁶⁾이 함께 춤추며 1년에 한 번 있는 좋은 날을 축하하고, 전국의 방방곡곡은 물론이요, 무릇 해외 각지에까지 진실로 일장기(日章旗)가 나부끼며, 야마토 민족(大和族)²⁷⁾이 있는 곳에는 이 날에 임금의 사진에 절하며, 축배를

25) 봉작(封爵)을 받은 부인(夫人)을 통틀어 일컫는 말.

26) 지위가 높고 귀한 사람.

27) 일본 민족의 자칭.

높이 들어 우리 황제 만세(萬歲)를 삼창하지 아니하는 것이 없도다.

이는 실로 세계만방에 있지 못한 것이오. 군민이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여 의(誼)는 군신이나 정(情)은 부자(父子)라는 일본 제국의 탁월한 단체와 하늘의 도움을 항상 가진 만세일계(萬世一系)의 황통(皇統)을 영원히 유지하시는 황실을 섬기고 받드는 신하의 충성이 특이한 일본국가가 아니면 보지 못할 바라.

양(襄)의 관동(關東) 일대에 자연재난이 있어 인명과 재물의 손실이 매우 크므로 폐하는 매우 놀라셔서 막대한 내탕금을 풀어 은혜를 베푸시며, 특히 조칙을 선포하시사 신민의 추향(趨向)을 분명하게 보이신지라. 대저 자연재난과 지진은 어느 시대든지 피하지 못할 것이라. 요(堯)의 성(聖)으로 9년의 수(水)가 있으며, 탕(湯)의 덕(德)으로 7년의 한(旱)이 있으니, 이를 헤아려보면, 다이쇼(大正)의 태평한 세상에 크고 작은 자연재난과 이변이 있다 할지라도 충분히 임금의 덕과 관계가 없거든, 하물며 폐하는 척연(惕然)히 마음과 힘을 다하여서 백료유사(百僚有司)로 하여금 정무(政務)의 쇄신을 명하시고 고아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방안에 역불용□(歷不用□)셨다. 이뿐 아니라. 이제 황제가 거하는 도성의 질서가 나날이 더욱 안정하며 당면한 많은 업무가 잘 되어 갔으며, 그 빈민이나 이재민을 구제하는 더없이 극진한 마음으로 특히 이날에 큰 축하연을 중지하시며, 황태자의 혼례까지 연기하여 잘 다스리고 안정시키신지라. 이것이 신하와 백성을 더욱 떨쳐 일어나게 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는 바이로다. 우리는 좋은 날을 맞이하여 임금의 뜻을 생각하여 삼가 공경하는 태도로 임금을 대하여, 다만 7천만 동포의 정성스러운 뜻을 모아 삼가 성수(聖壽)의 만세(萬歲)²⁸⁾를 세 번 부르노라.

〈출전 : 天長節祝日, 『毎日申報』, 1923년 10월 31일〉

28) 임금의 나이가 끝이 없다는 뜻으로, 임금이 오래 살기를 기원하는 말.

9. 내선(內鮮) 양 민족의 관계를 논하노라(사설)

- 평화는 친애로, 친애는 융화로

현재 천하의 대세를 주장하는 자는 반드시 세계의 평화문제를 부르짖으며 극동(極東)의 평화를 주장하는 자는 반드시 일본과 중국의 친선문제를 제창하며, 또 일국의 안정을 주장하는 자는 반드시 조선인과 일본인의 융화문제를 주장하므로 세계와 극동과 작은 나라의 태평과 강하(講何)는 오직 평화와 친선과 융화로서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 함은 뛰어난 지혜가 아니어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세계문제와 극동문제는 고치(姑置)물론하고 먼저 나라의 현상 및 장래를 생각하는 자는 강하를 다시 묻지 않고 그 주장하는 바는 첫째도 내선융화, 둘째도 내선융화, 셋째도 내선융화로 마무리하니 이는 즉 옛사람의 이른바 여러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한결같다는 것이 곧 이것이로다.

대개 평화에 이르기 위해서는 친선이요, 친선에 이르기 위해서는 융화이니, 오늘날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에 절실히 요구되는 바는 평화를 주장할 시기도 아니요, 친선을 주장할 시대도 이미 지났고, 지금은 융화의 적당한 때라고 말할지로다. 그러나 세상의 일은 이론보다도 실제가 필요할 것이니, 이론으로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실행하지 않으면 이는 이른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아니함이니, 그러므로 우리가 내선융화를 이론적으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행이 이에 서로 맞은 후의 일이나, 세상의 일은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말하기는 쉽지만 행하기는 어려운 것이라. 그러나 이 융화문제와 같이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에 서로 그 장벽을 없애고 서로 생각을 막지 않으며, 마음이 □□하지 않으면, 뼈와 살이 가깝지 않더라도 결코 도달하기 어려운 일이 아니니 이는 옛말의 이른바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이다.

한일합병 이후로 우리 조선과 일본 민족은 같은 하늘을 바라보고, 같은 땅을 밟게 되었으므로 두 민족의 융화가 점차 그 밀도를 더해 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때에 불행하게도 인제(麟蹄) 사건이 발생한 후로 우리 조선인의 사상계는 전과 다르게 변화하여 일부 과격분자의 폭동으로 남의 의견에 따라 움직이는 자가 많아졌으므로 일본인에 대한 조선인의 태도가 점차 그 온정이 한동안 냉각(冷却)된 것은 □至한 일이었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 현상이요, 결코 이것이 오래도록 마음에 있지 않을 것은 명백한 일이니, 우리 조선인은 그리 의식(意識)이 없는 자가 아니며, 또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귀도 있도, 눈도 있으며 그 보는 바와 듣는 바며, 세계의 큰 흐름에도 각오(覺悟)한 바가 있으며, 조선과

일본의 관계상으로도 많은 이해를 한 것은 현재 상황 속에서 숨길 수 없는 사실이라. 그런즉 이 각오와 이해로부터 나온 이른바 융화라는 것이 그 산물이니, 작년부터 조선에는 인심(人心)이 대□경론으로 통일되어 협약한 사상은 이미 잠잠해지고 춘풍(春風)에 따스한 기운이 넘치는 중에 일체(一體)로 일본인에 대한 태도는 점차 성실, □만(□滿)하게 되었고 □□ = 간격 = 해현의 마음은 마치 음지의 얼음이 따뜻한 불을 맞이하여 녹아 버리는 것과 같으니 이는 즉 이른바 싸움은 평화로 = 평화는 친선으로 = 친선은 융화로 변하여 옛사람의 이른바 ‘일절(一節)이 심어일절(甚於一節)’이라는 가을에 이르렀도다. 그러나 일본인 된 자 □□□□□□□□□□□□□하며 참된 마음을 발하여 친밀한 정과 온화의 정으로서 상대하지 않을 수 없으니, 사람은 감정적 동물이라. 아주 작은 차이에 천리(千里)가 어긋나니 텔끝만치라도 불평불만의 태도로서 조선인의 감정을 해칠 때에는 이는 한 개인, 또는 한 사회의 문제가 아니니 일본인 된 자는 마땅히 이 점을 생각하게 유의할 바이로다.

중국 후한(後漢)의 말에 촉(蜀), 위(魏), 오(吳) 삼국이 정립의 연으로써 서로 갈라졌으나, 오, 촉은 겨우 일격(一隔)의 땅을 지키는 데 불과하였도다. 만일 오, 촉이 서로 어울리지 아니하면 위의 병합을 깨뜨릴 수 있어 이에 손권(孫權)이 일가(一家)가 된 연후에 북(北)으로 조조(曹操)를 막아냈으니 현재 우리 제국의 처지도 이과 같이 동양으로서 서양을 대하여, 황색인종으로서 백인종을 물리치려면, 어떤 것보다도 우선 조선과 일본이 일가가 되며, 일본과 중국이 친선의 정을 결탁한 연후에 가능할지니 이는 일본에 이익이 될 뿐 아니라, 조선에도 이익이 되는 것이라. 이른바 분리하면 공멸하고, 결합하면 공존된다고 말한 이것은 이 조선과 일본의 관계를 도파(道破)한 지언(至言)이 아니리오. 고인의 시(詩)에 “본디 한 뿌리에서 같이 태어났거늘 서로 괴롭히기가 어찌 이리 심한고”란 시구를 우리 조선인과 일본인은 마땅히 늘 기억해야 할 바이로다.

〈출전 : 内鮮 兩民族 關係를 論하노라. 『毎日申報』, 1922년 3월 25일〉

10. 매일신보가 본 반도 20년간, 을사에서 병인까지

- 구조선에서 신조선으로 변천을 밟아 (연재기사의 일부)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통감이 부임하기 전에 한국 정부는 내각의 경질(更迭)이 있어 전(前) 외부대신 박제순(朴齊純)을 참정대신(參政大臣)으로 하고 기타 대신은 한규설 내각 때와 마찬가지로 내부 이지용(李址鎔), 탁지부 민영기(閔泳綺), 법부 이하영(李夏榮), 군부 이근택(李根澤), 학부 이완용(李完用), 농상공부 권중현(權重顯)(후일 이동이 있어 군부 이근택(李根澤)이 퇴각하고 권중현(權重顯)이 군부로 옮긴 대신에 성기운(成岐運)이 농상의 뒤를 이음)이 새로운 내각을 조직하고 시정 개선을 맡았는데 세상 사람은 이를 가리켜 소위 오적내각(五賊內閣)이라 하여 상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토 통감의 원조가 있으므로 그 지위와 기초는 매우 호고하여 종래 유례가 없던 장수(長壽)를 비교적 오래 유지하였고 일본인 고문(顧問)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각종 시설(施設)을 행하였으니 즉 지방제도의 개정을 비롯하여 신교육령(新教育令)의 발포와 치도사업 및 경찰제도, 세무기관의 창설 등을 □한 것이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 1천 3백만 원의 차관을 일본에서 들여 왔으니 이것이 후일에 와서 단연동맹(斷煙同盟)으로 상환하자 하던 한국 국채의 시초이다. 이에 그때 각 부(部)에 들었던 고문 및 참여 등의 씨명(氏名)을 덧붙여 기록하면 다음과 같다.

궁내부(宮內府) 가토 마쓰오(加藤增雄), 내부(内部) 가메야마(龜山理平太), 경무 마루야마 시게토시(丸山重俊), 재정 메가다 타네타로(目賀田種太郎), 세관 낭아□(永□盛三), 학부 시데하라 히로시(幣原坦), 군부 노즈 시즈타케(野津鎮武), 법부 아즈미(安住時太郎)



이토 통감의 부임을 전후하여 경성에서는 윤효정(尹孝定), 장지연(張志淵) 등의 발기로 대한자강회(大韓自強會)라는 정치단체가 성립되니 그 목적은 한국의 자주권 회복을 바라는 것을 전제로 국민의 정신을 떨쳐 일으켜 애국사상을 고취하고 교육과 산업개발로써 실력을 양성하여 부강독립을 목표로 한 것이니 당시 조선의 지식계급과 보수주의의 인물은 대개 이에 투입되어 일진회와 대항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일파가 항상 정부와 통감부 측으로부터 재미없이 나아가고 물러난 것은 물론이요, 그 간부들은 경시청 명부에 성명을 주□(朱□)하던 소위 주의인물(注意人物)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한편으로

충남 홍주(洪州)에는 민종식(閔宗植), 최익현(崔益鉉), 김복한(金福漢) 등을 중심으로 국권 회복과 임금 곁의 간신(奸臣)의 주멸(誅滅)²⁹⁾을 표방하는 의병 소동(騷動)이 일어나 세상이 불(不)□하고 상하(上下)가 의심하여 두려워하던 때이다. 그런데 새 통감은 안팎의 주목을 한 몸에 받으면서 경성에 들어왔다. 그의 대한방침(對韓方針)이란 과연 어떤 것인지 알 수 없는지라.

◇

통감은 부임하자마자 전술한 피로회(披露會)를 이용하여 그 정책을 성명(聲明)하였다. 대강의 뜻에 의하면 일한신협약(日韓新協約)은 일본이 어떤 침략적 야심을 가지고 체결한 것이 아니다. 약한 이웃을 돋고 또 일본을 스스로 지키고 동양의 평화를 위한 어쩔 수 없는 행동인 것을 힘써 변론하고 통감은 이후 한국의 보호를 위한 일로 인도주의의 입장에서 서무(庶務)를 개혁하며 민지(民智)를 계발하고 이용후생(利用厚生)의 큰 뜻을 세워 한국이 뒷날 부강기초(富強基礎)를 확립하게 하여, 일한 친선으로 공존공영을 기약한다는 것을 누누□□□을 비(費)하여 고조하였다. 일본의 국책(國策)은 한국에 있어서는 그 나라의 이익과 국민의 행복을 이루도록 지도하고 두루 베푸는 것과 중국에 있어서는 문호 개방, 기회균등주의를 정성을 다해 지키는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 성명은 확실히 외국인에게 일종의 호감을 주었고 한국 민중에게도 다소의 안심을 준 것은 사실이다(그 때 처지로 한국 민중이 반대한데야 별수도 없겠지만). 그리고 이토는 한국 내정개혁에 착수하여 전기(前記)와 같이 자금 대부를 비롯하여 여러 제도 창설을 독려하고 소위 궁궐 숙청을 실행하기로 하여 일본인 경관으로 궁문 수호의 직책을 맡게 하여 출입을 자세히 조사하였다. 이때 한국 민중은 황제를 가둔 것과 같은 것이라 하여 적지 않게 격앙되었지만 소위 궁중(宮中), 부중(府中)을 구별하여 정치상의 명령이 한 곳에서 나온 점에서는 무익한 일도 아닐 것이다. 이토는 또 유생(儒生) 회유에 착안하여 신기선(申箕善), 조중응(趙重應) 등으로 하여금 대동학회(大東學會)를 일으키어 이를 원조하고 박영효(朴泳孝), 유길준(俞吉濬) 이하 망명객을 사면하여 돌아오게 하며 김윤식(金允植)의 □□를 사(辭)하여 각 방면의 인심 수습에 힘썼었다.

〈출전: 每日申報가 본 半島 20년(6), 『毎日申報』, 1926년 9월 6일〉

29) 죄인을 죽여 없앰.

군대 해산

◇

이토 히로부미 공의 진의(眞意)가 한국을 다스리는 데 있었음은 그의 전후(前後) 십 수차례 공공연설과 평상시 말에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이유로 종전에 여러 사람의 의견을 힘으로 물리치고 부여(附與)하였던 외교 자주권을 회수하였으며, 오늘날에 와서 지도(指導)에 □일(□日)하고 모든 내정을 장중(掌中)에 잡아 한국 정부는 단지 혀된 명성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른바 나라 안팎을 지킬 만한 군대에까지 손을 대어 궁성을 지키는 약간의 병사를 제외하고 전부 해산시키고 말았는가. 이는 이토의 마음과 반대라는 것보다도 한국의 외교권 관리라는 것만으로는 도저히 일본 국민의 의사 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 즉 바꾸어 말하면 일본 국민은 러일전쟁에 제공한 희생이 컸던 것만큼 또 강화(講和) 조건에 불만이 많았던 것만큼 한국과 만주 경영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적극책을 취할 것을 희망하여 정부의 힘으로도 이를 어떻게 하지 못하게 된 것이 하나요, 또 한편으로 무능한 한국 정부가 이러한 와중에도 오히려 구태의연하여 그 어떤 시설도 개선한 확실한 행적이 없고, 오직 권력투쟁에만 열중하여 민족의 운명을 도 외시하는 동시에 시세에 어둡고 자력(自力)을 키우지 못하는 민중이 일본의 과恩(寡恩) 을 원할 줄은 아나 자강자립(自強自立)하여 실력을 기르는 원칙을 무시하고 행동하지 않은 결과로 더욱 강한 이웃 나라의 진노를 돋우어 자가(自家)의 형편을 더욱 나쁘게 인도 하게 한 것이나 이 어찌 오직 일본의 야심과 이토의 □사(□詐)를 탓할 것이리오.

◇

7월 31일에 이토 통감은 주한군사령관 하세가와(長谷川) 대장에게 한국 군대의 해산 명령을 정식으로 내리니 이보다 먼저 통감은 이완용(李完用), 이병무(李秉武) 두 대신을 관저(官邸)로 초대하여 한국 군대의 쓸모없음을 역설하고 확실하게 이를 일시 해산하고 후일 적당한 시기에 국민개병주의에 의해 징병제를 실시할 것을 종용하였다. 두 대신은 순순히 받아들이고 돌아와 각의(閣議)에 명하여 해산에 관한 모든 준비를 하는 동시에 만일 군대가 해산에 순종하지 않으면 경성 치안은 일본군대가 담당할 것을 통감에게 의뢰하였다. 이에 하세가와 사령관은 통감의 명에 따라 이군상(李軍相)을 해산하여 8월 1 일로써 훈련원에서 거행하기로 해산순서를 정하고 만일을 대비하기 위하여 오카자키(岡崎) 제13사단장과 미야케(三宅) 현병대장에게 한번 명령하여 즉시 출동하여 진압하게 하고, 한편 일방으로 마루야마(丸山) 경무고문(警務顧問)은 수백 경관을 단속하고, 미우라

(三浦理) 사관(事官) 역시 소방대원 등을 소집하여 비상준비를 하게 하며, 일본인 거류민들은 의용단(義勇團)이니 자격단(自擊團)이니 하는 것을 조직하여 곤봉죽창(棍棒竹槍) 등 무기를 들고 여러 가지 용의만단수지불통(用意萬端水池不通)의 매우 세밀한 준비를 갖추었다. 남산 일대에는 살기(殺氣)가 넘쳐 진실로 산이욕래풍좌루(山爾欲來風座樓)의 관(觀)이 있었다. 당시 한국에는 □위(□衛), 시위(侍衛) □대(□隊)의 보(步), 기(騎), 포(砲), 공(工) 각 병력과 및 지방진위대(地方鎮衛隊)를 □하여 이루어진 1여단(旅團)의 병력이 있어 그 수가 무려 1만여 명이나 된 즉, 비록 일본의 1사단의 병력에도 미치지 못하나 하여튼 무기를 가지고 신식 훈련을 거쳤으므로 이것이 1차 결속하여 대항한다면 쉽지 않은 일이므로 이와 같이 철통 같은 준비하에 일적(一滴)도 불□(不□)하게 된 것이다.

◇

갑자기 8월 1일 새벽녘부터 각 병영에서는 대장 이하가 출동하여 전 병력의 총기를 수합하여 창고에 넣어 두고, 다음에는 일본 군대가 이를 지키며 맨손과 맨주먹의 병정들은 대오(隊伍)를 갖추어 관청으로 향해 가는 양(羊)의 모양으로 훈련원으로 향하는데 식장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오직 윗사람의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면서도 내심은 두려워서 마음이 거북하였다. 그리하여 훈련원 식장에 집합한 것이 오전 8시인데 이 곳에서 이군상(李軍相)이 조서를 소리 내어 읽고 해산을 명한 후에 일봉(一封)³⁰⁾의 은사금(恩賜金)을 주어 퇴산시켰다. 예상한 것보다 의외로 해산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을 보고 당국자들도 겨우 마음을 놓으려던 순간에 서소문(西小門) 방면에서 총성이 일어나며 삽시간에 굉장히 수라극(修羅劇)이 연출되었다.

〈출전: 每日申報가 본 半島 20년(15), 『毎日申報』, 1926년 9월 17일〉

전토(全土)의 병화(兵禍)

◇

8월 8일의 새벽녘부터 음울한 날씨가 계속되더니 오전 7시경에는 빗발이 세차게 쏟아져 무심한 자연도 비장한 기세를 도와 이날의 비극을 조문하는 듯하였다. 훈련원 언저

30) 사례금이나 상금으로 얼마의 돈을 넣은 봉투.

리에 무기 없는 1만 여의 병력이 은사금 일봉을 받아가지고 망연자실하고 말없이 칼과 창이 □□한 일본 병사의 감시하에 삼삼오오로 귀도(歸途)에 취(就)하는 때에 한성 서남 각(西南角)에서 돌연히 □살(□殺), 명천(銘天)하고 총성이 어지럽게 일어나면서 새벽꿈이 정농(正濃)하는 시민의 귀를 놀라게 하였다. 이보다 앞서 시위(侍衛)³¹⁾ 1연대(聯隊) 제1대대장 박성환(朴星煥)이 해산의 명령을 받고 다른 부대와 마찬가지로 병졸(兵卒)의 총기를 회수하여 두고 앞으로 훈련원으로 향하려 하는 중에 분함과 원한을 견디지 못하여 단도(短刀)로 자경(刺頸)하여 무사다운 최후를 마쳤다. 이와 같은 무언의 명령을 받은 병졸은 한꺼번에 봉기하여 무기 창고를 습격하여 회수되었던 총기 탄약을 꺼내 가지고 남대문 병영(현 남대문소학교)이 살기로 충만한 때에 인접한 서소문병영(시위 제20대대)에도 이어져 2영(二營) 병졸이 일본군대와 충돌함으로써 전기(前記)와 같은 활극(活劇)이 생긴 것이다. 만일을 경계하던 군은 사령관의 명령과 함께 13사단의 각 부대가 남대문 방면으로 출동하여 남대문 위에 기관총을 두고 맹렬하게 사격하였다. 강자와 약자는 상대가 되지 않음이요, 적은 수로 많은 수를 대적하지 못한지라. 맹렬한 전투 여러 시간 동안 한국 병사의 사상자가 속출하고 후응(後應)도 업고 탄환도 다하매 힘이 빠진 나머지 무리는 어찌할 수 없어서 조분수진(鳥奔獸震)하여 단병전(短兵戰)³²⁾의 막을 내렸다.

◊

정오에 이르러서는 우박도 그치고 전투도 종식되고 다만 남문 부근에 비린내 나는 피가 흥건할 뿐이었다. 그런데 참극(慘劇)은 이로써 그치지 않았고 태평동(太平洞) 일대가 짓밟히는 처참한 비극이 생겼다. 열흘 전 독립 소동이 있었을 때에 일본 거류민 몇몇과 우편배달부 등이 한인의 폭행을 받아 명대로 살지 못하고 참혹하게 죽은 일이 있었음은 전술한 것인데, 이에 분노하였던 이현(泥峴)³³⁾의 거류민의용단(居留民義勇團)은 이 기회에 죽창대(竹槍隊)를 출동시켜 도망간 병사를 체포한다는 구실로 부근 민중에 함부로 들어가 머리카락을 깎은 자만 보면 찔러 죽이거나 체포하는 난폭하기 짝이 없는 참학(慘虐)을 행하였다. 이때 옳고 그른 사람 구별 없이 까닭 없이 죽은 자가 얼마인지를 헤아릴 수 없었다. 그리고 진정한 싸움에 져서 달아난 병사가 숨어 있던 민가에서는 한 집안이 전멸하는 재앙을 당하기도 하였다. 아무리 비상시의 홍분되고 또 적개심과 복수심이

31) 임금을 모시어 호위함. 또는 그런 사람.

32) 칼이나 창 따위의 단병으로 적과 직접 맞부딪쳐 싸우는 전투.

33) 서울 중구의 이현.

극도로 고조된 때라 할지라도 이토 통감의 □하(□下)에서 이와 같은 불상사가 생긴 것은 그가 평소 표방하던 인도주의에 비추어 보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폭력으로 폭력을 고치고 원한으로 원한을 갚은 결과, 오늘날에 와서도 그 감정의 도량이 쉽게 메어지지 못함은 어찌하지 못할 추세이다. 어린 아이가 밤에 울지 못하고 사람들이 어깨에 짐을 짊어져 췌췌(喘喘)히 체면이 없다던 중국인의 모습이 이에 대한 그 비유임을 알았다.

◊

경성의 군대 해산은 비록 처참하였으나 오히려 이만한 정도로 그치고 말았거니와 지방 진위대(地方鎮衛隊)의 해산에 이르러서는 그다지 단순하지 않았다. 혈기 왕성한 청년 병졸이 시대의 요구와 대세를 이해롭게 동□(洞□)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강원도와 충청도 지방에서 해산된 병사들이 앞장서서 의병을 일으키고 유림이 이에 대응하여 도처에 큰 소란이 생겼다. 관리 학살과 친일파 박멸이 그들이 군대를 일으킨 유일한 목적이 되었다. 친일파라 할지라도 그들이 지목하는 것은 일진회원(一進會員)이요, 일진회의 유일한 증거는 머리카락을 깎고 모자를 쓴 것이기 때문에 당시 머리카락을 깎은 자는 갑작스러운 봉변에 어찌할 줄 모르고 의병 측과 토벌대로부터 각각 오해를 받아 비명횡사한 자가 무려 수만 명에 이르렀다. 또한 군읍(郡邑)이 황폐해지고 여염(閭閻)³⁴⁾이 텅 비어 십 수리(里)를 가도 계견불문(鷄犬不聞)하도록 나라 안의 난리로 인한 재난은 거의 조선 각지에 미쳤다. 이완용(李完用) 내각의 첫 시대에 강원, 충청, 경기, 경상 각지에 선유사(宣諭使)³⁵⁾를 보내며 애통한 임금의 말씀(綸音)을 전달하여 시국 안정에 노력하였지만 형세가 날마다 다르고 사태가 위급함을 보고는 통감부에 의뢰하여 병력으로 진압 할 것을 한 번에 결정하자 소란은 더욱 확대되었다.

〈출전 : 每日申報가 본 半島 20년(16), 『毎日申報』, 1926년 9월 18일〉

34) 백성의 살림집이 많이 모여 있는 곳.

35) 나라에 병란(兵亂)이 있을 때에, 임금의 명령을 받들어 백성에게 훈유(訓諭)를 알리던 임시 벼슬.

11. 조선 통치의 정신(사설)

– 의회에서 한 총감 답변

1.

과거 일중의원(日衆議院) 예산 제3분과회(豫算第三分科會)에서 신정구락부(新正俱樂部)의 허전명(許田明) 씨의 질문은 조선 통치에 관한 문제였었는데, 전보문이 너무 간단하여 그 자세한 내용을 판단하여 알기 어렵다 할지라도 옛글의 소위 편□(片□)으로도 충분히 전체의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것과 같이 비록 그 문답이 간단하다 할지라도 그 의의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를 충분히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유아사(湯淺) 정무총감의 답변 중 “일본인이 조선인을 학대하였다 하는 악습관이 이전에 있었는지 알기 어려우나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일이 없다.”라는 한 구절이 있는 것을 간과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총감의 답변이 거짓 없는 고백이었던 만큼 심히 명백한 사실이니 원래 조선인과 일본인이 뿌리와 근원이 같은 혈통관계가 있는 것은 고사하고,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대부분 일가일족(一家一族), 무피무차(無彼無此)의 관계가 있는 이상 학대를 할 자는 다 없어졌으니, 또 학대를 받을 자는 누구일 것이라.

2.

우리가 믿는 바에 의하면 병합 이전, 아니 다시 그 이전을 거슬러 청일전쟁(淸日戰爭)의 시대를 회고하면 혹은 일본인이 조선 동포를 □핍한 사실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병합한 이후로는 양자 공존공영(共存共榮)의 필요를 쌍방에서 인식하게 되었음과 함께 다음으로 그러한 사실은 전혀 □을 □함에 이르렀고 병합을 하나의 전환기로 하여 화리 철회의 실(實)이 양차(兩次)로 거하게 된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이는 다만 우리 조선인을 형식상으로만 푸대접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정신상으로도 학대하려는 생각이 없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아는 터이다. 그뿐 아니라 오히려 당연히 존경할 자에 대하여 인격으로든지 재주로든지 또는 전설로든지, 관습으로든지 이에 상당하게 우리를 존경하지 않은 예가 없었었다.

3.

또 총감의 답변 중 “조선 통치의 방침으로는 어디까지 일시동인, 내선융화, 공존공영을 위하여 진력하는 중이라.”고 한 구절이 있으니 소위 일시동인, 내선융화, 공존공영은

이것이 조선 통치의 대강령, 대주의이므로 역대 총독 및 총감이 이 강령과 이 주의로써 매진하여 오늘날에 이른 것은 세상 사람이 공통으로 인식하는 바이지만, 그 완전한 영광과 완벽한 공로에 대해서는 다소의 허물이 없지 않다. 분명히 말하면 현 사이토(齋藤) 총독이 부임하기 이전까지는 조선의 통치가 바로 시작 중에 있었던 까닭이나,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현 총독이 장차 해사공(該事功)을 결실하게 하여 완전한 수확을 기약하려는 중이다.

4.

당초 한일병합(韓日併合)은 이것이 무엇을 위하여 한 것인가 함에 대하여는 이유가 없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결코 일본만을 위하여 소위 식량문제라든가, 인구문제라든가, 국방문제라든가 하는 것 등만을 위함이 아닌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리고 조선만을 위하여서 한 것도 아니다. 그러면 이는 오직 공존공영을 위한 것이오. 이를 위해서는 피폐곤유(疲弊困愈)가 그 극에 달한 약소국의 민족을 궁지로부터 구하려는 특수 관계가 있는 이웃 나라 일본이 아니고서는 가능할 수 없는 까닭이었다. 그러므로 통치도 일본만을 위하여 하지 못하는 것과 같이 또 조선만을 위하여서도 하지 못할 것이니, 즉 일시동인, 내선융화(內鮮融和), 공존공영의 3대강령으로 일관하지 아니하지 못할 것이다. 가령 정치의 형식과 제도에 이르러서는 이후에 있어서도 이것이 □투(□渝)될 것이 아니다. 원래 패도(霸道)는 이(利)를 먼저 취하고 의(義)를 후에 취하는 것이지만 왕도(王道)는 의(義)를 먼저 취하고 이를 후에 취하는 것이니, 우리는 오늘날 조선 통치가 왕도로 되기를 바라며 또는 왕도로 되어 있을 줄로 믿는 바이다.

〈출전 : 朝鮮統治의 정신, 『毎日申報』, 1927년 2월 4일〉

12. 논조(論組)에 오른 학교맹휴(상, 하)(사설)



학교맹휴(學校盟休)는 뒤를 이어 속출하여 최근 숙명여고(淑明女高)를 비롯하여 보성

고보(普成高普), 중앙(中央), 휘문(徽文) 등 많은 공립학교와 사립학교가 차례로 맹휴를 일으키고 있다. 요즈음 경향의 맹휴 통계로 실로 30여 학교의 다수를 보게 되어 전 조선의 교육계는 매우 순탄하지 않은 느낌을 갖게 되었다. 그 맹휴의 동기를 검토하면 그중에는 비록 학생의 처지라 하더라도 가히 참을 수 없는 만불획기(萬不獲已)한 최후 수단으로 나온 것이라 인정할 것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은 이를 단순히 한 학교의 맹휴사건으로 만들 수 없고 그 이면에는 피교육자 대 교육자의 윤리적 관계를 약자 대 강자, 정복자 대 피정복자의 대립으로 간주하여 평온하게 의논하여 능히 해결할 문제인데도 반드시 항거와 대치의 태도를 취하는 일종의 계급적 반항 심리에서 나온 것이라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문제를 일으키고는 중세(衆勢) □□하여 폭행, 난폭한 행동 등 미리 작정한 ‘프로그램’을 □연(□演)하는 감이 있다.

◊

이같이 하여 마침내 경찰의 간섭을 받고 사법의 출동을 보게 되어 현재 □□의 재앙에 신음하는 자가 한둘에 그치지 아니하니, 이는 한갓 교육계의 불상사일 뿐 아니라 실로 조선 현재의 사회적 중대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놀랄 만한 것은 학생의 교문(敎門)에 대한 반항적 운동을 인문(人文) 발전의 한 단계로 잘못 믿고 과도기에 있는 자연적 현상의 일로 간주하여 무조건으로 학생 측에 가담하여 학교와 당국을 공격하며, 중세(衆勢)에 아첨함으로써 저급한 인기를 넓혀 자기가 속한 무리의 사회적 지위를 지지하고자 하는 염치없는 집단이 공공연히 존재함이다. 그들의 주장은 전 조선 30여 학교의 맹휴에 대하여 일률로 맹휴생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그 죄가 학교에 있다하여 퇴학, 정학의 처분을 학교 측의 횡포라 하고 폭동에 대한 경찰의 간섭과 사법의 출동을 일□법□(一□法□) 남용으로 단정하여 훼언반어(毀言反語)로 선동적 태도를 취하여 왔다.

◊

우리는 결코 학교와 당국의 처치에 결함이 없음을 시인하고자 아니한다. 그뿐 아니라 맹휴사건을 형평운동(衡平運動)과 소작쟁의 등과 같은 일종의 계급적 반항운동으로 보는 양은 생각을 절대 배척하고자 한다. 하물며 그 사건의 원인이 일부 학생 등의 분별없는 행동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학교 당국은 아이들을 가르쳐 이끄는 지위에 있어 가급적 너그러운 처치를 취하기를 바라 마지않는 바이다. 그러나 학생 등의 태도가 이미 난폭한 행동으로 나와 학교 당국에 실질적 손해를 준 이상 경찰이 간섭하고 사법이 출동하

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학교 스스로 학생 측의 요구에 무리함을 느끼고 그 잘못을 인식하고 아무런 반성이 없을 때는 퇴학, 정학(停學)의 단호한 수단을 취함도 또한 피하지 못할 것이다.

〈이상 (상)〉



학생들이 학교 측의 죄와 혀물을 적발하고 맹휴를 일으켰다고 반드시 학교 측의 죄와 혀물을 시인할 수 없으며, 학교 측에서 학생 등의 요구를 거절하였다고 반드시 학생의 요구에 무리가 있다고 단언할 수도 없을 것이다. 학생 측에서 죄와 혀물로 인정하지 아니할 것도 있을 것이요, 학교 측에서 거절하는 학생 등의 요구조건에도 제3자의 입장에서 공정히 보아 상당한 요구로 인정할 수 있는 것도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자신이 훈육(熏育)하는 청년 자제(子弟)에게 반역적 행동을 취하게 함은 학교 당국에 절대적 책임이 있어야 할 것이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교문(教門)에 독화살(毒矢)을 이루며(成) 은사(恩師)를 향해 모욕 구타 등 난폭한 행동을 하는 자를 절대로 배척하여야 할 것이다.



요컨대 학교맹휴 사건은 먼저 그 표면에 나타난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지 않은 행위를 배척할 것이요, 그 이면의 옳고 그름에 대하여는 진상을 자세하게 조사하여 공평한 입장에서 냉정하게 비판하는 신중한 태도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한 가정의 통솔자로 가족에 대한 죄와 혀물이 있다 하여 형제, 처자를 부추겨 피로 이름을 적은 문서를 제시하고 그 아버지의 비행을 적발하여 □욕 구타를 감행한다 하면, 이러해도 그 아버지의 죄를 시인함으로써 자식의 윤리를 저버리는 난폭한 행동에 동정할 용기가 있겠는가. 만일 그렇다 하면 이는 무군무사무부(無君無師無父)의 세상이라. 그곳에서 윤리도덕을 논하기 어려운 여지가 있을 것이랴. 우리는 맹휴사건의 중심문제의 인물로 교육자로서 해서는 안 될 언동을 거리낌 없이 행하여 학교일치(學校一致)의 배척을 받고도 오히려 지위에 □□하는 뻔뻔스럽고 부끄러움이 없는 무리를 때때로 보았다. 그러나 스승과 제자 의 분수(分義)가 서로 다르니 이러한 이유로써 학생의 난폭한 행동을 긍정할 수는 없다.



교육자 대 피교육자 간에 윤리적 관계를 알지 못하여 분규를 일으킬진대 교육의 위엄과 권위가 어디에 있으며 자제를 훈육하는 본래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에 이르러 우리는 맹휴에 대한 일부 세간의 망령된 단정적 비판보다 오히려 문제 당면의 책임의 일부를 져야 할 학부형들이 자제의 난폭한 행동을 따르는 태도를 취하는 것에 대해 많은 불쾌를 느끼는 바라. 자제의 훈육에 대한 학교 당국의 결함을 인정할 때는 학부형 스스로 궐기하여 학교당국에 적당한 교섭을 행하여 해결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 만일 자제 등이 최후의 난폭한 행동을 할 때까지 학부형 측은 전혀 몰랐다 하면 이는 한갓 학교 대 학생 간에 생각의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각 가정의 자제 간에도 생각의 차이가 있었던 것이요, 더 나아가 자제 등이 맹휴하기까지에 이른 경로를 듣고도 이를 학교에 국한된 문제라 하여 수수방관하였다 하면 그 부형이야말로 자제에게 대하여 아무런 성의가 없는 자다. 우리는 오히려 요즈음 빈발하는 맹휴에 대하여 그 당면의 책임을 학부형에게 묻고자 한다.

〈이상 (하)〉

〈출전 : 論組에 오른 學校盟休(상 · 하), 『毎日申報』, 1927년 11월 22~23일〉

13. 고마다(兒玉) 정무총감을 맞이함(사설)

1.

조선 정무총감(政務總監)으로 친임(親任)된 고마다 히데오(兒玉秀雄) 백작은 어제 2일로써 도임(到任)하게 되었다. 조선은 백작의 감당(甘棠)의 땅이다. 우리가 백작을 정무총감으로 맞이하여 사모의 정이 오늘에 다시 절절함을 비(費)하게 되며, 또 백작으로서도 반드시 만감이 교차하는 바 없지 아니하지 못할 것이다. 백작은 명문가 맏아들로 1900년에 최고 학부를 나오자 통감부 서기관으로 조선에 부임한 이래 내무과장, 법무과장, 회계과장, 비서과장 등을 역임한 후 1912년에는 총무국장의 요직(要職)으로 승진하여 전후 12년간 조선 통치에 공헌한바 실로 막대하였다. 산하(山河)의 어느 곳에 백작의 족적을 남기지 아니하였으며, 서민의 어떤 자가 백작의 은혜를 환(歡)치 아니하였으랴. 그 후 백

작은 내직(內職)으로 옮겨 내각서기관장(內閣書記官長), 상훈국총재(賞勳局總裁)의 요직을 거친 후 다시 관동청장관(關東廳長官)의 중임을 맡게 되어 변주(邊州)의 시설을 완비하며 이웃 나라의 우의(友誼)를 긴밀히 다짐에 그 비범한 수완과 심오한 식견을 더 많이 발휘하였다.

2.

조선 정무총감은 조선 통치에서 매우 중요한 지위이다. 실로 우리 조선 민중의 휴척(休戚)이 □재(□在)한 지위이다. 지금 경력이 그와 같으며 덕망이 그와 같으며 식견이 그와 같으면 또 우리와의 관계가 그와 같은 고마다 백작을 정무총감으로 맞이하게 됨은 어찌 우리를 위하여 □□할 바 아니며 조선을 위하여 □□할 바 아니라 할 것이라. 고마다 정무총감은 완전한 백지주의(白紙主義)³⁶⁾로써 조선에 임한다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의 조선은 백작의 간여에 의해 경시(經始)된 바요, 발전하기 시작한 바이다. 백작으로서 비록 조선을 수(雖)한 그간에 있었다 할지라도 어찌 꿈속에서나 조선을 잊은 바 있었을 것인가. 우리가 그동안 백작에 대해 생각한 것만큼 백작은 또한 우리에 대하여 생각함을 혜아리지 못하였을 것이다. 백지주의라 함은 다만 주도와 신중을 가하여 경륜을 행하려 한다 함에 다름 아니다. 전날 백작의 간여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조선은 오늘날 또 백작에 의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려 하는 바이다. 백작으로서 크게 한 바 없다 할 수 있으며, 우리가 크게 기대하는 바 없게 될 것이라. 백작은 이미 동경을 출발하기 전에 “조선의 일초일목(一草一木)이 대부분 타자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한다.”고 말하였다. 대재(大哉)라, 이 한마디여! 백작의 생각은 이 한마디로써 설명되었다 할 바요, 또 백작에 대한 우리의 기대도 이 한마디에 불과한 바이다.

3.

조선은 오늘날 초창기로부터 결실기로 바뀌려는 만큼 실로 일이 많은데다 까닭도 많은 바이다. 이때에 그 경시(經始)에 간여한 고마다 백작, 식견□망(識見□望)이 출중하고마다 총감을 맞이하게 된 우리는 그 얼마나 행복하다 할 것이냐. 백작은 경시에 간여한 만큼 각 방면의 장점과 단점, 이점과 폐단을 가장 명백히 자세하게 알게 되며 또 우리와 인연이 깊은 만큼 우리를 생각하는 열□(熱□)은 가장 □렬히 작용할 것이다. 이후 조선의 개발, 우리의 행복은 과연 몰라보게 놀랄 만큼의 진보한 경지를 나타내게 될 것

36) 미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형편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주의.

이다. 계속되는 가뭄에 의해 □구목□(□□目□)하던 조선 산하는 백작이 부임하자 매우 세찬 반가운 비로 소생의 기쁨이 넘쳐나게 되었다. 각 방면에 걸쳐 □□함이 많던 우리가 장차 새로운 총감의 보살핌에 의하여 행복과 기쁨을 누릴 좋은 징조라고 할 것이 아닌가. □히 변변치 못한 말로 고마다 정무총감 환영사를 대신한다.

〈출전 : 兒玉政務總監을 迎함, 『毎日申報』, 1929년 7월 3일〉

14. 사이토 총독을 맞이함(사설)

◇

사이토 총독은 재작년 ‘제네바’에서 개최한 해군제한회의에 출석하여 유럽 중앙에서 국제관계와 열강의 영토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고 근년 추밀고문관(樞密顧問官)에 취임하여 8년 동안이나 자기가 통치하던 조선을 제3자의 지위에서 측면으로 관여하다가 또다시 어명을 받아 조선으로 부임하였다. 회고하건대 과거 8년간도 그리 단시일이 아닌 만큼 조선의 산천초목까지 모두 노(老) 총독의 사랑을 입어 잘 다스린 공적이 뚜렷하고 인풍(仁風)을 널리 펼쳤었다. 당시 통치의 제일 목표가 되었던 치안유지, 문화진흥, 경제발전은 차례차례 기초를 쌓아 올려 바야흐로 크게 이루려 할 때 그 방도로는 민의창달(民意暢達), 상유철저(上喻徹底)를 도모하여 실로 관민(官民) 간의 일치로 자자하던 것은 지령(至令)에도 기억이 또한 새롭게 한 바가 있다. 사사(斯士)의 □서(□庶)로 하여금 가뭄으로 인한 재앙이 있어도 흥수가 있어도 사이토 총독을 불러 구고존(救苦尊)같이 존경하고 믿던 것이 이유 없는 것이 아니며 사이토 총독 또한 나아가나 물러가나 근심하는 꿈 속의 넋은 반도의 전에 살던 땅을 □할 수 없음을 □답(踏)히 추□(推□)할 수 있으나 그 것은 동경에서 출발할 때에 조천자(祖踐者)에 대하여 “아주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 한 것을 보아도 그 굳은 뜻의 편린(片鱗)을 추측할 수 있다.

◇

중앙의 정변(政變)을 초월하여 개척에만 노력하여야 할 조선에 정변의 □위(謂)이 파급함을 우리는 항상 우려하지만 사실대로 정직히 고백한다면 적어도 10년간의 집정이

아니면 그 정치적 이상을 표현할 수 없으리라 한다. 원래 정치란 영원한 목표하에 있어 갑(甲)의 집권과 을(乙)의 시정이 어떠한 방해 작용을 일으킬 리가 없다 하지만 그러한 엉성한 속된 이론에는 긍정을 할 수 없으니 이상(理想)이 전혀 다른 이상 그 정치 도(道)에 대하여 방해 작용이 없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아는 인격자를 골라 쓰는 것과 정치 도의 운전방식이 달라 이따금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행복을 도모하는 데 도리어 광한(曠闊)하는 폐해가 없지 아니하며, 그것이 매우 일반적인 일이라 하여도 가한 바이다. 그러나 이제 사이토와 조선은 겨룰 필요가 없으니 과거에 잘 다스린 공적은 민중이 우러러 그리워하는 상태로써 증명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조선을 아는 자도 사이토요, 조선을 살아나게 하는 자도 사이토이다. 사(士)는 지기(知己)를 위해 죽는 것이 동양인의 도덕이라 하면, 2천만 민중의 지기(知己)인 사이토(齋藤)를 위하여 협□(協□)하는 것이 또한 2천만 민중의 사이토를 아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면 지기(知己)와의 결합은 금석(金石)도 가히 □하리라 하거니 2천만의 지기를 가진 사이토의 정치는 평탄하고 넓은 길을 걷는 감이 있을 것이다.

◊

세간에서는 사이토가 총독으로 재임됨을 의외로 아는 자도 많았으나, 2천만 지기(知己)를 가진 사이토의 재임을 의외로 안 것이 참으로 의외이다. 그것은 과거에 쌓아 올린 시정의 완성을 기할 것을 □□에 넘치는 유고(諭告)로써 헤아려 살피거니와 세상은 날로 진보하고 문화수준은 늘 향상하는 것이 조선의 현상인즉 8년 전의 조선이 아닌 것과 같이 사이토도 8년 전의 사이토가 아닐 것이다. 그것은 때에 따라 사철이 있는 것과 같을 것이니 8년 전의 조선 통치의 급무(急務)는 치안유지였지만 그 경계를 벗어난 오늘날에는 스스로 완급의 차가 깊게 생기게 될 것이 필연의 형세가 된다. 더욱이 강기능청(鋼紀能清)에 주력할 것을 표명함은 과연 2천만 민중의 □□인 것을 바로 알 수 있으니 물도 고이면 썩는다는 것과 같이 인심의 갱신(更新)은 강기능청으로써 중점을 삼아야 할 것이며 ‘정(政)은 정야(正也)라’ 함이 정치를 행하는 자의 중요한 법칙이라 하면 정의 정치는 강기능청으로써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반도의 행복과 이익을 위하여 노□(老□)의 □노(□努)도 □치 아니하는 사이토 총독을 맞이함에 삼가 2천만 민중을 대신하여 그 지기의 만일을 □하는 바이다.

〈출전 : 齋藤總督을 迎함. 『毎日申報』, 1929년 9월 7일〉

15. 학생 제자(諸子)를 위하여(사설)

1.

일시 안정되었던 학계는 또다시 동요상태를 나타내게 되었다. 이것이 슬퍼해야 할 현상이며, 기피할 현상이라. 학계에 이처럼 기피할 현상이 발생함에 대해서는 물론 사회나 위정자로서도 큰 책임을 져야 할 것이어서, 일률적으로 학생들의 경솔한 행동만을 나무라기는 어려운 바다. 학생이 학생 자체의 장래를 자신의 힘으로 파□(破□)하는 행동인 만큼 학생 자체로서의 경솔한 행동은 논쟁하지 못할 사실이겠으며, 따라서 그에 대하여 반성과 각성이 필요한 자는 누구보다 학생이라 할 것이나, 학생 자체가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혹은 학생 자체가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아니하지 못할 환경에 놓이게 되었음에 연유한 바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생 자체로서는 자기의 일생을 희생하는 중대한 사건이다. 다만 환경이 이러해서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아니하지 못하게 된다 함으로만 시간이 지날 수 있다 할 것인가?

2.

만물은 떠돈다. 모든 여러 모양은 순간순간 변하는 바이며, 또 그 유동(流動)은 상대적 관련에 의해 자연 투쟁을 면하지 못하게 되는 바이나, 그 투쟁은 반드시 합리적이며, 질서적이어야 할 것이다. 우승열패(優勝劣敗)의 갈림길이 요컨대 그 투쟁방법의 합리, 불합리 여하에 있는 것이며, 문명야만(文明野蠻)의 분야가 결국은 그 투쟁수단의 질서, 무질서의 여하로 구별되는 바 아닐 것일까? 학생으로서의 투쟁, 즉 발랄한 원기(元氣)와 치열한 희망에 근거한 용감한 행동은 물론 학생 자체의 향상과 발전을 도모하는 바일터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 합리적이며 질서가 있어야만 할 것이다. 이성을 잃은 원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경망에 불과하며, 질서를 어지럽히는 용감은 결국 난폭에 다름 아닌 것이다. 요즈음 각지를 통한 학계동요(學界動搖) 사건은 과연 학생 자체로서 이성의 판단에 의하며, 질서의 수단에 의한 행동에서 나온 현상이라 할 수 있을까? 학생으로서의 희망은 반드시 학생으로서의 본분에 의한 희망이어야 할 것이요, 또 학생으로서의 행동은 반드시 학생으로서의 범주를 지키는 행동이어야 할 것이다. 계속 분수에 넘치는 요구를 주장하며, 분수를 모르는 행동을 감행하여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며, 인심을 어수선하게 함은 다만 학생으로서의 망동에만 그칠 뿐이 아니라, 사회의 평화와 질서를 교란하는 큰 죄악이라 할 것이다.

3.

고금동서(古今東西)의 어느 사회에 불평이 없고 불만이 없었으며 없다 할 것이야. 그러나 인류는 그 불평과 불만을 합리적으로 조절하고 완화함으로써 행복을 기도하며 발전을 달성하는 것이다. 학계를 소란케 하는 학생 제자의 행동이 비록 망동이라고 할지나, 학생 자체로서의 일생을 희생하게 되는 행동인 만큼 학생 자체에는 이러한 폭발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불평과 불만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야 할 것이며, 또 그가 비록 전혀 외부의 선동사주(煽動使嗾)에 의한 바가 아니라 할지라도, 학생 자체 내에 이러한 부추김을 쉽게 감수하는 만큼 불평과 불만의 싹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조절하며 완화하기 위하여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 과연 그 방법과 수단 면에서 마땅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학생제자로서 불평과 불만이 있다 하면 이는 어디까지 학생 자체로서의 불평과 불만일 것이다. 자기의 불평과 불만을 제거하기 위하여 자기 전체를 희생한다 함은 너무 어리석은 것이 아니며 너무 미련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인가. 또 만일 학생제자가 사회 전체의 불합리를 타파하기 위하여 살신성인(殺身成仁)의 저의(底意)에서 그와 같은 행동을 했다면 이는 사회일반을 모욕하는 것이다. 어찌 비판을 가할 여지가 있다 할 것인가. 사회에 관한 사상은 마땅히 사회로서 처리할 것이다. 그를 수양 도중에 있는 학생으로서 간섭한다 하면 그만큼 그 사회를 불합리, 불건전으로 이끄는 바 아닐 것인가. 학생제자의 절실한 반성을 계속 요구하는 바이다.

〈출전 : 學生諸子를 위하여, 『毎日申報』, 1930년 1월 16일〉

16. 우가키 총독을 맞이함(사설)

1.

우가키 총독은 이전 14일로써 조선에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우가키 총독의 승고한 인격과 덕망은 모든 사람이 함께 우러러보는 바여서 지난번 그 어명을 받은 소식이 전해져 2천만 민중은 기뻐하며 축하를 금치 못하였고 또 이번에 동도(東都)를 출발할 때 성명서가 발표되어 반도 천지에는 이와 같은 광명이 비친 바가 있었다. 오늘날 친히 그 온화한 모습을 접하고 위엄 있는 태도를 대하여 우리의 환희는 얼마나 크며 우리의 기

대는 얼마나 지대하였던가. 총독정치가 실행된 지 20여 년 이래 문화의 향상, 민력(民力)의 증진, 천연자원의 개발 등은 실로 해아릴 수 없을 만한 업적을 보였다. 그러나 문화가 향상됨에도 불구하고 도의일(道義日)로 시끄러우며, 민력이 증진됨에도 불구하고 백성의 괴로움은 더욱 심해지고, 천연자원이 개발됨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소비는 더욱 궁핍하다는 양상이 없는바 아니다. 이것은 어떠한 이유로 말미암은 것이며 어떠한 근거에서 비롯된 것인가.

2.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처지가 세계적으로 변화되는 사상의 경향, 세계적으로 동요된 경제의 여파에 차츰차츰 물들어 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음에 원인이 있고 그것에 연유한 바이다. 다행히 우가키 총독은 동도 출발 시의 성명서 중 “내외의 정세를 볼 때에 정신계에나 물질계에 흐리고 피폐한 징(徵)이 현저하여, 각 방면에 새롭게 막힌 일을 모두 잘 처리하고 다시 바로잡을 필요가 있으니 이에 힘써야 할 상태이다. 조선도 제국의 일부이고 또 세계의 일부로서 그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굳이 두루 살펴 알 필요가 없다.” 하여 명료히 이 점을 지적하였다. 이미 병든 곳임이 확실한 바이다. 그 병을 치료하지 못함을 □□지 의심스러워해야 할 것이라. 우리가 우가키 총독이 어명을 받았다는 소식을 접하여 기뻐하며 축하를 금치 못하며 또 오늘날 그 위치를 보자 매우 기뻐뛰는 것은 아마 이러한 기대와 확신이 있음에 의한 것이라. 과연 우가키 총독은 그 성명의 한 구절에 “모든 제도, 조직 등의 오늘날 있는 것은 수많은 변천을 거쳐 여러 해 연구 실시한 결정이므로 이를 고칠 때에는 반드시 인정과 도리를 다하고 이지(理智)의 연구할 바는 연구하되 이를 행함에 있어서는 일의 크고 작음, 어려움과 쉬움을 묻지 않고 단호히 발자취를 꼭대기에 남기는 의기(意氣)를 필요로 한다.” 하여 그 확고한 신념과 용감한 과단(果斷)을 명시하였다. 우리의 진로가 오늘로써 나타나고 우리의 복지가 오늘로써 시작되지 않는다 할 것인가.

3.

우가키 총독은 예전에 러일전쟁이 일어났던 때에 이미 족적(足跡)을 반도 각지에 남겼고 또 작년 사이토(齋藤) 총독부 행사(行使)할 때에 반년 정도 총독대리(總督代理)로 조선 통치의 중임(重任)을 맡았던 바이다. 반도 각종 실정은 이미 알만큼 아는 바일 것이며 따라서 통치에 관한 경륜과 포부는 이미 충분히 준비되고 정비된 바일 것이다. 어찌 우리의 계속되는 소문과 구차한 방책을 기다릴 바 있다 할 것이라. 다만 한마디 하려

하는 바는 우리 2천만 민중이 우가키 총독의 신임(新任)에 대하여 마치 큰 가뭄에 비가 올 징조를 기다림과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은 물론 우가키 총독의 승고한 인격과 덕망을 양모함에 의한 바라 할지나 한편으로는 너무나 현재의 환경에 □경(京)을 느끼고 현재의 처지에 불만을 품은 결과 물질과 정신 두 방면에 □□ 일□타개(一□打開)를 바라고 구하는 마음의 절절함에 의한 바가 많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이들 민중의 희망과 기대는 다만 우가키 총독 동도 성명서의 구체화에 의해 빠짐없이 실현되는 바일 것이다. 우가키 총독의 통치 업적에 ‘왔다 보았다 다스렸다’를 바라게 될 것을 결코 응대를 위한 응대에만 의한 것이 아니라 할 자 있을 것인가.

〈출전 : 宇垣總督을 迎함, 『毎日申報』, 1931년 7월 15일〉

17. 흥승구(洪承耆), 오는 총독 가는 총독(1~5)

– 노노정(勞勞亭)의 야인언(野人言)

육군 장로(長老)로서의 책임감

청천의 벽력이라는 수식어를 쓸지라도 과장이 지나쳐서 중국식의 감이 있겠지만, 아무리 헤아려 일본식으로 쓴다 해도 잡든 귀(耳)에 물(水)이 들어올 정도로 세상을 놀라게 한 것은 지난 4일에 조선총독의 경질(更迭)을 전한 동경 전화일 것이다. 그러한 경질이 발표되던 전전날과 전날까지 우가키(宇垣) 총독은 병든 부인을 데리고 조선의 가루이자와(輕井澤)³⁷⁾라는 관북(關北)의 부전고원(赴戰高原)³⁸⁾에 피서하여 서늘함에 더운 여름날의 먼지를 씻어내면서 유유자적하였고, 이마이다(今井田) 정무총감은 평안남북도 시찰의 길에 올랐다가 돌아오는 길에 을밀대(乙密臺)³⁹⁾와 부벽루(浮碧樓)⁴⁰⁾에 들려 아

37) 일본 혼슈(本州) 나가노현(長野縣)에 있는 휴양지로 국제적인 고원 피서지이다.

38) 함경남도 개마고원의 남쪽 장진군(長津郡)에 있는 명승지.

39) 평양시 기립리(북한의 행정구역상 평양특별시 중구역 경동상)에 있는 고구려시대의 누정. 정면 3칸, 측면 2칸의 겹처마 합각지붕건물로 북한의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다. 누정이 을밀봉에 있어 을밀대라고 하지만, 사방이 탁 트여 있다고 하여 ‘사허정(四虛亭)’이라고도 한다.

40) 평양특별시 중구역 금수산 동쪽 청류벽(淸流壁)에 있는 누각. 원래 이름은 영명루(永明樓)이며,

름다운 경치를 즐기고 있었다. 대인(大人)의 행함과 숨음이라. 원래 숨었다 나타나는 조화가 신룡(神龍)처럼 자유롭고 예사롭지 않아 낮은 안목으로 쉽게 보고 헤아릴 바가 아니라는 것은 3천 년 전에 주역(周易)을 지은 중국 성인(聖人)들이 예언한 것이지만, 어떻든지 예상을 뛰어넘는 당혹감은 당사자들 이외에 누구나 가졌을 것이다.

◊

조선식산은행 은행장 아리가 미쓰도요(有賀光豊) 옹의 말에 의하면 “자기는 총독이 머지않아서 사임할 것을 그의 말과 얼굴빛에서 알아차린 바가 없지는 않았으나, 이처럼 빨리 실현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 한다. 아리가 옹의 이야기를 듣지 못한지라 그가 언제 무슨 상황에서 우가키 씨의 미간에서 사임의 조짐을 알아챘는지 필자가 알 바가 아니요, 또 알려고 할 것도 없지만, 아리가 옹과 같이 우가키 장군의 말과 얼굴빛에서 마음에 생각한 일을 판단할 밖고 냉철한 두뇌 없는 필자도 4~5개월 전에 그 조짐을 발견한 것을 이 기회에 말하려 한다. 그것은 2·26사건⁴¹⁾이 반란부대의 귀순(歸順)으로 포화 유혈(砲火流血)의 끔찍한 변고가 없이 안정된 직후, 정확히 말하면 3월 2일의 일이다. 그날 발행된 『동경신문(東京新聞)』에는 일례로 경성전보를 실고 우가키 총독이 고이소(小磯) 군사령관의 방문을 받아 관저에서 장시간 회견 밀담한 것을 보도하여 세상의 주목을 끌었다. 그때 정국의 정세가 정세니만큼 그것을 보도하던 신문과 이에 대한 일반의 관측은 우가키 씨와 신정국을 아울러 연상하고 우가키, 고이소 두 거두의 옛날 관계로 미루어 무슨 공작을 하느니, 무슨 정보를 가져온 것이니 하여 여러 가지 짐작이 억행(臆行)하였다.

험악한 국면과 인재난에 아울러 우가키 씨와 같이 역량과 명성이 있는 정치적 지위세력으로 보아 이와 같은 짐작도 무리가 아니라, 필자의 소견으로는 이 회담은 총리대신이 되려는 공작이 아니요, 조선총독을 그만두려는 준비행동으로 바로 깨달았었다.

◊

우가키 대장은 물론 현역(現役)은 아니다. 그러나 우에하라(上原) 원수의 반대편 사람이 된 후 일본 육군에서는 가와이(河合操), 스즈키(鈴木莊六)의 두 대장과 더불어 거두

392년에 세운 영명사의 부속건물이었다. 12세기 초 예종(1106~22 재위)이 이곳에서 잔치를 연 다음 이안(李顥)에게 명하여 이름을 다시 짓도록 했는데, 그는 거울같이 맑고 푸른 물이 감돌아 흐르는 청류벽 위에 둑실 떠 있는 듯한 누정이라는 뜻에서 ‘부벽루’라고 했다고 한다.

41) 1936년 2월 26일 일본 육군의 황도파 청년장교 1,483명이 일으킨 반란사건이다.

중의 거두로 세상의 이른바 3장로(長老)의 한 사람이고, 그 위세와 명망, 지위가 현역 7대장에 비할 바가 아니다. 그중에도 우가키 대장은 다이쇼(大正) 말기로부터 쇼와(昭和) 초까지 육군의 대표적 수뇌 지위에 오래 있어 그대로 현역에 있으면, 물론 무토우(武藤) 대장보다도 앞서서 원수부(元帥府)에 이름을 올렸을 사람이다. 그리고 보면 그보다 까마득한 후배이던 7대장이 육군 장로라는 위치로부터 그 책임을 깊이 깨닫고 예비편입을 스스로 청하는 때에 우가키 대장이 어찌 현역 아닌 것을 스스로 바라고 홀로 태연히 있으리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권세와 영리에만 급급하여 세간의 도의(道義)를 모르는 쇠망한 세상의 정치가라면 모르되, 종래 그 출처진퇴(出處進退)에 대해 어느 입헌정치가에게도 양보하지 않을 명확하고 엄한 태도를 취하여 행동하던 우가키 대장으로, 또 그에게는 성격과 신념으로 보아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욕심과 소원, 즉 좋은 의미에서 명성을 얻으려는 욕심과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욕, 다시 말하면 나라를 위해 힘써 일하고자 하는 타오르는 의욕은 남달리 왕성한지 모르나, 오늘날의 지위에 처하여 나라를 위해 힘써 일하고자 하는 의욕 이외에 다른 욕심과 소원, 야심이야 어찌 있을 것이라. 그리고 보면 2·26사건의 변보(變報)를 듣던 찰나에 그는 임의 육군 장로의 한 사람으로 스스로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결의하였고, 난정(亂政) 직후에 고이소(小磯) 장군과 만나 의견을 나눈 것은 지난날 막료(幕僚)인 장군에게 의중을 피력하여 이것을 고하는 동시에 숙군(肅軍)의 장래와 및 이후 군부 결속에 대하여 여러 가지 계고(戒告)가 있었던 것으로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무인(武人)의 본래 성질은 충성과 정직에 있고 정치가의 의무는 냉철한 총명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가키 씨는 실로 이 두 가지 모두를 아울러 가진 사람이므로 군인의 장로로써 책임을 맡음에 망설이지 않는 동시에 정국의 괴이한 변고를 타서 □□하지 않을 것은 대개 상식으로 쉽게 판정할 것이 아니랴. 이에 우가키 씨 사임의 내력은 스스로 밝혀지고 이번 경질이 갑작스러운 듯하나, 그 사실은 갑작스러움이 아닐 뿐 아니라, 히로타(廣田) 내각이 조선총독의 지위의 중대성과 및 후임 선택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신중한 고려와 절차를 밟으려고 우가키 씨로 하여금 결의 표명 후에 오히려 오랫동안 부임지에 있게 한 것이오. 한편으로 특별의회에서의 추가 예산의 통과를 기다려 그 실사를 본 뒤에 시기를 보아 공식으로 밝히려는 우가키 씨의 책임감이 그렇게 하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이마이다(今井田) 총감의 동시 경질(更迭)에 이르러서는 장황한 설명보다도 “피부조차 없으면 텔이 어니서 나는가(皮之不在, 毛將焉存)”라는 8자 옛글을 인용하면 그만일 것이다.

〈이상 (1)〉

우가키 씨 일대(一代)의 득의장(得意場)

정계의 화성이라는 고맙지 않은 별명은 고토 신페이(後藤新平) 씨가 죽은 뒤로 우가키 씨의 독점이 되고 말았었다.

우가키 씨에게 얼마나 야심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정치가로서 야심이 전혀 없다면 이것이 오히려 기괴한 일이로되) 하여튼 우가키 씨라면 유력자(惑星), 유력자라면 우가키 씨, 이리하여 유력자과 우가키 씨 사이에는 거의 뗄 수 없는 관계가 맺어져 있었다. 유력자의 다른 이름이 오늘날의 우가키 씨 존재를 크게 한 것은 사실이겠지만 야심가의 지목이 또한 얼마나 우가키 씨의 진로에 고난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세상 사람의 기억은 너무도 새로웠다. 그를 인식하여 존경하고 사랑하는 자는 끌어서 날개로 삼으려 하고 그를 인식하여 두려워하고 꺼리는 자는 겉으로만 존경하고 안으로는 물리쳐 될 수 있는 데까지 우리에 가두고 공경하지만 가까이 하지는 않으려 하였다. 그를 칭송하는 자는 총재(總裁)와 총리(總理)의 우두머리로 받들려고 애쓰는 무리가 당계(黨界), 재계(財界)에 수없이 존재한 반면에 그의 정적(政敵)은 가지가지의 나쁜 선전을 퍼뜨렸다. 1927년 아래의 정국(政局) 역사를 엮어서 짓는 자가 있다 하면 그 안팎 어느 면에서든지 우가키의 이름을 뺄 수 없을 만큼 그는 정치계의 거물이요, 또 선악(善惡) 양면의 인기인(人氣者)이다.



보라. 고(故) 다나카 기이치(田中義一) 대장이 내각을 조직하는 어명을 받은 뒤에 육군장관(陸相) 유임(留任)을 구하려고 한나절, 하룻밤을 허비하여, 간절히 청하던 것이며, 고(故) 하마구치 오사치(濱口雄幸)가 그의 내각 사퇴를 고민하다가 기세가 꺾이고 힘이 다 빠져 전례 없는 육군중장의 무임소대신(無任所大臣)을 만들어 미봉(彌縫)하던 것이 전자(前者)에 속한 것이라면, 와카쓰키(若槻) 내각이 한직으로 물러난 그를 다시 조선총독으로 기용한 것이라든지, 이누카이(犬養) 내각이 모든 각 지역 장관의 머리를 배추꼬리같이 자르면서도 우치다 코사이(内田康哉) 같은 장로를 향해 든 칼날이 그의 앞에 조용히 칼날을 거두고 감히 만용을 부리지 못하던 것은 후자의 증거가 된다. 그리고 만주 사변 아래 소위 비상시국이 전개된 뒤부터 정변 때마다 추대파(推戴派)와 배격군(排擊群)이 도처에 어지럽게 싸워 왈가왈부 시끄럽게 떠들어 평안한 날이 없다가 소위 판야 성명(板野聲明)과 및 해군부(海軍部) 내의 분쟁에 이르러서는 흥분이 극도에 달하였었다. 그로서는 운수 사나운 구설수에 세로다간(世路多艱)을 한탄하겠지만 이것도 일종

의 유명세로 생각한다면 도리어 저렴한 부류가 아닌가 한다. 오카야마(岡山) 가난한 마을의 5반보(反步) 소작 빈농의 집에 외로운 소리를 울린 ‘복고스끼’의 시대를 돌아본다면 그의 입신양명이 7분의 지력(志力) 외에 3분의 운명과 은총에 빛진 것도 알아야 한다.

◊

1931년 4월에 하마구치(濱口) 내각의 총사직과 함께 그가 육군 장관의 관(冠)을 벗으매, 유력장 물러남을 화근으로 생각하는 와카쓰키(若槻) 수상은 꿈자리가 편하지 않은 것을 느꼈는지 재차 조선총독의 인수(印綬, 처음에는 代理)로써 범(虎)의 목을 붙잡아 매어 놓았다. 하마구치 전 총재는 병이 위중하고 와카쓰키 신총재는 전날 현정회(憲政會) 총재 때에 벌써 낙제점을 받아 신망이 희박하던 때라. 민정당(民政黨)의 어중이떠중이들이 우가키(宇垣) 씨에게 추파를 보내게 될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고, 와카쓰키 씨로서는 이에 존경하는 체하면서 속으로는 멀리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며, 더욱이 그때 민정당 내에서는 아다치(安達) 씨와 아울러 고(故) 이노우에 준노스케(井上準之助)씨가 모두 후기 총재의 지위를 노렸으므로 와카쓰키 씨보다는 이 방면의 부추김이 더욱 컸을지도 모른다. 여하간 우가키 씨는 이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한 차례 나라를 위해 몸을 돌보지 않고 힘을 다한 몸이다. 어명이 내린다면 거절하고 피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하며, 흔쾌히 승낙하고 인수하였다. 동경의 신문지는 일제히 ‘야심가의 축예행(蓄銳行)’이니, 혹은 ‘와카쓰키 씨의 범을 잡는 방법’이니 하여 마치 조선을 우가키 씨를 가두는 동물원, 맹수우리나 그렇지 않으면 고행승(苦行僧)의 수도장으로 여기고, 소봉로가(蘇峰老家)까지가 중원박호수수(中原博虎收手) 소향남회적시(笑向南回摘柿)로 작별의 인사말을 하여 우가키 씨에게 야심을 그만 탐하고 조선에 가서 감이나 따먹으라고 권하였다. 그러나 참새가 어찌 기러기의 뜻을 알랴. 그는 구차한 사람들의 비평을 연기로 보고 예(例)의 유명한 “훌륭한 발자취를 남기련다”의 성명을 발표한 뒤에 깨끗하고 산뜻한 포부와 발랄(潑淵)⁴²⁾한 타고난 기운을 가지고 현해(玄海)를 건너섰다. 필부(匹夫)로부터 대장, 대신에 오르기까지 우가키 씨의 일생에는 높은 벼슬, 영예로운 관직을 무수히 지냈겠지만 아마도 전에는 동궁어학문소(東宮御學問所)의 어용괘(御用掛)가 된 것과 후에는 조선총독이 된 것이 그에게 있어 영예의 절정이요, 유쾌한 마음의 고조(高潮)라 할 것이다. 무슨 까닭이냐고 하면, 왕세자를 인도하는 일에 참여한 것은 신하로서의 극선(極選)이요, 삼천리 산하에 궐외(闕外)의 책임을 받아 누구의 간섭 없이 자유의 수완

42) 刺의 오기인 듯함.

을 두루는 것은 남아 일생의 통쾌한 일로 이름은 좋지만 반대로 어렵고 까다로운 구차한 총리대신에 비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일본 현대의 조선 정치가를 통해 총리대신의 적임자는 세상에 사람이 없지 않으나, 조선총독의 합격자는 거의 없다 할 형편에서 우가키 씨 그 사람은 실로 하나밖에 없는 이상적 총독이 되기 때문이다.

〈이상 (2)〉

반도 산하에 인(印)치고 가는 거적(巨跡)

수년 전에 어느 일본어 잡지는 필자에게 ‘조선인으로서 보는 우가키 총독의 통치’에 대한 글을 요청하였다. 처음에는 원고 쓸 것을 허락하였으나, 다시 생각한즉 통치를 받는자의 입장에서 통치자를(그나마도 현재 그 지위에 있는) 비평한다는 것은 칭찬이든 비판이든 도무지 내키지 않으므로 결국 거절해 버렸다. 무엇이 내키지 않느냐 하면 비판을 쓰려한즉 고의로 결점을 찾아내고 흉을 보아 왜곡된 글을 쓴다면 모르겠으나, 공평하게 생각하여 역대 총독 중에 우가키 씨 같은 이는 확실히 특출하게 뛰어난 이름난 총독으로 데라우치(寺内) 씨와 견줄 만한 중에 데라우치 씨도 눈여겨보지 못하고 실행하지 못한 방면을 능히 개척할 뿐 아니라 동일한 열정과 성의를 가졌다 해도 데라우치 씨의 독단적이고 자신이옳다는 방식에 비하여 우가키 씨는 겸손하고 훌륭한 태도를 취하는 장점까지 있으므로 본의 아닌 왜곡된 글을 쓸 이유는 물론 없으려니와, 그렇다 하여 그에게 요구할 것 없는 초야(草野)의 벼슬 없는 선비로 청한 적 없는 칭송을 올리기도 내성품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나쁘게 말하는 왜곡된 글이 공평하지 않다고 하면 눈앞의 칭송은 아첨과 공평하지 않음이 함께 오해를 부르기 쉬운 동시에 사자(士子)로서 매우 부끄럽기 때문이다.



조선의 총독정치도 제1대 사이토(齋藤) 총독부시대의 후기, 즉 시모오카(下岡) 정무총감(政務總監)이 10년 시골에 파묻혀 있던 몸을 일으켜 관계(官界)에 부활하매 그 웅대한 포부 경륜이 노련한 재기와 용감한 실행력과 아울러 새로운 통치의 한 획을 긋는 시대에 들어갔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병마에 걸려 겨우 마음에 품은 일부분도 다 실시하지 못하고 가엾게도 재능 있는 몸을 저 세상으로 옮겨 버렸다. 그 뒤의 야마나시(山梨) 시대와 및 제2대 사이토 시대의 4~5년간은 소위 조선 통치의 정체시대로 다만 베푼 치적